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목차

- 1 존 로크 사회계약론의 현대 헌법적 의의  
조한상
- 19 혼인과 비혼 - 프랑스의 Pacs를 중심으로  
백승흠
- 37 아랍의 위성뉴스 채널들에 대한 고찰 -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알마나르,  
비즈니스 채널을 중심으로  
이효성
- 57 부합법의 현대적 과제  
신국미
- 69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철호
- 89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방안  
박풍규
- 121 주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에 관한 연구  
구철희
- 137 주식회사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제도의 문제와 해결  
주기종
- 157 임야지역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 연구  
홍성언
- 177 유머광고에 관한 연구  
이재록
- 199 미·비혼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 II  
김미숙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존 로크 사회계약론의 현대 헌법적 의의\*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조 한 상

###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주요내용을 자연상태, 전쟁상태, 정치사회의 개념, 재산권 개념 그리고 통치의 해체와 저항권 개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로크의 사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적 형태이며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 자연상태부터 자유로운 따라서 외부의 침해가 없으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소극적 자유’ 사상, 개별적 개인의 판단과 행위로 정치적 공동체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정치관 등이 그 대표적인 근거이다. 로크가 살았던 160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혁명적 이론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 로크가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원자적이고 고립된 인간상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른바 공동체 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화폐를 통한 막대한 부의 축적과 이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문제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개별화된 주체로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로크가 그렸던 세상을 현실의 세상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로크가 토대를 닦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로크의 사상은 피해갈 수 없는 준거점이라는 사실이다.

주제어: 로크, 자연상태, 전쟁상태, 사회계약, 시민사회, 정치사회, 저항권, 자유주의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론

근대 정치사상 그리고 헌법사상의 토대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주장한 사회계약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헌법학 교과서들도 한결 같이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국가의 본질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계약론 중에서도 로크의 이론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헌법의 시작점에 있는 두 개의 헌법문서, 즉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에 로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미국 독립선언은 로크 정치사상의 요약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다.<sup>1)</sup>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그의 주저인 시민정부론, 특히 그것의 제 2논문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에세이(Two Treatises of Government: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에 담겨져 있다. 이 글이 출간된 것은 지금부터 320여 년 전인 1690년이지만, 여전히 이를 탐독하는 것은 유익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해’를 위함이다. 우리는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근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서구의 근대를 계수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근대의 정신보다는 근대의 겉모습, 특히 근대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근대화는 산업화 내지 경제변영과 거의 동의어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의 정신은 모른 채 물질적 근대화만 추구하는 것은 갈 길을 모른 채 공허한 꾀테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근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가야할 길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로크의 시민정부론 만큼 적절한 참고자료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비판’을 위함이다. 비판을 위해서는 비판의 거리가 필요하며, 따라서 사회로부터 초연해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굴(사회)에서 나와 진리의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가정이며, 제대로 된 비판은 참여와 해석을 통해 가능하다. 물론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사회의 지배적 이념들은 계급이나 계층을 초월하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며, 약자와 소외된 자들도 이러한 이념들을 무기로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념인 근대성은 비판을 위한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점에서 근대적 이념의 압권인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유익한 독서 대상이다.

---

1)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김영사, 2007, 104면.

## II. 자연상태, 전쟁상태, 정치사회

### 1. 자연상태

대다수의 계몽시대 정치철학자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그의 논증을 자연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원을 구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sup> 왈쩌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해석”의 방법이 아닌 “발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그의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가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일 없이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이다. 또 일체의 권력과 권한은 상호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않는 평등한 상태이다.<sup>4)</sup> 홉스가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설명한 것에 반하여,<sup>5)</sup> 로크의 자연상태는 그 자체로 자유와 평등이 유지되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자연상태는 방종의 상태가 아니며, 자연법에 의해 구속되는 비교적 질서 잡힌 사회로 묘사된다.<sup>6)</sup> 사람은 자살할 수 없으며, 그의 소유물도 그것을 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살해할 수 없다. 자연법의 위반자들에게는 손해를 배상받고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sup>7)</sup> 직접 손해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 역시 그 피해자에 가담하여 이러한 처벌권 행사를 원조할 수 있다.<sup>8)</sup> 살인범의 경우에는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된다.<sup>9)</sup> 물론 이러한 처벌은 일정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평등하게 또 같은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sup>10)</sup> 요컨대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1)</sup>

로크가 자연상태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자연법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을 갖춘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으로부터 정의와 사랑이라는 원리가 도출된다.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

---

2)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The Liberal Arts Press, Book II, ch. 2, §4(번역은 이극찬 역, 시민정부론, 연세대 출판부, 1970년을 주로 참조하였음).

3) M. Walzer(김은희 역), *해석과 사회비판, 철학과 현실사*, 2007, 18면 이하.

4) J. Locke, op. cit., Book II, ch. 2, §4.

5) Th. Hobbes, *Leviathan*, Cambridge, 1991, ch. 13.

6) J. Locke, op. cit., Book II, ch. 2, §6.

7) J. Locke, ibid., Book II, ch. 2, §8.

8) J. Locke, ibid., Book II, ch. 2, §10.

9) J. Locke, ibid., Book II, ch. 2, §11.

10) J. Locke, ibid., Book II, ch. 2, §12.

11) J. Locke, ibid., Book II, ch. 2, §13.

게 된다.<sup>12)</sup> 따라서 로크는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며, 자연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13)</sup>

로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상태는 하나의 정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상호 동의를 없는 곳에서는 - 예를 들어 국제적 관계에서 -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며,<sup>14)</sup> 따라서 자연상태가 과연 있거나 한 것이냐는 의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사회 이전의 자연상태를 이처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그가 자연상태의 예로든 국제관계가 이른바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러하다.<sup>15)</sup> 어쨌든 자연상태를 잘 질서 잡힌 사회로 묘사함으로써 로크는 정치의 본질을 갈등과 폭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조화로 파악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sup>16)</sup>의 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할 수 있다.

## 2. 전쟁상태

그러나 자연상태는 언제라도 전쟁상태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로크는 가령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써, 일시적인 흥분과 성급한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정하고 침착하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노릴 것을 선언할 경우에는, 그는 그러한 의향의 선언을 받은 상태 방과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sup>17)</sup> 특히 전쟁상태는 타인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려 할 경우, 나아가 자연상태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로크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는, 반드시 그 밖의 다른 일체의 것도 빼앗아 버리려 한다고 추측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sup>18)</sup>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 밑에 두려고 한다면 이로써 전쟁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 정치는 곧바로 전쟁상태를 야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크가 절대군주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자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절대군주제이라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로부터는 이 세계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형태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민적 사회와는 모순된 것이며, 따라서 시민적 정부형태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역설하고 있다.<sup>19)</sup>

---

12) J. Locke, *ibid.*, Book II, ch. 2, §6.

13) J. Locke, *ibid.*, Book II, ch. 2, §12.

14) J. Locke, *ibid.*, Book II, ch. 2, §14.

15) 오히려 자연상태를 몇 가지 단계로 재분석한 루소의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J. J. Rousseau[김중현 역], *인간불평등기원론*,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54면 이하 참조).

16) 로크 이래 자유주의는 다원적인 사람들 사이의 공존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주된 관심을 두며, 이러한 입장에서 다원주의는 한편으로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존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negative)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C. Mouffe, *Politics and the Limits of Liberalism*, in: Chantal Mouffe[ed. by J. Martin], Routledge, 2013, p. 116).

17) J. Locke, *op. cit.*, Book II, ch. 3, §16.

18) J. Locke, *ibid.*, Book II, ch. 3, §17.

19) J. Locke, *ibid.*, Book II, ch. 7, §90.



로크는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나를 살해하려고 위협하는 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며 또한 정당하기도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연법에 의거하여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의 안전이 앞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0)</sup> 이러한 표현은 홉스의 제1의 자연법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sup>21)</sup>

로크는 전쟁상태라는 개념과 함께 노예상태라는 개념도 제시하고 있다. 노예상태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제멋대로의 권력 밑에 종속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계약 등에 의해 노예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sup>22)</sup> 그리고 완전한 노예의 상태는 합법적인 정복자와 포로와의 사이에 줄곧 계속되는 전쟁상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sup>23)</sup>

### 3. 정치사회

전쟁상태의 개념은 로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정치사회 내지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매개 고리가 되고 있다. 즉 전쟁상태에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야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회(정치적 사회)에 가입시키며, 그리고 자연상태를 포기케 만드는 커다란 원인으로 된다는 것이다.<sup>24)</sup> 또 시민정부를 설정하는 것이 자연상태에서 보이는 불편함에 대한 적절한 구체책이라고 표현한다.<sup>25)</sup> 결국 정치사회는 전쟁상태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 역사 법칙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정치사회로의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로크가 말하는 정치사회의 핵심에 ‘법’이 있다. 인간이 자연상태의 자유, 생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 확립된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sup>26)</sup> 특히 재판 그리고 사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도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쟁상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는 오로지 나 자신 만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재판관으로 될 수가 있을 뿐이다.<sup>27)</sup>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계

20) J. Locke, op. cit., Book II, ch. 3, §16.

21) Th. Hobbes, *Leviathan*, Cambridge, 1991, ch. 14.

22) J. Locke, op. cit., Book II, ch. 4, §23.

23) J. Locke, *ibid.*, Book II, ch. 4, §24.

24) J. Locke, *ibid.*, Book II, ch. 3, §21.

25) J. Locke, *ibid.*, Book II, ch. 2, §13.

26) J. Locke, *ibid.*, Book II, ch. 4, §22.

되는 사건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이기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중히 여기는 나머지, 자기 자신과 그 친구들을 두둔하게 될 것이다.<sup>28)</sup>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일단 시작된 전쟁상태는 해결되지 못하고 줄곧 계속될 것이다.<sup>29)</sup>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공통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며, 공통적인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자연상태와 구별되는 정치사회의 핵심적 징표가 된다.

물론 공통적인 재판관이 형식적으로 임명되었다고 정치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크는 비록 법과 선임된 재판관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있다고 할지라도, 재판이 분명히 왜곡되어, 법이 공공연하게 곡해되어짐으로써, 일부의 사람들과 당파의 폭력과 가해행위가 옹호 되던가 또는 불문에 붙여지게 되던가 하는 곳에서는 전쟁상태 이외의 어떤 상태도 이를 상상하기란 곤란하다고 말한다.<sup>30)</sup> 사법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우리 현실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언명이다.<sup>31)</sup>

#### 4. 사회계약론

정치사회 내지 시민사회의 수립을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로크의 사회계약론 사상이 드러난다. 로크는 우선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권력, 특히 일체의 사적인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의 보호를 받고 불편부당의 평등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체의 사건을 공동사회의 손에 위임하는 경우 비로소 정치적 사회가 성립된다고 말한다.<sup>32)</sup> 즉 개별적 포기과 공동의 위임을 통한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사회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로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의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로크는 사회계약을 위한 동의 그리고 이를 통한 합의에는 어떠한 수의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만약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의 자유를 보유하는 채 남아 있게 된다.<sup>33)</sup> 원칙적으로 최초의 계약에는 그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인 형태로도 또 묵시적인 형태로도 가능하다. 로크는 어떠한 통치체의 어떠한 부분의 영토라도 이것을 소유 또는 향수하는 자는 사회계약에 대한 묵시의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동의는 통치체의 법률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제한적인 동의일 뿐이며,<sup>34)</sup> 한 나라의 신민이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서약이나 명시된 약속과 계약이

27) J. Locke, *ibid.*, Book II, ch. 3, §21.

28) J. Locke, *ibid.*, Book II, ch. 2, §13.

29) J. Locke, *ibid.*, Book II, ch. 3, §20.

30) J. Locke, *ibid.*, Book II, ch. 3, §20.

31) 2014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성은 144개 국가 중 82위에 머물렀다. 참고로 중국이 60위, 세네갈이 80위를 차지하였다(연합뉴스 2015년 2월 1일자).

32) J. Locke, *op. cit.*, Book II, ch. 7, §87.

33) J. Locke, *ibid.*, Book II, ch. 8, §95.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up>35)</sup>

그런데 사회계약 이후 그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들 역시 그 나라의 정부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36)</sup> 로크는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물을 상속함으로써 사회계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오직 동의에 의해서 비로소 그 나라의 성원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물론 이러한 동의는 사람마다 성년에 도달 될 때 그 연령의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하여,<sup>37)</sup> 개별적·순차적 동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이 되는 요건을 혈통이나 언어와 같은 객관적 요소에서 찾는 일부 헌법학 이론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모습이다.<sup>38)</sup>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되는 정치사회 내지 시민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라는 정치체와 같은 것임을 로크는 암암리에 밝히고 있다.<sup>39)</sup> 이 정치체를 개시하고 구성한다는 것은 다수결을 할 수 있는 수의 자유인들이 그와 같은 사회를 결성하는데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정치체를 결성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사회의 다수파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본다.<sup>40)</sup> 로크는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편의 힘이 이끌어가는 방향, 다수파의 동의가 있는 쪽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사회는 하나의 단체, 하나의 공동사회로서 행동하며 존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41)</sup> 오늘날에도 다수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sup>42)</sup> 로크는 정치체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성에서 다수결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로크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독립된 그리고 서로 평등한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회계약을 통해 통치체를 탄생시킨 실례가 있거나 한 것이냐는 반론이다.<sup>43)</sup> 로크는 사회계약의 실례가 발견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너무나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의 탄생과 유년기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나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sup>44)</sup> 오히려 성경

---

34) J. Locke, *ibid.*, Book II, ch. 8, §119.

35) J. Locke, *ibid.*, Book II, ch. 8, §112.

36) J. Locke, *ibid.*, Book II, ch. 8, §100.

37) J. Locke, *ibid.*, Book II, ch. 8, §117.

38) 예컨대 김경제, 헌법 제2조의 국민,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8, 73면 참조: 이 견해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앞서 조선이라는 단일한 지배체제에 속해 있었고 인종적으로 몽고족에 속하며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당시 조선어를 사용하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 교육되고 생활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9) J. Locke, *op. cit.*, Book II, ch. 7, §89.

40) J. Locke, *ibid.*, Book II, ch. 8, §99.

41) J. Locke, *ibid.*, Book II, ch. 8, §96.

42) 예컨대 홍성방,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 원리, 한림법학FORUM 제3권, 1993, 9면 이하.

43) J. Locke, *op. cit.*, Book II, ch. 8, §100.

44) J. Locke, *ibid.*, Book II, ch. 8, §101.

등의 기록을 동원하여 역사상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생겨진 여러 가지 통치체는 그 기원을 사회계약에 두고 있으며, 결국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sup>45)</sup> 통치체가 과연 자유로운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폭력과 정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국가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sup>46)</sup>

### III. 재산권

#### 1. 정치사회의 목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기보다는 자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연법에 의거하여 스스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권을 내어버리고 정치사회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하여는 보다 상론이 필요하다. 어찌 되었건 다른 사람의 권력의 지배와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7)</sup>

로크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첫째, 자연상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판정할 공통의 그리고 널리 인정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로크는 자연법이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도 명백하여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편견을 품게 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sup>48)</sup> 둘째,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하나의 확립된 법률에 따라서, 일체의 불화를 판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sup>49)</sup> 셋째,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이것을 올바르게 집행케 할 수 있는 권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sup>50)</sup> 결과적으로 자연상태 속에서 사람은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향수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며 또한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될 위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러내게 된다고 본다.<sup>51)</sup>

45) J. Locke, *ibid.*, Book II, ch. 8, §104.

46) 국가란 폭력의 독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역적 집단이라는 M. Weber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사이의 폭력적 투쟁이 정치의 피할 수 없는 본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萱野稔人[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문, 2010, 12면).

47) J. Locke, *op. cit.*, Book II, ch. 9, §123.

48) J. Locke, *ibid.*, Book II, ch. 9, §124.

49) J. Locke, *ibid.*, Book II, ch. 9, §125.

50) J. Locke, *ibid.*, Book II, ch. 9, §126.

51) J. Locke, *ibid.*, Book II, ch. 9, §123.

그런데 로크는 정치사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property)’이라는 말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재산은 생명(lives), 자유(liberties) 및 자산(estate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로크는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또한 그 공동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안락하고 안정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려는 데 있다고 말한다.<sup>52)</sup> 또 재산의 보전이야 말로,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국가를 만들어 그 통치에 따르려는 경우의, 커다란 주된 목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up>53)</sup>

## 2. 재산에 관하여

사회계약 그리고 정치사회 결성의 목적이 재산권에 있다면 이 재산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로크는 과연 어떻게 하여 인간이 어떤 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고 있다.<sup>54)</sup>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로크는 재산권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산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산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재산권과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귀착되게 되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로크는 대지와 인간 이하의 모든 피조물이 신께서 부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라고 본다. 다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와 이성을 이용하여 노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자연물에 대한 일정한 점유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자연이 공급해 준 대로의 상태에서부터 끄집어 낸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것에다 그의 노동을 가한 것이 되며 또한 그것에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것을 첨가한 것이 되며, 그것으로써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것을 첨가한 것이 되며 그것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sup>55)</sup> 이를테면 한 사람의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심으며 개량하고 재배하며 그리고 그 수확물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의 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된다.<sup>56)</sup>

로크는 노동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근거를 ‘가치’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는 원래 자연과 대지는 그 자체로서는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소재를 공급해 주는데 불과하다고 본다.<sup>57)</sup> 그리고 모든 것에 가치의 차이를 낳게 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이라고 말한다.<sup>58)</sup> 자연의 가치를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증가하게 하는 노동이야 말로 소유권의 근거라

52) J. Locke, *ibid.*, Book II, ch. 8, §95.

53) J. Locke, *ibid.*, Book II, ch. 9, §124.

54) J. Locke, *ibid.*, Book II, ch. 5, §25.

55) J. Locke, *ibid.*, Book II, ch. 5, §27.

56) J. Locke, *ibid.*, Book II, ch. 5, §32.

57) J. Locke, *ibid.*, Book II, ch. 5, §43.

58) J. Locke, *ibid.*, Book II, ch. 5, §40.

고 보는 것이다. 로크의 설명은 이른바 ‘노동가치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적 질서의 최대 비판자였던 마르크스와 사실상 그 출발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하겠다.<sup>59)</sup>

로크는 노동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뚜렷한 계약도 맺는 일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sup>60)</sup> 즉 자연상태에서 이미 확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상태는 이러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며, 특히 소유권의 보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국에는 명확한 합의에 의해서 이 지구의 각각 다른 지역과 구분된 토지에 대하여 상호간에 소유권을 확실하게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sup>61)</sup>

### 3. 재산권의 한계와 그 한계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유권의 취득 역시 합리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로크는 적어도 물건이 상하여 못쓰게 되기 전에 생활의 어떤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노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sup>62)</sup> 토지의 소유권도 그것을 충분히 개간하여 이용할 정도로만 취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sup>63)</sup>

그리고 - 적어도 인류의 초창기에는 -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상에는 충분히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양호한 상태로 또한 아직도 토지를 손에 넣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이용하고도 남을만한 정도의 토지가 남아있었다고 본다.<sup>64)</sup>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향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써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했다.<sup>65)</sup> 거꾸로 토지를 점유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했다.<sup>66)</sup> 이와 같은 기준으로부터 세계의 최초의 시대에는 실제로 각 사람의 소유물은 매우 적절한 정도로 즉 스스로 점유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한정되었다고 본 것이다. 로크는 자신의 시대에도 이러한 법칙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sup>67)</sup>

그러나 문명화된 시대 이후에 이러한 소유권의 한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화폐에 있다. 로크는 소모되든가 부패해버리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황금색의 금속 한 조각이, 커다란 고기 덩어리와 산과 같이 쌓아올

---

59) K. Marx, *Capital*, vol.1, penguin, 1976, p.126.

60) J. Locke, op. cit., Book II, ch. 5, §25.

61) J. Locke, ibid., Book II, ch. 5, §45.

62) J. Locke, ibid., Book II, ch. 5, §31.

63) J. Locke, ibid., Book II, ch. 5, §32.

64) J. Locke, ibid., Book II, ch. 5, §33.

65) J. Locke, ibid., Book II, ch. 5, §36.

66) J. Locke, ibid., Book II, ch. 5, §35.

67) J. Locke, ibid., Book II, ch. 5, §36.

린 곡식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말한다.<sup>68)</sup> 이러한 축적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물건이 상하여 못쓰게 되기 전에 생활의 어떤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소유권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로크는 화폐라는 것의 발명과 그리고 그 화폐에다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암묵적 합의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이상의 거대한 소유물과 그것에 대한 권리를 동의로써 낳게 하지만 않았다면 이 세계에는 현재의 인구의 배가 되는 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만한 충분한 토지가 아직도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69)</sup>

하지만 로크는 화폐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화폐를 통해 생산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의 사용 자체가 일정한 합의의 결과라는 점이다. 금과 은은 식물과 의복과 차량과 비교해 보면 인간 생활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의 가치는 단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sup>70)</sup> 화폐를 통해 균등하지 못한 사유재산을 만들어 내는 물품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오로지 인간이 금과 은에다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화폐의 사용에 맡음이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up>71)</sup>

결국 화폐를 통한 재산의 축적과 그에 의한 균등하지 못한 재산의 배분 역시 사람들이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크의 논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결론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 이후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얼마나 극심하였으며<sup>72)</sup> 이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명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괴로워하였는지를 로크가 보았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IV. 통치의 해체

### 1. 통치의 해체의 의미

로크는 시민정부론의 마지막 장인 제19장에서 통치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로크에 따르면 각 개인이 정치적 사회에 가입할 때 그 사회에 위임한 권력은 적어도 그 사회가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시 개개인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통

68) J. Locke, *ibid.*, Book II, ch. 5, §37.

69) J. Locke, *ibid.*, Book II, ch. 5, §36.

70) J. Locke, *ibid.*, Book II, ch. 5, §50.

71) J. Locke, *ibid.*, Book II, ch. 5, §50.

72) 나폴레옹이 전쟁을 했던 1806년만 하더라도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은 28세였으나, 산업혁명이 고조되던 1840년 프랑스인 평균수명은 20세로 곤두박질쳤는데, 이것은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2005, 79면).

치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그로써 정치적 사회의 최고 권력이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외국의 세력이 침입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결합은 필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며, 당연히 통치는 해체될 것이다.<sup>73)</sup> 그러나 로크가 집중하는 것은 통치가 내부로부터 해체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입법부는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심판권을 가진 주체이다. 입법부가 말로 국가에다 형태와 생명과 통일을 부여하는 혼인 것이다. 만일 국민이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감히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법률을 만드는 일이 되므로 국민은 이것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은 다시 굴종상태로부터 해방되어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sup>74)</sup> 이와 같은 사례로는 첫째, 군주가 입법부에 의해서 선언된 법률 대신에 그 자신의 제멋대로의 의지를 그 통치의 원칙으로 내세우게 되는 경우,<sup>75)</sup> 둘째, 입법부가 그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모여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군주가 방해하는 경우<sup>76)</sup> 셋째, 군주의 제멋대로의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 없이 또한 국민의 공통적인 이익에 반하여 선거인이나 선거방법이 변경된 경우<sup>77)</sup> 넷째, 국민이 군주나 입법부에 의해서 외국의 세력의 지배 밑으로 인도되어진 경우 등을 들고 있다.<sup>78)</sup>

한편 입법부나 행정권 중 어느 하나가 그에게 주어진 신탁에 위배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도 통치는 해체된다.<sup>79)</sup> 국민의 동의에 기인된 통치형태를 보전하지 않으며, 또한 공공의 복지와 재산의 보전이라는 통치 그 자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신탁을 위배하는 상황이다.<sup>80)</sup> 예컨대 입법부 또는 행정권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여 그 입법부 자체나 또는 그 공동사회의 어떤 부분으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할 경우,<sup>81)</sup> 입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며 또한 이것을 파괴해 버리려고 할 경우, 또는 국민을 자의적인 권력의 지배 밑에 있는 노예의 상태에로 떨어뜨리려고 할 경우

---

73) J. Locke, op. cit., Book II, ch. 19, §211.

74) J. Locke, ibid., Book II, ch. 19, §212.

75) J. Locke, ibid., Book II, ch. 19, §214.

76) J. Locke, ibid., Book II, ch. 19, §215.

77) J. Locke, ibid., Book II, ch. 19, §216; 로크는 “만일 그가 그 사회의 물리적 힘이나 재력이나 관직 등을 국민의 대표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또는 공공연히 사전에 선거민에게 무엇인가 언질을 주며 간청, 협박, 약속 및 기타의 수단을 사용하여 미리 짜놓은 사람들을 선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한다(J. Locke, ibid., Book II, ch. 19, §222).

78) J. Locke, ibid., Book II, ch. 19, §217; 로크는 “최고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책무를 게을리 하든가 포기해버리든가 하여 그 결과 이미 제정되어진 법률이 집행되어 질 수 없게 된 경우이다.”라고 말한다(J. Locke, ibid., Book II, ch. 19, §219).

79)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1.

80) J. Locke, ibid., Book II, ch. 19, §239.

81)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1.



등에는 입법자들은 그들 자신을 국민과의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며<sup>82)</sup> 따라서 통치는 해체된다.

## 2. 국민의 저항권

로크는 통치가 해체된 경우 국민은 그 본래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입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몸을 담게 된 목적인 그들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대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sup>83)</sup> 일단 통치가 해체되어 버리면 국민들은 자기네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데 따라서 -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또는 그 양자를 동시에 변경시킴으로써 - 종전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하여 그것으로써 자유로이 자기네들의 생활에 대비시킬 수가 있다.<sup>84)</sup> 이것이 그 유명한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다.

로크는 국민의 저항권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는 통치가 해체되어 전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전제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완전히 전제에 굴복되어 질 때까지는 그 전제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수단도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 전제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다.<sup>85)</sup>

국민의 저항권은 소극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를 해체하려는 자를 무력에 의해 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본다.<sup>86)</sup> 상대방으로부터의 습격에 대하여 단지 공격을 피동적으로 막기 위한 방패만을 가지고 대항하려는 사람, 아니면 공격자의 힘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손에는 아무런 칼도 들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저항하려는 자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여 오히려 심한 불편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로크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의를 표하는 일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어디에서든지 그 수고의 보답으로서 마땅히 상대방으로부터 예절 바르시고 정중하옵신 곤봉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힘으로써 저항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를 평등한 지위에 놓는 전쟁상태이며 외경이라든가 경의라든가 우위라든가 하는 여태까지의 관계를 일체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sup>87)</sup>

어려운 문제는 언제가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있다. 특히 군주나 입법부가 신탁에 위배하여 행동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누가 판단할

82)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2.

83)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2.

84)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0.

85)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0.

86) J. Locke, *ibid.*, Book II, ch. 19, §235.

87) J. Locke, *ibid.*, Book II, ch. 19, §235.

것인가. 이에 대해 로크는 국민이 그 재판관으로 되어야 하다고 말한다. 신탁을 받은 자나 그 대리인이 과연 정당하게 또한 그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이러한 인물에게 위임을 한 본인 즉 국민이 한 본인이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sup>88)</sup>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로크는 “만일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판정해야 할 재판관 즉 사법권이 이 땅 위에 없는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재판관으로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89)</sup> 이것은 실력을 행사하여 침략자와 압제자를 제거한다는 것이며, 즉 혁명을 단행한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3. 저항권에 대한 우려와 그 반론

이처럼 로크는 파격적인 저항권 사상을 피력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로크 역시 이러한 우려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 무지하며 언제나 불만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점, 그래서 통치의 기초를 국민의 불안정한 의견 즉 무정견과 변하기 쉬운 변덕에다 두는 것은 결국 통치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그러한 것이다.<sup>90)</sup> 실제로 홉스는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통치에는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크는 이러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이 실제로는 사소한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에게 익숙한 체제에 자타가 인정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는 데는 쉽사리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91)</sup> 로크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sup>92)</sup>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란이나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비판되고 있다. 로크는 “만일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인간이 오직 평화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폭력으로써 빼앗으려는 자에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몽땅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대체 어떠한 종류의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sup>93)</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만일 새끼 양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목구멍을 마구 거칠게 날뛰는 늑대가 물어뜯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최초의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은 압제였던가, 아니면 불복종이었던가.”<sup>94)</sup>

88) J. Locke, *ibid.*, Book II, ch. 19, §240.  
 89) J. Locke, *ibid.*, Book II, ch. 19, §241.  
 90)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3.  
 91)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3.  
 92)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5.  
 93)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8.  
 94) J. Locke, *ibid.*, Book II, ch. 19, §230.

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라는 점을 말한다. 일단 권력자들은 동포들로부터 신탁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대를 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한층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sup>95)</sup>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들은 - 그들의 권위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이 그 수중에 장악하고 있는 물리적 힘을 행사해보고 싶은 유혹 또는 그들 주위의 사람들의 감언 등에 의해서 -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보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로크는 이것이 반란이고 반역행위라고 말한다. 이러한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역행위에 빠질 두려움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그것의 위험과 부정을 명백히 보여주는 일, 즉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sup>96)</sup>

## V. 결론

지금까지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주요내용을 자연상태, 전쟁상태, 정치사회의 개념, 재산권 개념 그리고 통치의 해체와 저항권 개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로크는 다른 사회계약론 사상가들과는 달리 자연상태를 자연법이 준수되는 비교적 질서 잡힌 사회로 바라보았다. 자연상태를 벗어나 정치사회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로 전락하기 쉽거나, 전쟁상태가 닥친 경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치사회로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재산권이 보다 확고하게 보장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로크는 재산권을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적 자산을 중심으로 재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재산권은 인간의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노동가치설의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재산권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역시 질서 잡힌 자연상태의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통치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언제라도 권력자에게 저항하여 자신이 위임한 권력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선명하고 명쾌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로크의 사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적 형태이며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97)</sup>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 자연상태부터 자유로운 따라서 외부의 침해가 없으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소극적 자유’ 사상, 개별적 개인의 판단과 행위로 정치적 공동체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정치관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로크가 살았던 160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가져

95) J. Locke, *ibid.*, Book II, ch. 19, §231.

96) J. Locke, *ibid.*, Book II, ch. 19, §226.

97) C. Mouffe, *Politics and the Limits of Liberalism*, in: J. Martin(ed.), CHANTAL MOUFFE, 2013, p. 117.

오는데 기여한 혁명적 이론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 로크가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원자적이고 고립된 인간상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른바 공동체 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화폐를 통한 막대한 부의 축적과 - 로크는 이것 또한 사회계약을 통해 합의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 이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문제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에게 개별화된 주체로서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로크가 그렸던 세상을 현실의 세상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로크가 토대를 닦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일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로크의 사상은 피해갈 수 없는 준거점이라는 사실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제, 헌법 제2조의 국민,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8
-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김영사, 2007
-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2005
- 정달현, 로크의 정치철학, 영남대 출판부, 2007
- 홍성방,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 원리, 한림법학FORUM 제3권, 1993
- 萱野稔人(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눈, 2010
- J. Rawls(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 J. J. Rousseau(김중현 역), 인간불평등기원론,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 M. Walzer(김은희 역), 해석과 사회비판, 철학과 현실사, 2007
- Th. Hobbes, *Leviathan*, Cambridge, 1991
-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The Liberal Arts Press(이극찬 역, 시민정부론, 연세대 출판부, 1970).
- K. Marx, *Capital*, vol.1, penguin, 1976
- C. Mouffe, *Politics and the Limits of Liberalism*, in: J. Martin(ed.), CHANTAL MOUFFE, 2013

# Modern Constitutional Meaning of John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Han-sang Cho  
Dep. of Law  
Cheongju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main contents of Locke'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refully. Main themes are the State of Nature and War, Political or Civil Society, Social Contract, Property, the Dissolution of Government and Right of Resistance. Locke's Theory is the root and classical form of political liberalism in general. The clauses are as follows; Reasonable and rational image of men, natural and inherent rights, operation of community through individual person's judgments and behaviors, and so on. Political liberalism laid the foundation stone towards human development, but we can make an estimate that this idea reaches the limit today. Political liberalism in want of a total review. As a result, we can not but research Locke's idea in order to diagnose actuality and reform reality.

Key Word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State of Nature, State of War, Social Contract, Property, Dissolution of Government, Right of Resistance

논문투고일 : 2015. 6. 27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혼인과 비혼 - 프랑스의 Pacs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백 승 흘

### 국 문 요 약

1999년 11월 15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결합에 대하여 혼인 유사의 형태를 인정하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이하 ‘팍스’로 표기함)가 제정되었다. 프랑스 사회의 가족적 연대감이나 가족에 관한 보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정작 동성애자들의 반응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독일에서도 팍스와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2000년 12월 유럽연합의회에서 성적지향성에 의한 차별은 권리장전 제21조에서 금지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2001년 2월 16일 동성의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을 통하여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동법률은 2004년 12월 15일에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문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에이즈의 확산과 동성커플의 가족들로부터의 냉대, 그리고 결정적인 두 개의 판례에 의해 촉발된 팍스의 입법은 동일한 보수적 성향의 국가인 독일의 입법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법이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혼인’에 수렴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부재산제나 동반자 사이의 권리의무에서 두드러진다. 예상을 뒤엎고 팍스의 이용자가 이성커플이 많은 이유나, 생활동반자관계법이 혼인에 수렴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혼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성이 그 원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혼인은 프랑스혁명

\* 이 논문은 2013-2015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후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민사계약이 되었지만, 체결이 자유로운 만큼 그 해소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팩스와 생활동반자관계법의 동향은 이에 대한 반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어 : 팩스, 팩스계약, 팩스의 해소, 자유로운 결합, 연대

## I. 서 론

1999년 11월 15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결합에 대하여 혼인 유사의 형태를 인정하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이하 ‘팩스’로 표기함)가 제정되었다. 프랑스 사회의 가족적 연대감이나 가족에 관한 보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정작 동성애자들의 반응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프랑스에서는 팩스의 제정 이전에도 다섯 가지 유형의 혼외동서형태가 있었다고 한다.<sup>1)</sup> 첫째,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고, 실제 동거한 지 일 년 이내에 결혼을 한 “예비결혼(un prélude du mariage)”으로서의 동거, 둘째는 “결혼하기 전 실험(un test avant le mariage)”으로서의 동거로서, 이는 같이 사는 경험을 통해 결혼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동거로서, 동거 시작 1-3년 후에 결혼을 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일시적 결합(l'union éphémère)”으로 결혼의 약속 없이 두 사람이 공동생활에 들어가는 것으로, 3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공동생활 후 헤어진 경우이다. 네 번째 동거 유형은 “안정적 결합(l'union stable)”인데, 결혼의 약속 없이 시작하여 실제 결혼도 안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3년 이상 지속된 결합형태이다. 다섯째 유형은 “자유로운 결합(l'union libre)”으로 커플이 마치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동거 시작 3년 내에 아이도 낳고 살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들의 자녀는 결혼만큼이나 든든하게 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중에는 후에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유무가 결혼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팩스와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2000년 12월 유럽연합의회에서 성적지향성에 의한 차별은 권리장전 제21조에서 금지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2001년 2월 16일 동성의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을 통하여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sup>2)</sup> 2002년 7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sup>3)</sup> 동법률은

1) Villeneuve-Gokalp, “Du mariage aux unions sans papiers: Histoire récente des transformations conjugales”, Population, n°2, INED, 1990; 김수현,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8집(2003), 5면.

2) BGBl. I. S. 266.



2004년 12월 15일에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4)</sup>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에이즈의 확산과 동성커플의 가족들로부터의 냉대, 그리고 결정적인 두 개의 판례에 의해 촉발된 파스의 입법은 동일한 보수적 성향의 국가인 독일의 입법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더욱이 파스의 제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을 크게 뒤엎고 파스계약체결 후 등록자는 43,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 중 지방에서는 60%, 파리에서는 30%가 이성커플이었다.<sup>5)</sup> 독일의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법이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혼인’에 수렴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부재산제나 동반자 사이의 권리의무에서 두드러진다. 예상을 뒤엎고 파스의 이용자가 이성커플이 많은 이유나, 생활동반자관계법이 혼인에 수렴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혼인체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성이 그 원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혼인은 프랑스혁명 이후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민사계약이 되었지만, 체결이 자유로운 만큼 그 해소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파스와 생활동반자관계법의 동향은 이에 대한 반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파스를 개관하고자 한다. 파스의 어떤 부분이 혼외동서와 같은 ‘자유로운 결합’을 버리고 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인지, 파스는 법률혼에 얼마만큼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간단히 개관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파스의 입법에 관해서도 간단히 개관함으로써 프랑스가 갖고 있는 파스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프랑스의 동향

### 1. 동성 커플의 승인 - 새로운 요구

1980년대에 이미 등록파트너십제도를 시행한 덴마크, 동성 커플이 혼인 커플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스웨덴, 그리고 동성 커플에게도 혼인의 길을 연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형식은 어떻든 동성 커플의 승인 요구에 응하여 입법하는 경향이 드물지 않다. 그렇지만

3) BVerfGE 105, 313.

4) BGBl. I. S. 3398.

5) Marie Huret, “PACS: les hétéros aussi”, L'Express, 16, 11, 2000; 김수현, 앞의 글, 38면.

결혼보다 제약이 적은 파스를 선택한 커플은 프랑스에서 2007년 10만 건을 넘어 섰다. 세계에서 결혼과 거의 같은 법적 우대권한이 추가 된 2005년부터 성립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년도의 32%가 증가하여 10만212건에 달했다. 파스가 제정된 1999년 당시는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이 커플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립 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게이 커플은 7% 뿐이다. 다만 이혼에 해당하는 파스 해약도 급증하고 있다. 2007년은 13474건의 파스 해소가 발생하고 있다. 파스 해소가 이혼보다 법적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해소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Le FIGARO, 2008.2.29. <<http://www.lefigaro.fr/actualites/2008/02/16/01001-20080216ARTFIG00056-le-pacs-a-franchi-la-barre-des-signatures-en-.php>> (2015.5.6. 최종 방문).

이러한 동성 커플의 승인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적어도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동성 커플을 법률로 승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성애자 측에서 우선 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 커플의 국가에 의한 승인은, 배타적인 일대일의 관계에 기하여 부르주아적 이성 커플모델의 재생산으로 간주되어, 가부장적·이성애지상주의사회를 비판해 온 5월 혁명<sup>6)</sup>의 후계자인 동성애자들에게 80년대까지 기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이러한 부르주아적 가족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액터(actor)로서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가족幻想의 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규범적 구속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섹슈얼리티의 이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커플로서의 생활을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요구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또 이 시대의 동성애 해방운동의 목적은 동성애 행위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던 형사적 규제를 철폐하고, 동성애를 범죄시 하는 것을 국가로 하여금 중지시켜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었다.<sup>7)</sup> 이 사이에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힘입은 (특히 남성) 동성애자는 「게토(ghetto) 안의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을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자유주의(Libertaire)의 모델은 동성애자 자신에 의해 재검토되게 되었다. 상황을 완전하게 뒤집어 버린 것은 에이즈의 확대이다. 파트너의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이 「게토 안의 행복」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 
- 6) 1968년 5월의 학생봉기를 계기로 지식인·노동자가 호응하여 프랑스 전역에까지 달한 사회투쟁을 말한다. 5월 혁명(五月革命) 또는 68 혁명(프랑스어: Mai 68, May 68, 독일어: Mai 68), 또는 프랑스 5월 혁명은 프랑스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의 모순으로 인한 저항운동과 총과업투쟁을 뜻한다. 이 혁명은 교육체제와 사회문화라는 측면에서 "구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였다. 즉, 68혁명 또는 5월혁명은 가치와 질서에 저항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는 파리의 몇몇 대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행정부와 경찰에 대한 학생 봉기로 시작됐다. 드골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저항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이는 운동의 열기만 접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라틴 지구의 경찰과의 가두전투를 일으켰고, 결국 프랑스 전역의 학생과 파리 전 노동자의 2/3에 해당하는 노동자 총과업으로 이어졌다. 드골 정부는 이러한 시위자들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동원했고 의회를 해산했으며 1968년 6월 23일에는 다시 총선을 실시했다. 이즈음 정부는 붕괴되기 직전이었고 드골은 독일군 주둔의 비행 기지로 잠시 피신하기까지 했으나, 혁명적인 상황은 지속되지 못했고 좌파연합인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on Générale du Travail)과 프랑스 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의 실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복귀했다. 6월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드골의 정당은 이전보다 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드골은 이듬해 물러나고 말았다. 저항자들에게 68년 5월 혁명은 실패였으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 등의 진보적인 이념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현재의 프랑스를 주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 한 달 동안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68년 5월 혁명은 이러한 가치의 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5%EC%9B%94\\_%ED%98%81%EB%AA%85](http://ko.wikipedia.org/wiki/5%EC%9B%94_%ED%98%81%EB%AA%85)> (2015.5.6. 최종방문).
- 7) 두 가지 형사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나는 동성 사이의 성행위 동의연령을 이성 사이의 15살보다 높은 18세로 하고 있던 형법331조 제2항. 또 하나는 공연외설죄에 대해, 동성애에 관계할 때는 양형을 무겁게 하고 있던 형법 330조 제2항. 전자는 독일 점령하의 비시 정권하에서 채용된 것이지만, 제4공화제하에서도 유지되어 후자에 이르러 제5공화제하에서 새롭게 채용된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폐지된 것은 1982년이다.

파트너의 죽음에 의해 그때까지 살고 있던 주거에서 쫓겨나가거나 파트너의 가족에게 모두 빼앗겨 무일푼으로 내던져지는, 일상적인 잔혹함과 마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사법상의 거부

프랑스에서는 ‘자유로운 결합’(union libre)라고 하는 혼인하지 않는 커플의 공동생활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원래 자유로운 결합은 완전하게 법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사실 상태였다. 그러나 이 혼인하지 않는 커플의 보급이라고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법원 및 사회는 이것들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게 되어 있었다. 자유로운 결합의 배우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사회 보장의 향수는 법률에 의해 명기되며, 또 조건을 채우면 혼인하지 않았어도 인공생식의료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동성 커플은 이것을 발판으로 커플로서의 승인의 과제에 임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혼인 외 커플에게 인정되어 온 제 권리를 동성 커플에게도 인정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80년대를 통해서 쟁점이 되었던 2개의 사건이 사법계의 최고법원인 파퓌원에서 재정되게 되었고,<sup>8)</sup> 이것이 그 후의 취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sup>9)</sup>

또 하나의 사건은 사회 보장에 관한 것이었다. 법률은 「피보험자와 부부처럼 생활하고, 피보험자의 실효적이고 항상적인 부양아래에 있는 사람은, 질병보험, 출산 보험의 현물 급부의 수급자격을 가진다」<sup>10)</sup>라고 하고 있었다. 피보험자를 레즈비언 커플 파트너로 가지면서, 1983년에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이 거부되고 있던 있는 여성이, 자신과 파트너와의 생활은 자유로운 결합과 동시할 수가 있다고 하여 관할 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이 법률은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와 같은 생활’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여, 이 여성의 이의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렌즈 공소법원에 공소했다. 공소법원은 이 결정을 재검정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파퓌원도 「부부와 같은 생활」의 개념은 남녀로 된 커플 밖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퓌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8) 파퓌원사회부 1989년 7월 11일.

9) 사건의 개요는 이하와 같았다.

「엘 프랑스 국영 항공의 내부 규칙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적용하고 있던 동사의 항공운임의 편의를 자유로운 결합(union libre) 파트너에게 확대하는 것을 정하고 있었다. 동사에 근무하는 남성 객실 승무원이 자신의 동성 파트너에게도 그 편의를 도모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엘 프랑스사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동 객실 승무원은 파리 노동재판소에 제소했다. 파리 노동재판소는 사회 풍속의 발전에 비추어, 두 명의 동성애자의 공동생활은 이성애자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며, 엘 프랑스사의 규칙에 의해 생각되고 있는 자유로운 결합은 동성의 자유로운 결합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계속된 파리 공소법원은 내부 규칙에 쓰여 있는 「자유로운 결합의 배우자」 「직원과 그 가족」 「부부와 같은 생활(Vie maritale)」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남녀의 상황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여 제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파퓌원도 「자유로운 결합 상태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익을 확대하는 그 규칙은 혼인에 의해 연결되는 것 없이, 부부와 같이 생활할 것을 결정한 2명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으로 된 커플에만 관계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한 공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10) 사회 보장의 일반화에 관한 1978년 1월 2일의 법률 13조.

2개의 사안을 공통하여 취급한 검사<sup>11)</sup>는, 이성간의 자유로운 결합을 혼인과 접근시키고, 동성 간의 자유로운 결합과는 멀리한다고 하는 논리를 채용했다. 그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간의 자유로운 결합과 혼인은 적출인지 자연인지 하는 차이는 있지만, 가족을 형성하는 즉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같고, 그 이성 커플들과 재생산을 담당할 수 없는 동성 간의 자유로운 결합은 동일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전개는 판례의 흐름으로부터 보면 안정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그때까지는 오히려 혼인과 순전한 사실인 자유로운 결합을 구별하는 것에 고심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결합의 주요한 요소란 혼인과의 '외관상의 유사'가 아니고, 단지 자유로운 결합 관계의 '안정성과 公知性'이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결합이 동성 간의 자유로운 결합이 되면, 재판관의 논의가 전도되어 자유로운 결합은 혼인과의 유사성에 의해 정의되게 될 것이다. 「엄숙」한 행위인 혼인과 순전한 사실인 자유로운 결합, 즉 공유재산제, 정조의무, 부양 의무, 부조 의무 등의 유무에 의해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2개의 상황을 접근시키는 이 논리는 일부 학설에 의해 심하게 비판되었다.<sup>12)</sup>

어쨌든 이 1989년의 2개의 판결에 의해, 이성간의 자유로운 결합 커플에게 인정되고 있던 권리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과월원의 거절의 입장은 임대차의 移轉에 대해서도 완고하게 관철된다.<sup>13)</sup>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명의인인 파트너를 에이저로 잃은 한 당사자가 집주인에 의해 내쫓긴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동성적인 여론에는 부당한 것이라 받아들여진 것 같다.

결국 이러한 최고법원에 의한 거부가 입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촉구했다.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는 형태로 개인으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손에 넣은 동성애자는 커플로서의 승인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벽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와서 외부의 강한 저항을 맞게 된 것은 동성 커플의 승인이 그때까지 동성애자가 개인으로서 자유를 요구하는 한에서는 문제로 될 리가 없었던 커플 사이의 hierarchy를 문제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한 자유롭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표현되는 minority에 대한 「관용」의 범주를 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 3. 혼인율의 감소와 자유로운 결합의 증가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 문제로 간주된 이유는 단순히 이성커플이 관념적인 원칙에 따른 혼인을 거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혼인과 이혼을 규정하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한 이유로 사실상 이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 혼인이 내포한 불해소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이혼의 조건인 이혼 사유, 이혼의 복잡

11) 프랑스에서는 민사 재판에 검찰관이 관여하고, 검사가 총괄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재판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12) Jacqueline RUBELLIN DEVICHI, Revue trimestrielle du droit civil, janv-mars, 1990.

13) 과월원민사부 1997년 12월 17일.

한 절차, 이혼의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직접 보아왔던 혹은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sup>14)</sup> 따라서 자유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의사가 결국 낮은 혼인율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산물로서 제정된 PACS는 초기의 시민연합계약(contrat d'union civile), 공동이익협약(pacte d'intérêt commun)의 이름을 거쳐 마침내 팩스(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팩스는 1999년 11월 15일 최초로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III. 팩스의 개요

#### 1. 팩스의 성립

##### 1) 실질적 요건

팩스의 체결을 위하여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의 성인이어야 하지만, 성별은 묻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515-1조).<sup>15)</sup> 즉 남성 1인과 여성 1인, 남성 2인 혹은 여성 2인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공동생활조직은 한편에서 단순한 사실상의 결합인 同棲로는 멈추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혼인을 바라지는 않는 이성커플, 다른 한편에서는 혼인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 수 없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는 커플, 특히 동성커플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팩스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18세에 이르러야한다(제515-1조). 왜냐하면 비록 친권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사람이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팩스는 미성년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인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나아가 팩스의 체결에는 행위능력이 필요하므로 능력자가 아니면 안 된다. 즉 모든 정신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부터 後見을 받는 성인은 팩스를 체결할 수 없다. 반대로 保佐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는 재산의 관리에만 미치므로, 법률은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보좌는 배제되는 경우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보좌인은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팩스를 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상의 보호 하에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피보좌인과」 같다.<sup>16)</sup>

---

14) Michel GRIMALDI, Réflexions sur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du droit français, Rép. Defrénois n° 12, 30 juin 2003(Doctrine, article 37763), p. 813-824;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 사회, 42호 (2012.6.), 204면.

15) 이하 특별히 법령의 언급이 없는 것은 ‘프랑스민법’의 조문을 말한다.

16) 이에 대하여는 후견에 놓인 사람이 혼인은 할 수 있게 하면서 법적 의무가 더 경한 팩스를 체결할 수 없게 한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C. Mérary et F. Leroy-Forgeot, Le PACS,

팍스는 직계친족 사이, 직계인척 사이, 삼촌 이내의 방계친족사이에는 체결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근친상간관련의 금지가 문제 되므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혼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이 절대적 무효가 된다(제515-2조 1<sup>0</sup>). 혼인의 경우는 일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팍스에 관해서는 법률이 그 점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

또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이미 혼인하였거나 팍스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팍스의 체결이 금지된다(제515-2조 2<sup>0</sup>, 3<sup>0</sup>).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부일처제와 유사한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에 일부일처제 유사의 원칙이 존중되면 어떠한 회수의 제한도, 해소 후의 기간의 제한도 없이 팍스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 2) 형식적 요건

### (1) 채권계약

팍스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두 명의 사람이 자신들의 의무의 내용을 결정하여 자유롭게 맺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팍스는 프랑스민법 제1101조 이하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과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조항에 의해 규율된다. 사서증서에 관한 것이므로 두 명의 계약자 사이에 팍스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등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등록함으로써 이 계약을 제3자나 다른 조직이 인정하게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세무서나 임대인, 사용자 등에 대해서이다.

덧붙여서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하의 3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팍스는 취소의 대상이다. 첫째,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능력을 가지는 성인만이 팍스를 맺을 수가 있음은 앞서 기술하였다. 둘째, 계약자의 동의는 자유로워야 한다. 팍스 계약자 각자가 자발적으로,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민법 제1109조는, 비록 계약서에 두 명의 계약자 이름이 있었다고 해도, 각 계약자는 그 동의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계약은 적법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계약은 그 체결의 목적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팍스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이 정하는 상호적이고 물질적인 부조와 공동생활을 조직하는 것이 팍스 계약의 목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팍스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조항(예를 들면, 파트너 일방의 부담이 너무나 불균형한 것)을 포함한 경우, 이 조항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팍스 자체의 취소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위장 팍스”는 목적이 적법하지 않은 계약의 예 그 자체이다. 이것은 이 법률이 발효된 첫 해에 일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위장 팍스는 특히 일부 공무원의 승진과 배치전환에 관한 이익을 노린 것이다.<sup>17)</sup>

---

Puf., 2000, Paris, p.58)고 한다.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 44권 제1호, 54면.

## (2) 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팍스법에는 파트너가 채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파트너들은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제515-3조 제2항; 2006년 12월 23일의 시행령(n° 2006-1806)).

비록 계약이 공동생활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계약은 팍스 커플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이 법률에 정해진 효과를 당연히 초래하게 된다. 즉 상호적이고 물질적인 부조, 일상생활상의 지출(주거비, 식비, 유지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연대채무, 마찬가지로 팍스에 의해 도입되는 사회보장이나 조세에 대한 조치 등이다.

계약서에 두 명이 함께 서명을 하고, 양 파트너는 동일한 것을 또 한 부 작성한 후에 거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된다(제515-3조 제2항). 물론 이 절차 이전에 우선 각 파트너는 이미 다른 팍스를 맺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출생지 관할법원 서기과에 필요한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만 파트너의 한 사람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증명서는 파리 지방법원 서기과에서 제공한다. 이 두 개의 서류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않는 이상 팍스의 등록은 불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법원에서 확인하여, 접수일에 각 당사자의 출생증명서에 팍스의 체결사실과 다른 일방의 신분을 등록하고 절차에 따라 공표한다.

## 2. 팍스의 해소

혼인과 마찬가지로 팍스는 두 가지 이유로써 해소될 수 있다. 당사자의 결별 혹은 어느 일방의 사망이다.

결별에 관해서는 오히려 제도를 간편화하여 입법자는 확실하게 이혼절차와 구별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남겨진 일방에게 팍스가 때로는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sup>18)</sup>

### 1) 당사자의 자발적인 결별

팍스의 체결 당사자가 만약 이성애자라면 파트너끼리 혼인하거나, 혹은 어느 한편이 누군

---

17) 병원근무 공무원, 국토방위 공무원, 국가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파트너와 근무지를 근접시키기 위해서 팍스의 체결을 이용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파트너와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편에서 파트너에게 근접해 가기 위해서 자신의 배치전환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 우선적인 재적출향이나 대기의 권리가 있다. 이것은 속하여 있는 공공단체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운 포스트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로 재적 출향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의 포스트를 명도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포스트를 기다릴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 거론한 프랑스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은 법률은 그것이 팍스 커플에게 부과할 의무(특히 공동생활의 의무)를 동서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선권은 동서자에게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Laurence de Percin/齋藤笑美子譯, le Pacs (パックス), 綠風出版, 2004, 78頁.

18) Laurence de Percin/齋藤笑美子譯, 위의 책, 84頁.

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팩스는 즉시 해소된다(제515-7조 제1항). 그리고 팩스를 등록한 지방법원 서기과에 혼인증서의 등본과 혼인이 기재된 출생증서의 등본을 송부한다. 헌법원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질서에 기인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팩스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방적 팩스 해소의 청구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반적 민사책임으로써 배상의 의무가 있다.<sup>19)</sup>

두 명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이 제3자와 혼인할 것을 결정했을 때도, 이 당사자는 혼인 예식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혼인증서를 법원 서기과에 보내기 전에, 그 팩스의 타방 당사자에게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혼인에 의해 팩스를 파기하였음을 송달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 모두 혼인한 경우에도 팩스는 혼인한 날에 팩스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515-7조 제1항).

## 2) 결별의 합의

### (1) 공동의 합의

팩스 당사자의 혼인에 의한 종료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합의에 의한 팩스의 파기는 매우 간단하다. 두 명의 구성원은 팩스 종료의 공동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제515-7조 제3항). 양 당사자가 모여 이에 서명하고,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살고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에 의해 팩스의 해소가 공표된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15-7조 제7항, 제8항).

### (2) 일방의 파기

이혼은 고통스런 분쟁을 빈번히 일으킨다. 이러한 사태를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입법자는 팩스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완전히 참신한 견해를 채용하고 있다. 팩스는 무기한의 계약이라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면, 동종의 다른 계약과 같이 당사자의 누군가에 의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이 계약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를 포기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게다가 그 포기에 어떠한 이유를 원용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다른 중요한 점은 이혼유형과 같이 상대방의 과실(faute)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다. 두 명의 파트너가 결별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데 충분한 이유를 요구하여 분쟁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파트너의 한사람에 의한 팩스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지만, 2개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다른 무기한 계약의 경우와 같이 우선 상대방이 그에 관해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을 것(제515-7조 제5항), 그리고 3개월의 예고기간이 지켜지는 것이었다. 이 예고기간은 2006년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sup>20)</sup> 따라서 팩스의 해소는 법원의 서기가 이를 등록한 날에

19) 안문희, 앞의 글, 221면 참조.

20) 2006년 6월 28일, Loi n° 2006-728.



효력이 발생하며, 팩스의 해소가 공표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15-7조 제7항, 제8항).

당사자들의 결별은 어느 일방 혹은 쌍방 모두의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실제 팩스가 과실을 주장할 필요 없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진정으로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률은 원래 이 가정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확실히 법률은 당사자가 팩스를 파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도록 의무화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겨진 당사자가 팩스의 파기가 자신에게 부당한 것이며, 자신이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소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원도 팩스계약은 부당파기에 대한 배상청구를 파트너에게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sup>21)</sup>

### 3) 당사자의 한 사람이 피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팩스를 체결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미 팩스를 체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 후견을 선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능력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는 몇 개의 선택이 있다.

첫째, 후견에 놓인 그 상대방과 팩스를 체결한 채로 있는 것이다. 법률은 이것을 금지하지 않았다(제506-1조). 능력이 있는 파트너는 그렇게 할 권리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만, 재판관에게 신청했다고 해도 혼인한 배우자와는 달리 후견인으로 자신이 임명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파트너는 공동생활의 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를 정기적으로 후견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팩스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법률은 후견하에 있는 사람의 상대방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팩스가 이유를 적시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는 이상 이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경우 파기의 의지를 송달받는 상대는 후견하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미 기술한 일방적 파기의 경우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절차를 갖추면 된다. 이런 이유로 집행관의 송달을 받고, 팩스가 해소되는 것을 아는 것은 이 후견인이다. 그리고 후견인도 일방적으로 팩스를 파기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친족회 혹은 후견재판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506-1조 제2항).

파기의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때도 있다. 후견하에 있는 성인과 팩스를 체결하고 있는 파트너와 그 후견인이(친족회, 없는 경우는 후견재판관의 허가를 항상 얻어서) 팩스를 공동의 합의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의 개재는 필요 없다. 쌍방이 팩스 종료의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두 명의 당사자 사이의 공통의 합의가 있는 파기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21) Laurence de Percin/齋藤笑美子譯, 앞의 책, 90頁; 안문희, 앞의 글, 220면 참조.

#### 4) 사망

팍스는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다(제515-7조 제4항). 생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사망신고서를 팍스의 등기가 있는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15-7조 제4항). 팍스체결자의 사망시에 팍스는 종료된다(제515-7조 제7항 제3호).

#### 5)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

팍스에는 민법상의 계약 및 계약상 의무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제도 팍스계약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sup>22)</sup> 그러나 팍스는 계약의 성질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제보다는 해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23)</sup>

### 3. 팍스의 효과

팍스는 혼인과 동일한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팍스의 체결은 어떠한 친족관계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다만 팍스 체결자 사이에서 재산적 효과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즉, 사회적으로 팍스의 당사자는 각각 독립된 개인이며, 姓과 國籍에서 아무런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어떠한 부양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프랑스민법 제312조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의 원칙은 팍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4)</sup> 나아가 팍스의 각 당사자에게 독신의 지위에서는 입양이 허용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입양의 효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팍스의 양 당사자가 공동 입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혼인의 일방 배우자의 입양의 효과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법 규정은 팍스 당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46조).

이렇게 사적관계의 부존재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팍스는 당사자 사이에 약간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권리 의무는 지방법원 서기과에 팍스를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의무란 곧 ‘連帶’이다. 이렇게 해서 양당사자는 즉시 그 계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호적이고 물질적으로 서로 도울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일상생활의 필요와 공동주거에 관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1) 의무적 공동생활(제515-4조)

공동생활은 주소가 공동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에 관해서 헌법원은 “공동생활의 개념은 이익의 공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의 사람이 단지 동거하고 있는 것만을

22) A. Bénabent, *Droit civil, Famille*, Litec, Paris, 2000, Supplément sur le pacs, n° 706, p.3; 남효순, 앞의 글, 77면.

23) 남효순, 위의 글, 77면.

24) 따라서 PACS 당사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입의 인지(reconnaissance)’와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action de recherche de paternité)를 통해, 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식을 행한 부부 사이에서 또는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혼인을 입증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신분의 취득(posssession d'état)’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안문희, 앞의 글, 212면 참조.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나아가 공동생활은 “공동의 거처에 더해, 커플로서의 생활”을 전제로 할 것을 밝혔다.<sup>25)</sup>

팍스법은 ‘공동생활’, ‘공동거처’, ‘공동주거’ 등의 용어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지만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다. 혼인한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의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공동생활의 성립은 문제되지 않듯이 팍스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민법 제515-3조는 ‘공동거주지가 속한 관할법원에 팍스를 신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두 개의 주거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공동의 거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팍스의 신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정이 어느 법원에서 행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부양과 협조의무를 진다. 이는 ‘팍스(PACS)’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는 ‘연대의무 또는 연대책임(solidarité)’이라는 단어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팍스의 각 당사자는 혼인의 각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부양과 협조의무를 지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제212조).

정조의무에 관해서는 2006년의 개정법에서 당사자 서로에 대한 존중, 즉 신뢰를 협조의무의 연장으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이혼이 팍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조의무의 문제는 사법상의 해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배상에서도 제한되고 있다.<sup>26)</sup>

## 2) 별산제의 채용

2006년 개정 전의 프랑스민법 제515-5조는 팍스체결 후의 취득재산에 관해서는 ‘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을 통하여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를 채택하였다. 물론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팍스계약의 내용에 공유제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인에서는 당사자들이 혼인 전의 계약으로 재산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제가 법정재산제가 되는 반면에, 팍스계약의 체결시에는 당사자들이 재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별산제가 법정재산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팍스체결 전에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이 되며, 팍스 체결 중에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소유가 된다. 물론 이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가구 등에 관해서는 팍스의 체결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절반에 관하여 각각 권리를 갖는다.

## 3) 기타

### (1) 사회보장급부수급권

이것은 아마 팍스계약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일 것이다. 자신은 질병보험에 가입하지 않

25) Laurence de Percin/齋藤笑美子譯, 앞의 책, 47頁.

26) 안문희, 앞의 글, 214면.

있지만 상대방 보장을 팩스의 체결 후 곧 향수할 수가 있다. 즉 사회보장급부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휴업보상수당은 수급할 수 없다.

이러한 보장은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12개월간의 공동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경우에 수급권자인 당사자는 그 팩스 상대방의 실효적, 전체적 또 영속적인 부양 하에 있음을 매년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것을 위해 질병 보험 금고에 두 명이 모여 선서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결별 혹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 수급권자는 결별 혹은 사망의 날로부터 4년간은 사회보장에 의해 보호된다. 이 보호는 수급권자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고 있거나 혹은 기르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 무기한이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자기 자신이 보험에 들 수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수급권자가 되면 그 원래의 상대방의 비호는 종료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있다며, 그 자녀가 적출자든, 자연자(=혼외자)이든(인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자든, 거두어 진 자녀든, 전쟁고아든, 후견 하에 있는 고아든, 16세 미만으로 팩스 커플에게 양육되고 있으면 자녀가 자동적으로 수급권자가 된다. 견습 중의 18세 미만의 자녀,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20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도 같다. 질병에 의한 중단이 있는 경우는 연장도 가능하다. 더욱이 연령에 불구하고 신체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어떤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머무를 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인인 자녀는 자율수급권자가 된다, 즉 사회보장기관에 그 신청을 하면 자신의 명의로 지불받을 수도 있다.

## (2) 커플의 收入

몇 개의 사회보장급부나 연대급부는 수급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되지만, 수급자가 팩스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고려되는 것은 자신의 소득만이 아니고 커플의 소득이다. 따라서 팩스의 체결은 급부의 인하(때로는 인상)를, 혹은 완전히 재검토하는 경우를 발생시키는 때가 있다.

## (3) 노동

혼인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팩스 파트너는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가족상황 그리고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바캉스의 출발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종업원이 그 파트너와 함께 출발할 수 없었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팩스 파트너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같은 날에 휴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혼인한 부부에게는 혼인했을 때에 4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허용되지만, 팩스의 당

사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에는 팩스 당사자들에게도 3일간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방의 입양의 경우에도 이러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혼인한 커플과 마찬가지로 생존 파트너는 그 파트너의 사망시에는 2일간의 휴가의 권리가 있다.

만일 팩스 체결자가 병원근무 공무원, 국토방위 공무원,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 자신의 파트너와 근무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팩스의 체결을 이용할 수가 있다. 즉, 만약 파트너와 떨어져 있었을 경우에는, 한편으로 파트너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배치전환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 우선적인 근무지 변경신청이나 대기의 권리가 있다. 이것은 속해 있는 공공단체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운 근무지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의 직책을 명도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직책을 기다릴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 헌법원은 법률은 그것이 팩스 커플에게 부과한 의무(특히 공동생활의무)를 자유로운 결합에는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선권은 자유로운 결합에는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7)</sup>

#### (4) 팩스 커플의 세제상의 지위

법률은 커플이 순수하게 세제상의 이익을 위해서 팩스를 맺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팩스 파트너가 일정한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그 계약의 성실함을 증명하면, 혼인한 부부와 같은 권리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득에 대한 공동과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팩스를 체결하고, 그리고 3년간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과세는 팩스를 서기과에 등록한 때로부터 3년 후에 해당하는 연차의 소득신고부터 인정되기 때문이다.

1999년 12월의 세무통달은 주민세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와 같은 준칙에 따를 것을 밝히고 있다. 즉 팩스체결 3년 후부터 공동과세와 이 시점부터 세금의 지불에 관해 당사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커플의 형태가 아니라 주거의 소유명의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팩스는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는다.

팩스의 등록 후 즉시 양당사자의 모든 재산에 연대부유세가 공동으로 과세된다. 파트너는 둘이서 그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보면 자유로운 결합의 형태로 혼의 동서를 하는 편이 이득이다. 동서 커플에게 연대부유세를 공동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그 공동생활을 증명해야 하는데, 팩스체결의 등록은 공동생활이란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

27) Laurence de Percin/齋藤笑美子譯, 앞의 책, 78頁.

## IV. 결 론

청계천에서 공개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식을 올린 두 명의 남자에 관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성끼리의 동성혼, 트랜스젠더의 혼인, 동성 혹은 이성 노인 간의 결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결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이란 이성간의 결합을 의미<sup>28)</sup>하기 때문에 동성혼의 문제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sup>29)</sup>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헌법적 개념이고 헌법적 보호대상이다. 즉, 구체적인 내용은 비록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률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헌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민법(특히, 친족편)은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이에 관해서 헌법학자의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의 출현형태가 예상치 않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헌법해석의 개방성과 다양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 가족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특히 규범이 사회현실의 변화에 대하여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동성애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가족제도의 중요한 존재목적이 가족 안에서의 각 개인의 인격발현의 보장, 특히 인격발현과 관련된 자녀복지의 보장에 있다면 가족개념의 보호영역 확장이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특히 가족의 핵심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파악한다면 가족을 혼인과 결부시키는 가족형태의 고정성 개념은 헌법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혼인과 가족개념의 분리시도는 아이가 있는 동성커플의 경우에 가족개념에의 포섭여부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적 가족들도 전통적 가족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가치들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면, 전통적 가족에게 주는 혜택을 비전통적 가족에게도 주어야 할 것이다.(각주는 필자가 생략함)”<sup>30)</sup>

가족 유사의 관계를 혼인을 기준으로 인정하든, 그 역할로 인정하든, 이미 세계적으로는 혼인 이외의 가족 유사의 형태를 인정하는 법률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법률들의 추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혼인에 가장 가까이 동화시키면서도 적잖은 구분선을 긋는 상태에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가족개념을 지킬 것인가? 가족 유사의 관계를 법률적으로도 허용할 것인가?

28)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29)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31면.

30) 조홍석, 앞의 글, 234~235면.

## 참 고 문 헌

- 김수현,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8집(2003).
-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 사회, 42호(2012.6.).
-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 A. Bénabent, *Droit civil, Famille*, Litec, Paris, 2000, Supplément sur le pacs, n° 706.
- C. Méary et F. Leroy-Forgeot, *Le PACS*, Puf., 2000, Paris.
- Jacqueline RUBELLIN DEVICHI, *Revue trimestrielle du droit civil*, janv-mars, 1990.
- Laurence de Percin/齋藤笑美子譯, *le Pacs(パックス)*, 綠風出版, 2004.
- Marie Huret, “PACS: les hétéros aussi”, L'Express, 16, 11, 2000.
- Michel GRIMALDI, *Réflexions sur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du droit français*, Rép. Defrénois n° 12, 30 juin 2003(Doctrine, article 37763).
- Villeneuve-Gokalp, “Du mariage aux unions sans papiers: Histoire récente des transformations conjugales”, *Population*, n°2, INED, 1990.

# Marriage and Non-marriage

## - Focused on Pacs in France

BAEK SEUNGHEUM  
Professor (Ph. D.)  
Dept. of Law  
Cheongju University

In November 15th 1999,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took effect in France. It means that Civil Code recognised couples as a marriage-like union though they are homogeneous couple. Naturally Pacs had stirred up controversy, because of the strong feeling of solidarity and the innate conservatism of French people. But The homosexual showed an adverse reaction to the Pacs.

There is also “Lebenspartnerschaften”(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BGBl. 2001 I, S. 266 ff.) in Germany. European Parliament provide that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 orientation is prohibited by the Bill of Rights Art. 21.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European Parliament, the German legislature enacted the Lebenspartnerschaften. The law became effective in August 1st 2001.

On the contrary, in France, a diffusion of AIDS, inhospitality against the homosexual, and two leading case enable the legislature to legislate Pacs.

May the rigidity of the law on the marriage, especially solution, prevent people to enter into marriage contracts? That is the key topic in this article. So, the author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legislation in France and described the outline of the Pacs.

key word : Pacs, Pacs contract, solution of Pacs, union libre, solidarité

논문투고일 : 2015. 6. 29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아랍의 위성뉴스 채널들에 대한 고찰 -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알마나르, 비즈니스 채널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호 성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알자지라 및 알아라비아 등 아랍의 주요 위성 뉴스 채널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의 급진적 위성 뉴스 채널인 알마나르와 아랍 비즈니스 뉴스 채널들에 대해서 고찰했다.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두 채널은 지속적으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선두적인 범아랍 뉴스 채널 중 하나인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반면 알아라비아는 기존 알자지라에 대해 대항세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알마나르 등 급진적인 매체들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면서 보다 폭넓은 아랍 공중에게 자신들의 주의(cause)를 전파하기 위해 비교적 정교한 위성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다. 급진적인 뉴스 채널들이 대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위기 시에는 시청률이 최고치에 달하곤 한다. 이는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 도전을 의미하며,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와 같은 최고 수준의 뉴스채널들에게 실질적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랍지역에서 비즈니스 채널들은 200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틈새 텔레비전 산업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주제어: 아랍위성채널,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알마나르, 아랍비즈니스채널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도 입

위성 시대 이전, 아랍권 국가의 거의 유일한 시청각 정보원은 정부 소유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송하는 저녁 뉴스 게시판이었다(Kraidy & Khalil, 2009). 다른 전파매체에 의한 뉴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외국 라디오 방송인 BBC와 프랑스의 RMCME(Radio Monte-Carlo Middle East)를 청취했다. 이런 외국 매체 이용 경향은 지난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전쟁기간 동안 현저히 증가했다. 이는 아랍권 정부에 의한 방송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아랍 텔레비전 산업, 특히 텔레비전 뉴스 시청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전쟁과 분쟁은 수십 년 간 지속돼온 기존 제도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레바논의 민병대가 불법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했는데, 이는 방송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Kraidy, 1998b). 10년 후인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하자 사우디 당국은 뉴스방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위성을 이용하는 CNN 등 외국 채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분쟁과 억압이 계속되자 반대파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유럽계 위성 채널을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알-자지라(al-Jazeera)는 2001년 앵글로 어메리칸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기간 동안 유례없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알-아라비아(al-Arabiya)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집중 보도하면서 위성방송 분야에 뛰어 들었다.

전쟁은 경쟁이 심한 아랍 위성텔레비전 뉴스 분야에 진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복잡한 갈등은 지속적인 제도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는 성장을 이어갔지만 Abu Dhabi TV는 뉴스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채널은 시청자를 잃게 됐고 2등급 지위로 퇴보했으며 일반적인 오락 채널로 스스로 구조 조정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Khalil, 2004). 이 TV 채널은 지난 2003년 앵글로 어메리칸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 광범위하고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부 관측가들은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2년 LBC-Sat은 자사의 위성 뉴스 부문을 사우디 소유의 신문 *알-하야트(al-Hayat)*와 통합했다. 위성뉴스 부문의 전문기술과 송출 능력을 *알-하야트* 신문 기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결합시킨 셈이다. 하지만 통합과 이라크전쟁에도 불구하고 LBC가 갖고 있는 오락채널로서의 명성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LBC-*알-하야트* 연합 벤처는 범아랍권의 주도적인 뉴스매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와 같은 뉴스 채널의 시청률은 국제적인 시청률 경향과 마찬가지로 위기 때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랍채널의 뉴스보도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늘상 등장하는 주제다. 또한 이라크 전쟁, 레바논과 수단에서의 분쟁은 아랍 텔레비전의 뉴스 시청자를 증가시켰다. 이는 종종 오락채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위기 보도의 필요성으로 인해 오락채널보다는 뉴스보도를 지속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자원과 시간을 늘려 할당했다. 채널들은 위기 동안 뉴스 담당 부서를 확대해 광범위한 뉴스 보

도를 제공했으며 시사문제나 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토크쇼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쟁과 관련된 두 번째 발전 패턴은 아랍권 내의 정치적 대립이 위성 뉴스 채널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랍 국가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위성 안테나를 금지하고 위성 디코더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전파에 대한 정부의 전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아랍 국가들은 정부소유 텔레비전을 확대해 위성방송까지 출범시켰다.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등 주요 채널 간 경쟁은 두 채널의 후원자인 카타르와 사우디 권력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보다 넓은 차원의 지정학적 분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 두 국가의 어마어마한 재정적 지원은 위성 뉴스 분과를 설립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을 통해 사우디는 오일 생산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 오락과 달리 뉴스 채널은 좀처럼 수익을 내기 힘들지만 부유한 두 나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비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수사적 전쟁에 연루된 다른 나라들은 전파 접근을 확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위협, 유인, 혹은 위성 채널에 대한 직접 투자 등 혼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정부는 정부 친화적인 민영 위성 채널의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마스(Hamas)나 헤즈볼라(Hezbollah) 등 일부 비정부 기구들은 자신들이 깊이 관련돼 있는 만성적 위기에 휘말려있는 지역에 위성 채널을 출범시켰다. 프로그램들이 뉴스와 공공문제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채널들은 중요한 뉴스원이 되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중요한 패턴은 오락채널의 현상과 비슷한데, 아랍 텔레비전 뉴스 채널들이 결합해 다채널 네트워크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는 멀티플랫폼 기업집단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네 번째 패턴은 비즈니스 채널의 등장이다. 아랍 뉴스는 정치 뉴스이자 위기 뉴스라는 오랫동안의 인식을 깨면서 2000년대 들어 이 분야 채널이 발달했다. 이 같은 변화는 경제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높은 원유가로 인한 걸프지역 석유상들의 재정적 흥재, 두바이의 성장에 의해 촉발된 지역 전체를 휩쓴 부동산 투기, 걸프 지역 국가들이 주도한 아랍지역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암만과 다마스쿠스 지역의 집값을 인상시킨 이라크 피난민들의 유입 현상 등이 비즈니스 채널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외에도 9·11이후 테러 자금의 흐름을 옥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금융 흐름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환경 등으로 인해 아랍 머니가 서구권으로부터 탈출해 유입되었다.

전쟁, 아랍 내 대립, 급진적인 비정부 주자들의 의제, 비즈니스 뉴스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아랍 텔레비전 뉴스 분야는 현재 활기차고, 다원적이며 점차적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아랍권 시청자들은 일반적인 오락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는 뉴스 보도 수준을 넘어 수많은 전문화된 뉴스 채널, 외국뉴스, 시사문제 네트워크 등 수많은 범 아랍 24시간 뉴스 채널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아랍어로 방송하는 외국정부 소유 혹은 자회사 채널들은 후원자들의 의제와 함께 아랍 시청자들을 소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들 채널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아랍어를 사용하는 범 아랍 텔레비전 뉴스 채널들

뉴스원	뉴스 및 공공문제 콘텐츠	사례
오락채널들	뉴스캐스트와 정치토크쇼(주로 현지 관점)	LBC-Sat, MBC, 알아라키야
뉴스네트워크	연속뉴스, 시사문제, 다큐멘터리, 토크쇼	알자지라, 알아라비야
비즈니스채널	일반비즈니스뉴스, 분야별전문비즈니스뉴스(부동산, 관광, 금융시장)	CNBC 아라비야, 알아콰리야
급진채널들	일반뉴스와 오락채널포맷 ‘Militant’ 뉴스	알마나르, 알아크사

본 연구는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급격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랍의 방송시장 환경에서 방송 업계의 지배적인 뉴스 채널인 알자지라 및 알아라비야와 함께 헤즈볼라의 급진적 채널 알마나르(al-Manar), 그리고 범 아랍 비즈니스 뉴스 채널들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알자지라(AL-JAZEERA): 독불장군

카타르는 한 세기 이상 동안 영국의 보호령이었다. 지난 1971년 독립한 이후 카타르는 사우디아와 이란이라는 거대 국가 사이에 위치한 4,500 평방 마일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1994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왕자는 카타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위성방송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95년 6월 27일 하마드 빈 칼리파는 아버지를 권좌에서 축출한 후 사우디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다. 새 수장은 카타르 지역에서 권력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의 계획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지배하는 페르시안 걸프의 이 조그만 나라는 수 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 세 번째에 달하는 매장량이었다. 아랍어판 BBC(BBC Arabic)의 실패를 목도한 카타르의 수장은 1996년 1월 1억3천7백만 달러 규모의 초기 자본을 투입한 알자지라(al-Jazeera, The Island) 위성 채널을 설립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전 BBC Arabic의 직원 120명과 함께 1996년 말 송출을 시작했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위성방송 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다.

알자지라 채널이 출범하게 된 것은 카타르에 불던 미디어 자유화 바람의 일환이었다. 카타르 당국은 1998년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를 폐지하고 QRTC(Qatar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를 설립했으며 인쇄출판국(Department of Printing and Publications)을 독자적인 정부기구로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알자지라는 카타르의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은 정부소유 형태로 남아있다.

당시 범 아랍 환경에서 텔레비전 채널들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정부소유 형태였다. 뉴스는 대부분 통치자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하는 의전뉴스였다. 이런 환경에서 알자지라는 고집 센 보도와 걸러지지 않은 토크쇼 형태의 토론은 물론 탐사 보도 등을 혼합해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행태는 일반 시청자와 지배계층을 사로잡았다. 이 채널은 이스라엘 관리,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성직자, 사우디의 반대파, 망명중인 아랍 지식인, 여권활동가, 그리고 아랍 정부 장관 등을 초대해 방송했다. 대표 프로그램 *al-Ittjah al-Mu'akis*(The Opposite Direction)은 아랍세계는 물론 세계적 차원의 유명한 재판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시리아계 사회자 파이살 알파심(Faysal al-Qasim)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토론을 주도해 방송에 내보내는 보기 드문 재능을 보여주었다. *al-Shari'a wal Hayat*(Islamic Law and Life) 프로그램의 슈퍼스타 설교자 Yusuf al-Qaradawi는 집밖에서 일하는 여성에 관한 주제에서부터 구강성교의 적절성과 관련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구강성교와 관련해 그는 결혼하기로 동의한 성인 남녀 간에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Hewar Maftout*(Open Dialogue)는 두세 명의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초대하고 10명의 시청자들이 전화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Minbar al-Jazeera*(The al-Jazeera Pulpit)은 사회자가 제시한 구체적 주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시지 등을 단순히 조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 형태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알자지라의 논조는 아랍 민족주의, 이슬라미즘, 그리고 3세계주의를 아우른다. 이 채널은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인들의 곤경에 대해 끈질기게 보도하는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외에도 이 채널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국가들을 비판하기도 하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zbollah 등 급진적 운동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뉴스, 토크쇼,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무슬림 형제주의에 친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토크쇼는 때로 오사마 빈 라덴에 동정심을 표현하는 게스트를 등장시키기도 한다. 빈라덴의 비디오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는 아마도 서구권 시청자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큰 실수였다. 결과적으로 알자지라는 부시 미정권과 일부 아랍 정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 사우디의 왕자들과 그들의 정치·사업적 동료들이 위성 매체를 지배하는 지역에서 알자지라는 사우디와 여타 아랍 국가 지배자의 분노를 자극했다. 한건 한건씩 혹은 이따금씩 아랍 정권들은 자신들의 국경에서 알자지라가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디어의 논조에 익숙해져있던 아랍 지배자들이 갖고 있던 미디어에 대한 호감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2004년 초반 카타르 정부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알자지라와 관련된 5백건 이상의 항의를 받아야 했다(Lamloum, 2004).

이 채널에 대한 비난 분위기는 2011년 9·11 공격 이후 미국에서 절정에 달했다. 조지 W. 부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등장하는 비디오를 방영한 점에 대해 거칠게 비난했다. 알자지라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이 채널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보도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 채널은 종종 미국정책과 전략에 비판적이었으며 미국의 매체가 종종 간과하는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다. 알자지라와 미국정부

간 긴장은 유혈이 난자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채널이 2001년과 2003년 각각 이룩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에 대한 특종 보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래된 것이었다. 2001년 11월 13일 알자지라의 카불 지사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Malik, 2001). 2003년 4월 8일에는 알자지라 채널의 바그다드 지사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고 특파원 타리크 아요브(Tariq Ayoub)가 사망하는 불운이 발생했다(US Warplanes, 2003). 또한 미국에 있는 영어판 알자지라의 워싱턴 DC 지사 직원들이 아파트를 임대할 때 차별을 받기도 했고, 미국정부로부터 상업광고 및 케이블 배급망 허가를 받으려고 지원했지만 실패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알자지라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Levine, 2006).

알자지라 채널이 갖는 독특함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채널은 그동안 독불장군 같은 고집불통 채널이라는 특권적 지위 덕분에 성공한 측면이 있다. 이 채널은 또한 유연성, 직원의 아이디어 독려, 독립적 사고와 같은 요인 때문에 스스로 성장한 측면도 있다(Zayani & Sahraoui, 2007). 알자지라의 핵심적 가치는 BBC의 정확성과 CNN의 속보성의 결합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는 채널 내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뉴스와 여타 프로그램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뉴스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팀워크에 의존한다. 하지만 여타 프로그램은 일부 쇼의 사회자가 카타르의 정치 엘리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여타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채널 자체에 적절하지 않은 스타 시스템을 추구하기도 한다. 채널의 논조를 제지하려는 거듭되는 압박(주로 부시 행정부로부터)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이 채널이 갖고 있는 자유언론의 횡불이라는 인식은 현실적 견제에 굴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간 우호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채널은 더 이상 사우디 문제에 대해 공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어렵게 됐고 이에 따라 해당 시청자를 잃게 됐다. 알자지라의 언론 담당 임원진과 독립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기자들 간에 갈등도 존재한다(Zayani & Sahraoui, 2007). 또한 무슬림 형제주의에 가까운 종파와 세속적인 아랍인들 간 사생결단 식의 오랫동안 지속돼 온 투쟁이 상존하고 있다. 이 채널의 일부 프로그램은 무슬림 형제주의를 호의적으로 선전하는 일화를 집요하게 방송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마르크시스트 게릴라 지도자 체 게바라(Che Guevara)와 호의적으로 비교하는 결끄러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다.

알자지라는 포털 사이트 외에도 스포츠, 시사문제, 다큐멘터리,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을 갖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절차를 실행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채널은 ‘알자지라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수개월 동안 호기를 보였지만 2006년 11월 15일 공식 출범하기 직전 이 채널은 알자지라의 총지배인 와다흐 칸파르(Waddah Khanfar)를 확실한 책임자로 하는 ‘알자지라, 영어판’이라는 이름으로 재 명명되었다(Kraidy, 2008d). 이런 일련의 사건은 알자지라의 본질적 속성은 어쩔 수 없이 아랍어 뉴스 채널이자 아랍 미디어 기업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표2> 참고).

<표 2> 알자지라 네트워크

채널	설립연도	소유권/연관성
알자지라	1997	카타르외무부가 운영
알자지라 스포츠	2003	1개의 무료공중파와 2004년 이후 5개의 유료TV 채널운영
알자지라 어린이	2005	카타르교육과학공동체개발소유
알자지라 무바	2004	주요회의, 연설, 정치 및 일반 모임의 생방송 세르 (Al-Jazeera Live)
영어판 알자지라	2006	쿠알라룸푸르, 도하, 런던, 워싱턴DC에 주요 스튜디오를 둔 중동주재 첫 세계적 영어채널
알자지라 알와타에키야	2007	스튜디오 혹은 현지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및 국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바라엠(Buds)	2009	카타르 교육 과학 공동체 개발 재단 소유 / 알자지라 인프라 사용

반대세력들이 알자지라의 편향적인 논조에 응수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쿠웨이트와 레바논 투자자들의 참여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물들이 주도한 al-Arabiya(The Arabic One)는 2003년 3월 3일 새로운 아랍어 위성 뉴스 채널로 출범했다.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아랍의 현 질서에 유화적인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채널은 알자지라의 세계관을 견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 간 경쟁은 카타르와 사우디의 대표적 가문인 알타니(al-Thani)와 알사우드(al-Sa'ud) 간 지정학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두 채널은 확실히 구분되는 부류의 시청자를 소구 대상으로 한다. 알자지라는 서구 제국주의는 물론 이스라엘과 걸프지역 군주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반대하는 아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들을 주요 소구 대상으로 한다. 반면 알아라비야는 서구는 물론 아랍의 현 질서에 대해 덜 호전적이고 자유분방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채널은 이들 핵심적인 시청자 그룹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는 자신들이 상상하는 범 아랍 시청자들을 향한 전투에 제각각 몰두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알아라비야가 알자지라에 도전할 수준까지 성공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언론계에서조차 회의적이다.

### III. 알아라비야(Al-Arabiya): 도전자

알아라비야는 MBC(Middle East Broadcasting Centre) Group의 뉴스채널이다. 이 그룹은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의 실업가 셰이크 왈리드 알이브라힘(Sheikh Walid al-Ibrahim)이 소유하고 있다. 두바이 미디어 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그룹은 아랍세계의 선도적인 미디어 채널 중 하나이다. 쿠웨이트, 요르단, 그리고 여타 걸프지역의 아랍계 투자자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해리리 그룹(Hariri Group)이 3억 달러를 투자했다

(Khalil, 2006b). 이 투자자들은 사우디 소유주와 친했을 뿐만 아니라 알자지라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우디 소유주는 알자지라에 대한 범 아랍 차원의 광고 보이콧을 조직하거나 알자지라 기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이집트, 요르단 등 동맹국들과 조율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우디가 알아라비야를 출범시킨 것은 알자지라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알자지라를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의 계획이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알아라비야의 시각적 외양은 알자지라의 그것과 확연히 대조적이었다. 두바이 미디어 시티의 MBC 빌딩 4층에 위치해 있는 이 채널의 오픈 뉴스룸은 미래 감각적이다. 둥글고 커다란 세트는 언뜻 보기에 3차원적이다. 은색 유리가 환상적이고 투명한 외관으로 위풍당당함을 더했는데, 블루와 레드 색상은 외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알아라비야의 로고는 변형된 사각형 모양인데, 모던해 보이는 흰색의 아랍어와 al-Arabiya라는 영어로 구성되었다. 이 채널이 시각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투명성과 현대성이다. 이 디자인은 Bahrain TV와 사우디의 뉴스 채널 al-Ekhbariya에 그대로 채택되면서 아랍지역에서 유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Khalil, 2006b).

알아라비야의 출범은 시의적절했다. 2001년 미국과 연합군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알자지라가 아랍지역은 물론 세계적 뉴스 매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앵글로 어메리칸에 의한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알아라비야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아랍 전역에 대한 24시간 뉴스 보도라는 점 외에도, 이 채널의 알자지라에 대한 경쟁전략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유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국 내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아랍권 각각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청자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히 선거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경쟁방송국의 지분을 빼앗아오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국가에서 확보한 시청자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채널은 또한 미국 고위 관리들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이 채널이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다. 아랍 시청자들에 대한 시청률조사(<표3 참고>)가 보여주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아라비야의 시청률은 알자지라를 능가하고 있다. 이라크와 사우디를 제외한 아랍 대부분 국가에서 알아라비야는 알자지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전략은 대체로 성공적 이었다.

**<표 3> 뉴스 채널들의 시청률(사우디아라비아)**

채널	전체 인구대비 채널 시청률, 1월		
	2008	2007	2006
알아라비야	23.95%	22.2%	24.29%
알자지라	12.83%	17.3%	19.78%

출처: IPSOS-Sat.



알아라비야는 사우디아라비아 식 사업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채널의 논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아랍세계에서 취하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채널은 논쟁은 가급적 멀리 피하려고 한다. 또한 보도와 토크쇼에서 공격적 질문이 제기되면 알자지라와 대조적으로 친 미국, 친 사우디 입장을 취한다. 이런 행태는 이 채널이 채택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토론이나 시청자 전화 참여 프로그램을 절대 생방송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독선적인 게스트를 초청하지도 않는다. 상호작용적인 토론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개 철저히 관리되는 타운홀 미팅이나 전화 프로그램들이다. 이 같은 정치적 보수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은 사우디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채택함은 물론 균형 잡힌 아랍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알아라비야의 수석 편집장 나빌 카티브(Nabil Khatib)는 ‘우리는 뉴스를 재정의 하려고 노력 한다’고 말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알아라비야는 보다 인간적인 스토리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거대한 범아랍 이슈 보다는 아랍인들이 원하는 건강, 교육, 살림살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Shadid, 2006).

알아라비야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채널은 일찍이 이스라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으로 보도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로 부터 알이브리야(al-'Ebriya, The Hebrew One)라는 별명을 얻었다(Francis, 2007). 2003년 8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는 알아라비야의 방송내용과 관련해 이라크통치위원회의 한 구성원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총기 발사 위협을 하는 무장군인 모습을 방송한 것에 대해 알아라비야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해 10월 미국무성이 의뢰해 이라크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알아라비야 측에 호의적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7%는 자신의 주요 뉴스원으로 알아라비야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자지라를 주요 뉴스원으로 삼는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그쳤다(Iraq Television, 2003). 하지만 알아라비야는 이라크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격대상이 되기도 했다. 2003년 11월 16일 이라크통치위원회는 이라크 내에서 이 채널 기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알아라비야가 사담 후세인 측으로부터 나온 오디오 테이프 메시지를 방송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2005년 2월 전 레바논 총리 라피크 알하리리(Rafiq al-Hariri)가 피살된 후 알아라비야는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ad) 시리아 정권과 지리한 미디어 전쟁을 치러야 했다(Al-Arabiya Finds, 2005). 이 미디어 전쟁에서 이 채널은 추방된 전 시리아 부통령 압둘할림 카담(Abdulhalim Khaddam)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는데, 인터뷰에서 카담은 알하리리 전 총리의 암살을 포함해 시리아 정권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한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지도자들이 화해하면서 알아라비야의 시리아 정권에 대한 공격적 보도는 완화됐다.

알자지라 보다는 덜 하지만 이 채널도 일련의 공격으로 인해 고생을 했다. 2004년 9월 마젠 알투마이지(Mazen al-Tumayzi) 기자가 미군에 의해 사살됐으며 2006년 2월 22일에는 이라크에서 아트와르 바흐자트(Atwar Bahjat) 기자가 납치·살해됐고, 이어 2007년 1월에는 알아라비야의 가자지구 사무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Shadid, 2006). 언론인보호위

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에 따르면 알라비야는 지난 2003년 3월에서 2009년 1월 사이 여섯 명의 기자와 다섯 명의 지원담당 직원이 목숨을 잃었다(Journalists Killed, 2008). 알라비야가 가장 심각하게 몰두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알자지라와의 경쟁이다. 방송을 출범시킨지 2년이 조금 지난 2005년 여름 알라비야는 ‘진실에 더 가까이(Closer to the Truth)’라는 주제를 가지고 판촉 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자신들이 알자지라보다 진실되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은근히 내비치는 모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어 2007년 늦여름에 이 채널은 ‘이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So You Know More)’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다(Habib, 2006). 이를 통해 알라비야에 합리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은 선정적인 알자지라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채널들에 의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젊은이와 여성시청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차원에서 알라비야는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장르를 개설했다. 이들 장르는 알자지라를 포함한 다른 채널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우선 두바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우디 소유인 이 채널은 *Sabah al-'Arabia* (The Morning of al-Arabiya)를 출범시켰다. 이는 *Good Morning America*와 유사한 부드러운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 호수와 야자나무들로 장식된 배경 막을 가진 MBC 빌딩의 유리로 장식된 로비에서 촬영되는데, 남녀 진행자는 편안한 복장을 하고 일상적 대화 톤의 언행을 보인다. 이 쇼를 구성하는 색채는 흰색과 오렌지색인데, 이는 흰색과 푸른색, 빨강색으로 주로 구성된 경성뉴스(hard news) 부문과 구별되게 한다(Kraidy, 2009). 또한 알라비야는 2005년 여름 금융과 비즈니스 뉴스를 확장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아라비아안 걸프지역 국가에서 높아지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알라비야는 심지어 두바이 미디어 시티 언저리의 조용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 CNBC Arabiya와 같은 비즈니스 채널과 직접 경쟁했다. 이 채널로부터 몇몇 비즈니스 담당 기자와 프로그램 사회자를 빼앗아 오기도 했다. 이후 알라비야는 사이버공간으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 채널은 아랍어와 영어 버전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랍식 유튜브와 유사하게 시청각 콘텐츠를 다루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알라비야가 사우디와 미국 정책에 유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알라비야는 상당한 시청자를 확보했으며, 범아랍 미디어 시장에서 주요 매체가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두 개의 선두적인 범아랍 뉴스 채널 중 하나인 알라비야는 기존의 알자지라에 대해 대항세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IV. 알마나르(Al-Manar): 급진적 대안매체

헤zbollah의 알마나르(al-Manar)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이라크에서 출범한

채널들 중에서 급진적 성향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은 일반적인 방송 유형(뉴스와 오락)으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채널들은 사실 전형적인 뉴스채널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오락채널의 장르를 채택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임무를 확실하고도 거리낌 없이 공언하는 호전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뉴스를 치밀하게 선택된 오락, 교육, 종교 프로그램과 혼합해 내보냄으로써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이 채널들은 미디어를 투쟁의 무기라고 간주한다. 이라크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기뻐했지만 수니(Sunni)와 시아(Shi'i) 파 그룹은 자신들의 민병대를 지원할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을 서둘러 설립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2006년 하마스가 알아크사(al-Aqsa)라는 자체 텔레비전 채널을 설립했다. 이런 류의 채널 입장에서 헤즈볼라의 알마나르(al-Manar)는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설립된 알마나르는 레바논에서는 전국적으로, 아랍세계에서는 초국적으로 주류 텔레비전에 준군사적인 선전을 결합하고 있다.

알마나르는 신의당(the Party of God)의 대 이스라엘 투쟁에 주로 초점을 둔다. 아랍어로 횃불(The Beacon) 혹은 등대(The Lighthouse)라는 뜻을 가진 알마나르는 알누르(al-Nour, The Light) 라디오 방송국과 알아흐드(al-'Ahd, The Era) 신문,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라디오와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의 대표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다(Jaber, 1997). 신의당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알마나르는 셰이크 하산 이제딘(Sheikh Hasan 'Ezeddin)이 수장으로 있는 헤즈볼라의 정보부서(Information Unit)에 속해있다. 헤즈볼라는 이 채널을 지난 1991년 6월 3일 출범시켰다.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해 이 나라의 남부지역을 점령한 후 신의당이 만들어지고 난지 6년 이상이 흐른 뒤였다. 이 채널은 처음에 뉴스캐스트, 토크쇼, 그리고 선전 형태로 표현되는 혁명과 종교의 혼합 콘텐츠를 방송했다. 이외에도 방탄조끼를 입고 위장한 알마나르의 용감한 카메라맨이 현장에서 촬영한 반군활동을 방송했다(Hamzeh, 2004). 이것저것을 혼합한 다큐멘터리 형태였는데 이는 아마도 아랍세계에서는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시초로 간주될 만하다.

알마나르는 중동에서 큰 위기와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방송영역을 확장했다. 1996년 이 채널은 헤브라이어로 된 선전물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는 알마나르가 수행할 역할 중 하나는 레바논 남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이 채널은 당시 헤브르 관측과(Hebrew Observation Department)를 설립했는데 이 부서의 직원은 이스라엘 방송을 모니터해 중요한 장면과 정보를 수집해 이를 알마나르의 책임자와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에게 넘겼다(Blanford, 2001). 알마나르는 이후 수년간 '다음은 누구 차례?(Who's Next?)'라는 시리즈 선전물과 함께 심리전을 강화했다. 이 선전물에는 체포된 이스라엘 병사의 사진이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커다란 물음표가 그려진 흰 천이 나타나는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납치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Hamzeh, 2004). 헤즈볼라는 또한 이 채널을 이용해 친이스라엘 민병대인 남부레바논군(South Lebanon Army, SLA) 구성원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원래 SLA 민병대는 레바논 군인들을 대상으로 누우치고 전향하도록 충동질하는 레바논군의 한 분파로 시작됐다(Jaber, 1997). 알마나르 채널의 임원들은 헤브라이어로 완벽한 방송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1998년에는 헤브라이어 위성텔레비전 채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Yehia, 1998). 하지만 알마나르의 확장사업은 주로 아랍어 방송에 집중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2000년 5월 남부레바논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한 끊임 없는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헤즈볼라는 신망을 얻었다. 또한 2000년 9월에는 팔레스타인의 두 번째 저항운동(Intifada)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마나르는 위성 송출을 시작했는데 이는 ‘저항채널’에서 ‘아랍과 무슬림을 위한 채널’로 선회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Hamzeh, 2004). 이같은 목적을 위해 2000년 5월 24일 이스라엘의 철군 전야에 네 시간짜리 위성방송으로 출범해(Yehia, 2000) 2000년 9월 인티파다가 발발하면서 18시간 방송으로, 그리고 2001년 1월 결국 하루 24시간 방송으로 전환했다(Blanford, 2001; Hamzeh, 2004). 이 무렵 이 채널 프로그램의 약 70%는 자체 제작됐으며 예산은 열배정도 증가해 대략 1천만 달러에 달했다(Blanford, 2001). 이 같은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의 핵심 임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알마나르의 전 사장 나예프 크레이엠(Nayef Krayem)은 2001년 12월 ‘알마나르는 중요한 무기다... 정치적 무기이자 사회적 무기이고 문화적 무기다’라고 말했다(Blanford, 2001). 헤즈볼라 정보부의 수장 셰이크 하산 에제딘은 5개월 후 프랑스를 혐오하는 레바논 일간지 (Francophone Lebanese daily) *L'Orient-Le Jour*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테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Haddad, 2002). 이는 헤즈볼라의 반 이스라엘 전략의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알마나르는 심리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알마나르의 편성표에는 *타르피 하데프(tarfiḥ hadef, purposeful entertainment)*라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과의 전투 수행이 채널과 프로의 핵심 임무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채널은 유럽판 반유대주의 계열인 ‘시온연장자협정(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에 관해 시리아에서 제작한 *알샤타트(al-Shatat, The Diaspora)*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로 인해 알마나르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방송을 금지당했다. 프랑스 국무위원회(French Council of State)는 2004년 12월 13일 위성운영사 Eutelsat 측에 48시간 내 알마나르가 프랑스에 중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프로그램들이 반유대주의를 암시하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경고를 받은 알마나르는 Eutelsat 위성을 통한 방송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이 채널은 언론 자유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With a,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마나르의 지도부는 이후 *알샤타트*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Deloire & Berretta, 2004). 하지만 알마나르는 프랑스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반유대주의 프로그램의 방송을 억제하겠다는 점을

유럽 입법부에 확산시켜 주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알마나르의 미국으로의 위성송출, 인터넷을 이용한 전 세계로의 방송, 그리고 알마나르 관련 인물들과의 거래 차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과 함께 2004년 12월 17일 알마나르를 제거대상테러명단(Terrorism Exclusion List, TEL)에 포함시켰다(Boucher, 2004). 미국에서 알마나르는 테러 저지를 위한 패트리엇법(Patriot Act)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국제통신위성기구 인텔샷(Intelsat)은 이 채널의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지역의 시청자들은 다양한 웹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삭제되거나 검열받지 않은 알마나르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알마나르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한다. 이 채널은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수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채널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레바논의 시아파(Shi'i) 공동체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이 채널은 레바논의 여타 공동체에 대한 헤즈볼라의 개방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해왔다. 예를 들어 이같은 맥락에서 알마나르는 이란에서 제작된 성모마리아의 삶에 관한 연속 드라마를 방송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알마나르의 모회사인 LMG(Lebanese Media Group)에 의해 만들어진 DVD 형태로 가게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코란과 성서적 이야기를 결합한 형태였다. 이 채널은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로고 내용을 완화하고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2006년 7월과 8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발생한 전쟁기간동안 알마나르의 심리전과 선전기능은 다시 부활했다. 이 전쟁기간 동안 알마나르의 프로그램은 주로 매시간 뉴스와 '공개 마이크' 전화참여 쇼, 그리고 연속적인 선전물로 구성되었다. 이런 선전물들은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의 텔레비전 연설에서 표출된 헤즈볼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효과적이었다. 이 연설은 2007년 전쟁은 이스라엘을 앞세운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간주되었다. 이런 선전물은 뉴스와 전화참가자, 그리고 스튜디오 게스트들과의 생방송 대화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생각을 종합하고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채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선전물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알마나르는 또한 헤즈볼라의 전과를 자랑하며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헤즈볼라 전사들이 축적하고 있는 깜짝 놀랄만한 성과가 있음을 들어 경고를 하는 등 아랍어와 유대어로 심리전을 벌였다. 전쟁기간 동안 범아랍 텔레비전 랭킹에서 이 채널은 89위에서 10위로 급등했다(Dramatic Changes, 2006).

알마나르는 분명 아랍 세계에서 위성텔레비전 뉴스의 대안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알자지라 및 알아라비아와 달리 알마나르는 국가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호전적인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다. 서로 상이한 주류 정치의 담론을 대표하는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와 달리 알마나르는 노골적으로 급진적 논조를 추구한다.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신의당의 주요 구성원인 레바논의 시아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 다른 임무는 군사, 심리,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헤즈볼라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알마나르는 아랍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반복되는 위기, 특히 헤즈볼라가 주역으로 관련된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알마나르는 하마스의 위성 채널 알아크사(al-Aqsa)와 이라크의 다양한 반군 채널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킨 모델이 되었다. 지속적인 위기로 아랍 사회가 흔들리고 분열될수록 이런 류의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규모의 시청자를 끌어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 V. 범 아랍 비즈니스 채널들

급진적인 채널들만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의 대안 매체는 아니다. 음악, 여성, 종교 채널들 외에 비즈니스 채널들도 2천년대 초반 이래 아랍텔레비전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틈새시장 중 하나다. 비즈니스 뉴스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9·11 이후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아랍의 투자금이 되돌아오고 이에 따라 아랍권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고 오일 머니도 증가하게 되면서 아랍 주식시장이 확장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Dubai TV는 두바이의 비즈니스, 금융,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Dubai Business Channel을 출범시켰지만 Dubai TV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케이블 채널 CNBC의 범아랍 프랜차이즈 CNBC Arabiya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채널의 시청자는 점점 증가했다. CNBC Arabiya의 초기 성공과 걸프지역 국가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목도한 알아라비아는 2005년 겨울 비즈니스 보도의 비중을 높이기로 결심했다. 알아라비아는 CNBC Arabiya의 직원들을 바탕으로 아랍 비즈니스와 주식시장에 대한 보도를 확장했다. 이로 인해 알아라비아의 낮 시간 시청률은 한동안 황금시간대의 시청률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다.

2005년 이후 아랍 비즈니스 텔레비전은 점차적으로 세분화돼 금융, 부동산, 관광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전문 비즈니스 채널들은 이제 범아랍 미디어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표4> 참고). 비즈니스 뉴스를 알아라비아와 같은 거대 매체의 정치뉴스 수준까지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이들 매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 채널들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활성화된 주식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 걸프지역 국민들이 투자를 늘리는 것을 보고 이들 사이에서 시청률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채널들의 향방은 경제상황과 관련돼 있다. 지난 2008년 가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이들 중 일부채널이 폐쇄되거나 합병을 요구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 채널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고 있다.

〈표 4〉 비즈니스 뉴스 채널들

채널	출범연도	소재지	유형
Dubai Business Channel	1998-2004	두바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CNBC Arabiya	2003	두바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및 주식시장
Al-'Aqariyya	2004	두바이	또한 두 개의 아랍어 채널 제공 : al-'AqariyyaTV2 (Real Estate TV) & Real EstateTV(영어)
Arab Business Channel(ABC)	2005	이집트	주로 이집트 주식시장과 전반적인 비즈니스 뉴스
Al-Eqtisadiya TV (Economy TV)	2006	두바이/리야드	걸프주식시장
AsiaBusinessTV	2006	두바이	아랍과 아시아 비즈니스뉴스(영어/아랍어)
i2TV	2006	두바이	텔레커뮤니케이션
Aviation Satellite Channel	2006	요르단	항공
Atlas Travel	2007	바레인	여행과 관광, 문화TV
Sharm TV	2007	이집트	주로 이집트관광

지난 2001년 이후 전례 없는 시장활동, 금융투기, 그리고 오일머니 덕을 본 비즈니스 채널들의 성장세는 2008년 가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광고매출 감소로 한때 주춤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뉴스 채널의 운명에 대한 고찰은 점점 상업화되고 있는 아랍 텔레비전 업계의 향후 경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뉴스는 알자지라, 알아라비야, 그리고 알마나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보다 시장 세력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 VI. 범 아랍 텔레비전 뉴스의 경향

아랍세계의 뉴스 채널들의 변화상은 우선 급변하고 있는 뉴스 취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랍 뉴스 채널들은 애초 뉴스 통신사에 의존해 국제뉴스를 보도했다. 하지만 점차 취재와 제작을 위해 지국을 설립하고 통신원을 훈련시키게 됐다. 이스라엘 등 아랍 뉴스채널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서 나오는 뉴스를 다루기 위해 AP, 로이터, AFP에 대한 의존은 계속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는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이후 점점 많은 뉴스채널들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에 뉴스 취재 사무소를 개설했다. 예를 들어 Ramattan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Video Cairo Sat는 이집트와 바그다드, 그리고 Video Beirut는 레바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알아라비아 등 일부 채널은 Middle East News(MEN)와 같은 자체 취재사무소를 개설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의 New TV와 같은 현지채널과 뉴스 공유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아랍 뉴스 채널들의 뉴스원은 과거와 비교해 숫자가 많아졌음은 물론 더욱 다양해졌다.

두 번째 주요 트렌드는 디지털 상호작용성이라는 명제 하에서 인터넷, 모바일폰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기초한 텔레비전 채널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기 전에도 범아랍 위성 뉴스 채널들은 국영채널들이 필적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의 상호작용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1990년대 생방송 전화참여 프로그램들은 유럽주재 뉴스 채널과 아랍 시청자들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쌍방향 위성 소통방식을 이용해 기자와 게스트, 때로는 일반 시청자 간 코멘트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이후 베이루트, 카이로 혹은 리야드에 있는 토크쇼 게스트와 뉴스진행자는 범아랍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재해있는 시청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차원의 상호작용은 팩스, 전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 앵커는 물론 스튜디오의 게스트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언어사용, 뉴스제공 스타일, 그리고 뉴스가치와 관련돼 있다. 오락 텔레비전은 레바논과 이집트 방언에 주로 의존하지만 아랍 텔레비전의 뉴스는 전통적으로 현대표준아랍어(Modern Standard Arabic)를 사용한다. 이는 뉴스 보도가 진지하게 보이기 위해서다. 위성뉴스채널의 도입과 함께 고전적 아랍어와 일부 현지 방언이 결합돼 발전한 간소화된 현대표준아랍어가 점차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이 ‘새로운’ 방언은 일부 특정 지방의 언어를 배제한다. 이는 언론인과 기자, 토크쇼 호스트, 전문가 게스트 간 소통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뉴스 언어가 엄격하게 표준화돼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상이한 언어와 복장 스타일은 다양한 논조를 반영할 뿐만 각 채널에 존재하는 보다 깊은 뉴스가치의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알라비야는 긍정적인 논조와 함께 연성뉴스를 주로 보도하는 반면 알자지라는 경성 뉴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알라비야에서는 가벼운 이야기 거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반면 알자지라에서는 이런 류의 뉴스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알라비야에서는 두바이 콘서트에 관한 이야기, 캘리포니아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얼굴 성형술의 비약적인 발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 채널들은 정치적 성향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서구 텔레비전 채널들이 ‘자살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살펴보면 알자지라와 알마나르는 행위 주체자(bomber)에 대해 ‘순교자’라고 칭하는 반면 알라비야의 앵커는 ‘그는 자신을 날려버렸다’라고 표현한다. 이라크 주재 미군에 대한 공격을 보도할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알자지라와 알마나르는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알라비야는 ‘테러리즘’이라고 표현한다.



## VII. 결 론

본 연구는 아랍시청자들에게 있어 주요 정보원 역할을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등 아랍 위성 뉴스채널들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서 혁명채널의 시범적 모델로 활동해온 알마나르 같은 급진적 매체와 비즈니스 채널들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두 채널은 지속적으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두 개의 선두적인 범아랍 뉴스 채널 중 하나인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반면, 알아라비아는 기존의 알자지라에 대해 대항세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알마나르 등 급진적인 매체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보다 폭 넓은 아랍 공중에게 자신들의 주의(cause)를 전파하기 위해 비교적 정교한 위성채널들을 설립했다. 급진적인 뉴스 채널들이 대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위기 시에는 시청률이 최고치에 달하곤 한다. 이는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 도전을 의미하며,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와 같은 최고 수준의 뉴스채널들에게는 실질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랍지역에서 비즈니스 채널들은 200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틈새 텔레비전 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Al-Arabiya finds Tishreen's Campaign strange(2005, 28 February). *Assafir*.
- Blanford, N.(2001, 28 December). Hezbollah sharpens its weapons in propaganda war. *Christian Science Monitor*.
- Boucher, R.(2004, 17 December).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Washington, Daily Press Briefing DC.
- Deloire, C. & Berretta, E.(2004, 2 December). Al-Manar Television: Channel of Hatred. *Le Point*.
- Dramatic Changes in Arab television ratings-'Al Manar' climbs from nowhere to the top 10(2006, 23 August). MENA Report news portal website.
- Habib, V.(2006). From 'Closer to the Truth' to 'So You Know More'... Al-Arabiya changes its slogan but says professional essence does not change. *Al-Hayat*.
- Haddad, S.(2002). Interview: The Hezbollah information executive talks of a balance of Terror with Israel. *L'Orient-Le Jour*.
- Hamzeh, N.(2004). In the path of Hezbollah.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Francis, T.(2007, July 18). Media...in Arabic. *Al-Hayat*. Iraq Television Viewership Poll(2003, 16 October).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Intelligence and Research.
- Jaber, H.(1997). Hezbollah: Born with a venge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Journalists Killed in Iraq, 2008(2008).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CPJ).
- Khalil, J. F.(2006b). News television in the Arabian Gulf...period of transitions. *Global Media Journal, American Edition*, 5(8).
- Kraidy, M. M.(2009). Reality television and Arab politics: Contention in public lif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idy, M. M. & Khalil, J. F.(2009). 4 Pan-Arab news channels. Arab television industr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Kraidy, M. M.(1998b). Broadcasting regulation and civil society in post - war Leban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2(3), 387~400.
- Lamloum, O.(2004). *Al-Jazira, miroir rebelle et ambigu du monde arabe*. Paris : De'couverte.
- Levine, J.(2006, 25 June). Al-Jazeera, as American as apple pie. *Washington Post* : B03
- Malik, A.(2001, 13 November). Al-Jazeera Kabul office destroyed by US missile.

- Associated Press.*
- Shadid, A.(2006, 1 May). An newsman breaks the mold in Arab world. *Washington Post*, A01.
- US Warplanes bomb Al-Jazeera office in Baghdad, kill journalist(2003, 8 April). *Al-Jazeera.net*. With a warning, French media watchdog agency grants license to Hezbollah-linked network(2004, 19 November).
- Yehia, R.(2000, 2 November). Hezbollah broadens its airwaves battlefield. Al-Manar's satellite television channel moves into Palestinian homes for a n Extra 14 hours a day. *Daily Star*.
- Yehia, R.(1998, 24 February). Hizbullah calls for Hebrew satellite TV. *Daily Star*.
- Zayani, M. & Sahraoui, S.(2007). The culture of Al-Jazeera: Inside an Arab media giant. 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 An Exploration of Arab's Satellite News Channels – Cases of al-Jazeera, al-Arabiya, al-Manar, and business channels

Hyo-Seong Lee

Dep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Cheongju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d pan-Arab satellite news channels such as al-Jazeera, al-Arabiya, al-Manar, and business channels that constitute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for Arab viewers.

Al-Jazeera and al-Arabiya have been showing continuous rivalry each other. As one of two leading pan-Arab news channels, al-Jazeera is highly critical of Israel and US policies while al-Arabiya is a successful counterbalance to al-Jazeera. Radical non-state actors such as al-Manar have also established relatively sophisticated satellite channels to mobilise their constituencies and promote their cause to the broader Arab public. Though radical news channels do not enjoy high ratings most of the time, in times of crisis their viewership tends to spike, posing a real challenge to governments and their policies, and constituting real competition to top news channels like al-Jazeera and al-Arabiya. In addition, business channels have since the early 2000s been one of the fastest-growing niches in the Arab television industries.

Key words: Arab satellite channels, al-Jazeera, al-Arabiya, al-Manar, Arab  
business channels

논문투고일 : 2015. 6. 29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부합법의 현대적 과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부교수  
신 국 미

### 국 문 초 록

부합에서의 법적 문제는 원상복구의 부정을 전제로 하여 첫째,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소유권 귀속결정과 둘째 소유권을 잃게 되는 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의 조정문제가 그 핵심이다.

우리민법이 부동산 부합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256조, 한 개의 조문에 불과하므로 개별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는 판례 및 해석론에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합을 둘러싼 분쟁사례는 시대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1920년대의 소작쟁의를 계기로 한 농작물과 토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택문제를 배경으로 한 임차주택의 증·개축부분과 토지, 고도경제성장기에 있어서 토지수요의 증대에 수반하여 해면매립토사와 해저지반, 근래 환경문제의 하나인 투기된 불법폐기물과 매설된 폐기물처리시설과 토지 등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늘 문제가 되는 토지상의 건축물, 건물에의 설비부설 등이 있다.

이 글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부합 분쟁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부합법의 재검토 즉 부합의 근본문제 중 부합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였다.

주제어: 부동산 부합, 원상복구, 소유권, 손실보상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문제제기

우리민법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그것을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그 소유권관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부합이라고 한다. 부합에서의 법적 문제는 원상복구의 부정을 전제로 하여 첫째,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소유권 귀속결과 둘째 소유권을 잃게 되는 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당사자간의 이해득실의 조정문제가 그 핵심이다.<sup>1)</sup>

우리민법은 제256조와 제257조에서 부동산 및 동산간의 부합을 각각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56조), 동산간의 부합에 있어서는 물건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제257조). 따라서 부합이 긍정되면 원상회복은 부정되므로 부동산 및 동산에 물건을 부착시킨 자는 그 물건을 수거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수거의무도 없고 단지 부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따라 보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민법이 부합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단 2개의 조문에 불과하므로 개별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는 판례 및 해석론에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합을 둘러싼 분쟁사례는 대부분 부동산에의 부합에 국한된다. 분쟁사례 중,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1920년대의 소작쟁의를 계기로 한 농작물과 토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택문제를 배경으로 한 임차주택의 증·개축부분과 토지, 고도경제성장기에 있어서 토지수요의 증대에 수반하여 해면매립토사와 해저지반, 근래 환경문제의 하나인 투기된 불법폐기물과 매설된 폐기물처리시설과 토지 등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늘 문제가 되는 토지상의 건축물, 건물에의 설비부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부합 분쟁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합법의 재검토, 즉 부합의 근본문제 중 부합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합법의 현대적 과제이다.

## II. 부동산에의 부합

### 1. 일반론

우리민법은 부동산 부합에 관해 제256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

1) 줄져,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17집(2010.12), 113면.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첫째 제256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는 동산만이 속하는 것인지, 동산이외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며 둘째, 민법 제256조에서는 동산간의 부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57조에서처럼 부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간의 부합과 그 정도를 달리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학설상의 다툼이 있으며, 이 2가지 문제가 부합의 요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1)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는가.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만 국한되는가에 관해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는 반면,<sup>2)</sup> 판례<sup>3)</sup>와 소수설은 이를 부정하여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 다수설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을 동산에 국한시키는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추론컨대 우리민법상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애당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946조에서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을 동산에 국한시키고 있다. 독일민법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의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건물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wesentlicher Bestandteil)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는 결과, 부동산(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을 동산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민법이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국한된다고 하는 반면, 독일민법은 건물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국한된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토지이외에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국한한다고 하는 반면,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독일민법은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보고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토지에 부합하며,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민법과 독일민법이 부동산의 구성 체계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점은 기이하다.

판례는 부합하는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부합제도의 입법취지를 들고 있다.<sup>5)</sup>

2) 박윤직, 물권법(2008), 박영사, 201면; 이영준, 물권법(1991), 박영사, 465면. 이에 대하여 건물의 증개축과 같은 경우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부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동산간의 부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편집대표 박윤직, 민법주해(V), 박영사, 2005, 493면(권오곤집필)).

3) 대법원 1962.1.31, 선고 4294민상445판결.

4) 박윤직, 앞의 책, 201면; 이영준, 앞의 책, 465면; 민법주해(V), 494면(권오곤집필).

생각 건데 제256조 본문의 ‘부합하는 물건’을 동산에만 국한시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분리에 따른 사회·경제상의 손실방지’라고 하는 부합제도의 인정취지,<sup>6)</sup> 제256조 본문과 단서의 규정 체계(부합과 부속의 구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굳이 동산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sup>7)</sup>

## (2) 부합여부의 기준<sup>8)</sup>

제256조의 부동산부합이 인정되려면 우선 부착·합체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적합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 다소 이론이 있지만 제257조를 유추하여 물리적인 표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물리적인 표준 외에 부합물이 거래상 그 독립성을 잃는가·아닌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sup>9)</sup>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946조에 의해 부동산의 본질적 구성부분은 독립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부합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 구성부분은 토지소유권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함으로써 부동산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부합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가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sup>10)</sup> 우리민법학에서도 부합의 인정기준으로서 독일의 본질적 구성부분 기준을 받아들이는 견해<sup>11)</sup>가 있다.

다수설은 제256조의 부동산 부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57조를 유추 적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로 부착·합체되어야 하

5) “구민법 제242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종으로 그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로 보아 부합한 물건은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2.1.31, 선고 4294민상445판결).

6) 이에 대하여 물건의 일부분에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건의 완전성을 보존하려는 국민경제상의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소유권이 객체의 가치에 따라 물건 전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상품거래의 요청에 기인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川島武宜, 所有權法の理論, 岩波書店, 1987, 177頁 以下).

7) 동지: 김상용, 물권법(2010), 화산미디어, 379면.

8) 부합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줄저,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117~128면 참조.

9) 末弘嚴太郎, “不動産の附合について”, 法學協會雜誌 第50卷11號, 34頁

10) 독일민법 제94조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산출물(종자, 식물 등)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속한다고 하고 제946조에서는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하여 부동산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물건에도 미친다”고 함으로써 부동산에의 부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상 건물, 종자, 식물 등은 부동산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MünchKomm/Füller(4.Aufl.,2004), §946, Rn 1). 독일민법상 무엇이 본질적 구성부분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93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분리하게 되면 구성부분을 훼손하거나 본질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동산 및 부동산의 부합기준으로서 작용한다(MünchKomm/Hoich(4.Aufl.,2001), §93, Rn 10).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부동산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데, 독일판례에 따르면 광산토지의 수도관(OLG Braunschweig Recht 1933.1) 공장부지내에 시설된 가스·수도의 관과 발전기(RGJW 1932, 1197, 1199), 자동차의 브레이크등(OLG Hamm JurBüro 1984, 1799=MDR 1984, 842) 등이 본질적 구성부분에 속한다.

11) 이영준, 앞의 책, 42-44면.



며(물리적 표준에 의하여 결정),<sup>12)</sup> 다만 건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부합의 판단기준으로서 거래관념상의 독립성기준을 채용하고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위에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은 그 식재로 토지에 부합하는 반면, 건물은 권원없이 건축된 경우에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며,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sup>14)</sup>

그러나 수목의 경우 토지로 부터 수목을 분리하는 것은 토지 또는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과도한 비용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경우에도 단지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sup>15)</sup> 왜냐하면 건물은 지반인 토지로 부터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토지에의 부합을 부정하는 근거로 통설은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합제도 자체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에서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라는 것이 부합을 부정하여야 할 어떠한 실질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sup>16)</sup> 다수설에 따르면 오히려 부합을 인정하여야 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타인의 토지위에 권원없이 건축한 건물일 것이다.

## 2. 개별 분쟁 사례

### (1) 토지와 건물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가. 이 경우에 판례 통설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A소유지에 B가 권원없이 건물을 신축하여도 A는 B에 대하여 건물수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근래 일본의 하급심 중에서 A의 토지위에 B가 권원없이 신축한 건물부분은 대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A의 B에 대한 건물수거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B에게 건물퇴거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sup>17)</sup>

부합을 부정하는 판례 통설의 실질적인 이유는 첫째, 우리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관념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건축수습인의 보수청구권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가 반드시 부합부정설을 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합제도 자체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독립물건성’이 곧 바로 부합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분리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방지’라는 부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권원

12) 곽윤직, 앞의 책, 201면; 김상용, 앞의 책, 379면; 이영준, 앞의 책, 466면.

13) 곽윤직, 위의 책, 201-202면.

14) 곽윤직, 위의 책, 201면.

15) 제철웅, “토지에의 부합과 그 예외”, 고시연구(2000.11), 32면.

16) 엄동섭, “민법상의 침부제도(부합, 혼화, 가공)에 관하여”, 민법학논업(후암곽윤직선생기념논문집), 1993, 박영사, 141면.

17) 東京高判 昭和61(1986).12.24(判例時報 1224號, 19頁)

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로의 부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수청구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오히려 수급인의 입장에서 건축도급계약을 통해 얻고자 한 계약의 목적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취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합을 긍정함으로써 유치권에 의한 권리실현(금전채권의 실현)이 보다 유리하다.<sup>18)</sup> 따라서 무권원 건물의 토지에로의 부합긍정설은 해석론으로서도 충분히 재고할 가치가 있다.

## (2) 토지와 토사

토사의 자연퇴적에 의해 기주가 형성된 경우, 부합에 의해 인접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지적(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sup>19)</sup> 일본의 판례는 하천부지상의 기주는 하천부지가 국공유지인 이상, 토사가 자연 퇴적되어 형성된 기주도 국공유지에 귀속하고, 인접한 사유지에도 귀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공유수면을 인공적으로 매립한 경우에는 매립을 위해 A가 토사를 투입하였으나 매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후 적법한 허가를 받은 매립권자 B가 매립을 완성한 경우, 매립권자는 준공허가 고시일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투입된 토사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 부합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토사는 독자적인 동산으로 취급된다.<sup>20)</sup>

## (3) 토지와 수목·종자

판례·통설은 수목은 그 분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무권원에 의한 식재의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며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종자를 파종한 경우에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나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건대 종자를 파종하여 농작물로서 성숙하였다면 그 농작물은 경작지로부터 분리되어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만큼 독립성이 있으므로 부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수목의 경우에 언제나 그 분리가 용이하므로 토지에 부합한다고 하는 판례·통설의 입장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수목의 경우 토지에 부합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식재한 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수목의 수거를 청구하는 것이 민사분쟁에서 보다 간명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18) 졸저, “부동산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130면.

19) 로마법에서 부동산 부합의 기원은 하천에서 기주작용에 의해 연안지 소유권이 확장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20) 日裁判 昭和57(1982).6.17(判例時報 1050號,, 72頁)

#### (4) 토지와 폐기물

A소유지에 B가 무권원으로 폐기하여 퇴적된 폐기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것이 C지에 봉락, 유해물질 용출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C는 B에 대하여 폐기물의 수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무단으로 투기된 폐기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A소유지에 B가 유해물질을 콘크리트벽으로 봉하여 투입한 처리조를 매설한 경우 그 분리는 ‘사회 경제적으로 보아 합리성을 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고 A의 B에 대한 철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합의 인정여부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도 분리·제거되는 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Ⅲ.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의 의미와 기능

#### 1. ‘권원’의 의미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으로써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의 경우에는 부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원이란 지상권, 임차권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건물에 대하여 증·개축하는 권원이 없기 때문에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건물임차인도 임대인(건물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건물을 증·개축하는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sup>21)</sup>

부속자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권원 또는 부속물자체에 대해 대항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일본의 판례는 토지의 양수인이 경작하여 취득한 입도의 소유권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입목에 대해서도 권원에 기하여 산림에 식재한 자는 명인방법 등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반면에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지반소유권의 양수인이 그 취득에 대해 미등기인 채 그 지반위에 식재한 입목에 대해서는 입목소유권의 공시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부합과 부속의 구별

통설은 제256조의 본문의 부합과 단서의 부속을 구별하고 있으며, 부속의 경우에만 권원여부에 따라 부속시킨 자에게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한다. 즉 부합과 부속은 합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합이란 판례 및 통설에 따르면 제257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훼손

21) 엄동섭, “민법상의 첨부제도(부합, 혼화, 가공)에 관하여”, 145면.

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sup>22)</sup> 부속은 부속된 물건이 부동산이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아<sup>23)</sup>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sup>24)</sup>로서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될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sup>25)</sup>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합과 부속의 구별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제256조의 본문과 단서는 부동산부합에 관한 원칙과 예외규정으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권원에 의해 부속된 때에는 부합물은 그것을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게 된다. 이러한 규정취지로 볼 때 본문의 부합과 단서의 부속을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제256조의 본문은 부동산부합의 원칙적 규정으로서 부합물의 소유권이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단서는 예외적 규정으로서 부합물의 소유권이 부속시킨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단서의 규정적 의미는 애초부터 부합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경우(부속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이 긍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부합이 부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sup>26)</sup>

## IV. 부합제도의 목적과 부합의 판단기준

### - 결론에 같음하여 -

부합제도의 목적을 사적 이익의 조정으로 이해한다면 부합의 성립여부·소유권의 귀속결정에 관한 규정 등 부합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합법의 목적을 사회적 이익(공익)의 보전으로 본다면 부합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띤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부합한 물건의 분리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방지가 부합제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합의 성립여부는 일반적으로 분리에 의한 손상·과다한 비용의 회피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통설). 이에 대하여 공익의 내용으로서 거래안전의 확보를 중시하면 거래관념상의 단일성이 부합의 판단기준이 된다.

부합법의 기능의 확대와 다양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부합법의 목적 및 부합의 성립여부를 단일한 기준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통설도 중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가령 부합의 판단기준에 관해 원칙적으로 민법 제257조를 유추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로 부착·합체되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

22) 곽윤직, 앞의 책, 201면; 대판 1960.9.26, 4291행상141.

23) 곽윤직, 앞의 책, 210면.

24) 대판 1975.4.8, 74다1743.

25) 김상용, 앞의 책, 379면; 대판 1985.11.12, 85다카246.

26) 제철웅, “토지에의 부합과 그 예외”, 33면. 제철웅 교수는 제256조 단서가 제256조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부속의 경우를 규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규정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만, 건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부합의 판단기준으로서 거래관념상의 독립성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합에 의해 생긴 물건을 한 개의 물건으로 존속시켜 복구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과 부합의 결과 소멸한 물건위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부합에 의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부합에 의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사이의 이해 조정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석한다.<sup>27)</sup>

이후 부합의 목적물 및 분쟁유형에 따라 부합의 성립여부에 대해 자세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

27)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제12판), 신조사, 2013, 621면.

## 참 고 문 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8.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1.
-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0.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제12판), 신조사, 2013.
- 신국미,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17집, 2010.12.
- 엄동섭, “민법상의 침부제도(부합, 혼화, 가공)에 관하여”, 민법학논업(후암곽윤직선생님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3 박영사.
- 제철웅, “토지에의 부합과 그 예외”, 고시연구, 2000.11.
-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V) 물권(2), 박영사, 2005.
- 末弘嚴太郎, “不動産の附合について”, 法學協會雜誌 第50卷11號, 1932.
- 川島武宜, 所有權法の理論, 岩波書店, 1987.
- MünchKommBZB, MünchKommBZB zum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1, Allgemeiner Teil §§1-240, 4.Aufl., 2001.
- MünchKommBZB, MünchKommBZB zum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6, Allgemeiner Teil §§854-1030, 4.Aufl., 2004.

#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law concerning Attachment

Shin, Gook Mi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Legal problems in attachment are based on the condition that there is an denial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There are two major issues in the legal problems in attachment: (i) who does the ownership of the object created by attachment belong to; (ii) how is the loss of ownership to be compensated.

There is only are article, Article 256, in the Korean Civil Law which stipulates on attachment to immovable directly and individual law disputes may be settled according to variable precedents and legal interpretations.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erequisite and effect of attachment in an attempt to give insights for settlement of contemporary legal disputes in attachment.

Key word: Attachment to immovable,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Ownership, Compensation for loss

논문투고일 : 2015. 6. 29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최 철 호

### 국 문 초 록

사업손실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또는 손해 중 수용자체 에서 생기는 손실이 아니라, 즉 토지의 소유권이 직접 박탈되지는 않더라도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경우에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인근에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를 침해받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를 간접보상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일조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햇빛에 대한 규제기준 내에서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늘에 대해서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넘는 그늘이 주택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하는 정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주제어 : 사업손실보상, 간접보상, 일조침해, 수인한도, 농작물피해보상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일본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에는 "수용손실"과 "사업손실"이 있다. "수용손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직접 생기는 손실로서 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사업손실"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일조저해 등에 따른 불이익, 손실 및 손해를 받은 사업지 외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sup>1)</sup>

## II. 일본에 있어서 사업손실 개관

### 1. 사업손실의 의의

#### (1) 개념

사업손실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토지 자체가 수용이 됨으로써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 손실이 아니고 단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 외의 토지에 대한 사용이 제한당하는 경우에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본 논문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 인근에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를 침해받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를 간접보상 내지 사업손실에 관한 보상으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다.

#### (2) 사업손실관련 규정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사업자 사이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요강에는 사업손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요강을 작성할 때 공공용지심의회가 발표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답신」에서 사업손실은 "사업시행 중이거나 사업시행 후의 일조저해, 악취, 소음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고 있어서 손실보상의 항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손해 등이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대해서」에서는

1) 廣岡徳志, 事業損失の法的性質及び公共事業の適法性について, 行政サービス部門: No.08, 1頁.

"이들의 손해 등의 발생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여 사전배상을 인정하고 있다.<sup>2)</sup>

사업손실보상은 사업의 실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역력한 경우에 수인한도의 판단을 하면서 사업손실의 유형별로 손해의 전보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업손실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sup>3)</sup>

(가) 재산적 손실 : 토지, 가옥 등의 물건의 손상 또는 교환가치의 하락, 지하수위의 고갈, 전파장애, 일조저해 등

(나) 신체적 손실 : 소음·진동 등에 의한 난청, 두통, 위장장애 등

(다) 정신적 피해 : 소음·진동 등에 의한 불쾌감, 초조감, 안면방해 등

원활하고 통일적인 사무 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손실보상인 공공시설 설치로 일조저해, 텔레비전 전파수신장애, 지반변동에 따른 건물 등의 손상, 사업시행에 따른 물 고갈에 대해서는 사무처리요령에서 사업손실을 규정하고 있다.

## 2. 사업손실보상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 (1) 손해배상설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수반하는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대해서」라는 보상기준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조저해 등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손해 등이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들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배상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사업손실보상을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따른다.<sup>5)</sup>

① 불법행위 이론에 따르는 손해배상으로는 사업손실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상이 문제이고, ③ 불법행위를 예견한 배상금 선불이라는 것은 불법행위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반대견해가 그것이다.

2) 廣岡徳志, 前掲論文, 2頁.

3) 西埜章·田辺愛彦, 損失補償の理論と実務, プロGRESS, 2005, 107-108頁.

4) 加藤一郎, 事業損失の補償について, 補償研究 1966年8月号, 36頁.

5) 石田浩紀·小林茂信, 事業損失補償の一考察, 2頁.

사업손실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해 소송이 되는 경우는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지만, 일반적인 사업손실보상은 손해배상의 논리에 해당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 같다.

## (2) 손실보상설

사업손실보상을 손실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장이다.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헌법 제29조 제3항 등을 근거로 기초했다는 것이며, 사업손실 중에는 수용 또는 사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업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는 사업손실도 수용손실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 (3) 결과책임론

사업손실보상은 손해배상도 손실보상도 아니고 제3의 유형이라는 주장이다. 즉 사업손실은 적법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해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이고 공공을 위해서 희생에 제공된다고 하는 사실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보완하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의 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sup>7)</sup>

# 3. 사업손실의 보상요건<sup>8)</sup>

## (1) 인과관계

공공사업의 시행에 기인해서 공공사업의 시행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란 일정한 선행 사실과 일정한 후행 사실 사이에 필연적인 원인-결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2) 수인의 범위

해당 손해 등이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 보상한다는 것인데, 수인의 범위란 통상 일반인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상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한도를 말한다.

## (3) 청구기한

공사 완료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사업손실보상 규정인 토지수용법 제93조 제2항 및 도로법 제70조 제2항과 맞추려고 한 것이다.

6) 木村実, 道路公害と事業損失, 月刊用地 1992年6月号, 40頁.

7)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研究, 有斐閣, 1968, 158-159頁.

8) 石田浩紀·小林茂信, 前掲論文, 3頁.

#### 4. 사업손실의 보상기준의 마련<sup>9)</sup>

사업손실보상의 기준은 각각 상황에 따라,

- ① 일조저해(관련규정 :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주택 등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련된 비용부담에 대해)<sup>10)</sup>
- ② 전파장애(관련규정 :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텔레비전 전파 장애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sup>11)</sup>
- ③ 물 고갈(관련규정 : 공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시행에 기인하는 물 고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 처리 요령의 제정에 대해)<sup>12)</sup>
- ④ 건물 손상(관련규정 : 공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시행에 기인하는 지반 변동에 의해 발생한 건물 등의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요령의 제정에 대해)<sup>13)</sup>
- ⑤ 소음피해(관련규정 : 공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시행에 기인하는 소음에 의한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지침(안)에 대해)
- ⑥ 농작물 손해(관련규정 :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일조저해에 따라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지침(안)<sup>14)</sup>이 있다.

#### 5. 사업손실의 보상의 사례

##### (1)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한 가격하락분 보상

화장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혐오하는 시설을 위한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면 화장장 예정부지 부근의 토지 가격도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도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토지 등을 수용하여 취득할 때는 당해 토지의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행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된 보상금으로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의 대체지를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sup>15)</sup>

9) 西塾章·田辺愛彦, 前掲書, 119-120頁.

10)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주택 등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련된 비용부담에 대해(1976년 2월 28일 建設省第4号建設事務次官通達).

11)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텔레비전 전파 장애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1979년 10월 12일 建設省第35号建設事務次官通達).

12) 공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시행에 기인하는 물 고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 처리 요령의 제정에 대해(1984년 3월 31일 建設省計用發第9号建設事務次官通達).

13) 공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시행에 기인하는 지반 변동에 의해 발생한 건물 등의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 처리요령의 제정에 대해(1986년 4월 1일 建設省第22号建設事務次官通達).

14) 이 사업지침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상세하게 서술한다.

15)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제7조 제3항으로 명문화되었다. 조연팔, 일본의 선하지 보상 제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2011, 11, 234-235면에서 인용.

## (2) 잔여지 보상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의 가격 저하에 대해서는 “잔여지의 가격의 저하, 이용가치의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러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 (3) 그 밖의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sup>17)</sup>

공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 및 그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 소위 ‘공사비보상<sup>18)</sup>’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손실 보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자주 문제로 되는 사업시행 중 또는 사업시행 후에 일조장애, 악취, 소음 등에 의해 생기는 불이익한 손실이나 손해 등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손실보상의 항목으로서 취급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62년 6월 29일자 각의요해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대하여」에서는 “사업시행 중 또는 사업시행 후에 일조장애,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에 의해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는 이 요강에서 손실보상으로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들 손해 등이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손해 등의 발생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들에 관하여 배상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 사업손실이 불법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배상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에서는 사업손실이 보상의 대상인 것을 부정하면서도 전술한 각의요해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대하여」)에서는 손해배상의 사전보상이라는 조치에 의해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게 되었다. 이것은 특정의 자에 대하여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손실도 수용손실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제41조.

17) 조연팔, 전계논문, 234-235면.

18)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수용되지 않는 잔여지에 도로, 담, 울타리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수선, 성토, 절토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비용을 기업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수용법 제75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공사비보상이라고 칭한다.

19)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제42조, 제44조.

## 6. 사업손실 보상의 절차

사업손실 보상 중에서 대표적인 건물에의 日陰피해 보상을 예로 든다면 손실보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가옥의 사전 조사 → ② 공공사업의 시공 → ③ 손해발생의 제기, 보상 청구 → ④ 인과관계의 판단 → ⑤ 가옥의 사후 조사 → ⑥ 조사 결과의 판단(공사와의 인과 관계, 수인한도의 판단) → ⑦ 확인조서의 날인 → ⑧ 보상금 산정 → ⑨ 협의 보상금 제시 → ⑩ 계약 → ⑪ 보상금 지급의 절차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⑦~⑩ 사이에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 Ⅲ. 도로건설에 기인하는 일조저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 1. 일조저해의 의미

일조저해는 건물과 고가도로 등의 일조의 양에 따라 거주 공간이나 식물, 농작물이 받는 영향을 말한다.

일조저해가 중요한 이유는 일조량 감소에 의한 사람에 대한 건강 영향이나, 조명 시간, 난방 시간 등의 증가에 따른 난방비 증대, 농작물 생육 저해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조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햇빛에 대한 규제기준 내에서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라는 기준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에 의해 발생하는 日陰의 영향에 대해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이른바 수인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넘는 영향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다.

도심부에서는 단일 고층 건축물의 영향뿐만 아니라 복수의 구조물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2. 공공시설에 의한 일조저해 보상

(1)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계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1976년 2월 23일 建設省計用發第4号建設事務次官通達)

위 통지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에 의해 발생한 日陰으로 주택 등의 거주자 등에 사회 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는 손해 등이 발생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손해에 합당하는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부담의 대상자는 주택 등의 거주자 등인데 단순히 토지소유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은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 (2) 日陰 시간

공공시설의 설치 후의 日陰 시간은 동지날 태양시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日陰 시간은 개구부가 정남에 면하는 居室에서의 日陰 시간이고 그 외의 거실에 대해서는 당해 거실의 개구부가 면하는 방위에 따라 보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1 >

	1층	2층
제 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또는 제 2종 저층주거전용지역	4시간	
제 1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또는 제 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4시간

위의 표의 층 이외의 층의 日陰 시간은 그 日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시설의 높이, 공공시설과 주택 등과의 위치관계 등의 상황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방위보정

방위보정은 남동쪽으로 7시간, 동남동으로 5.5시간, 동으로 4시간

### (4) 비용부담

비용 부담은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기타 경비

#### 1) 난방비

난방비 산정기준은 오전 9시의 외기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로 되는 기간 중 평균으로 과거 3년 연간 평균으로 한다.

비용부담이 되는 것은 거실면적이다. 다만 거실 바닥 면적이 개구부의 크기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큰 때는 적정하게 보정한다.

난방기구 사용에 의해 필요한 공과금 및 난방기구의 감가상각비 및 보수비를 비용 부담한다. 주택소유자는 대체로 30년이고 세입자는 대체로 5년을 한도로 한다.

#### 2) 조명비

조명비는 조명기구의 전기요금, 조명기구의 감가상각비와 보수비

#### 3) 건조비

건조는 건조기의 감가상각비와 보수비, 전기요금이다.



### 3.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한 비용부담

#### (1) 의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日陰에 의해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는 손해 등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23일에 중앙용지대책연락위원회사무국장(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국토환경·조정과장)이 중앙용지대책연락협의회 회원, 각 지구 용지대책연락협의회 회장에게 보낸 통지인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지침(안)」<sup>20)</sup>에 의거하여 고가교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저해에 의해 농작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2) 대상토지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제공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텃밭은 해당되지 않는다.

#### (3) 대상자

대상자는 농업생산자의 경우는 공사완료 전부터 경작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영농소작권 또는 임대권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작농, 소작농, 농업생산법인도 포함한다.

#### (4) 요건

공공시설의 설치 후의 日陰 시간이 설치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확인하면 족하다.

#### (5) 인과관계

日陰 시간과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의 인과관계는, 농업시험장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日陰 시간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가 농업생산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20) 과거에는 日陰으로 인한 농작물 등에 관련된 손해 등에 대한 비용부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야채,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량이 연간 추정수확량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동일 기준 등은 없었지만 「고가교 등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벼농사) 감소의 손해에 관한 전보기준」(일본도로공단官道 제41호 1986년 3월 25일)에서 벼농사에 대한 일조 저해의 기준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도로공단이 민영화로 인하여 4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로 분할되어 현재는 위의 기준은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에 본문에 서술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지침(안)」을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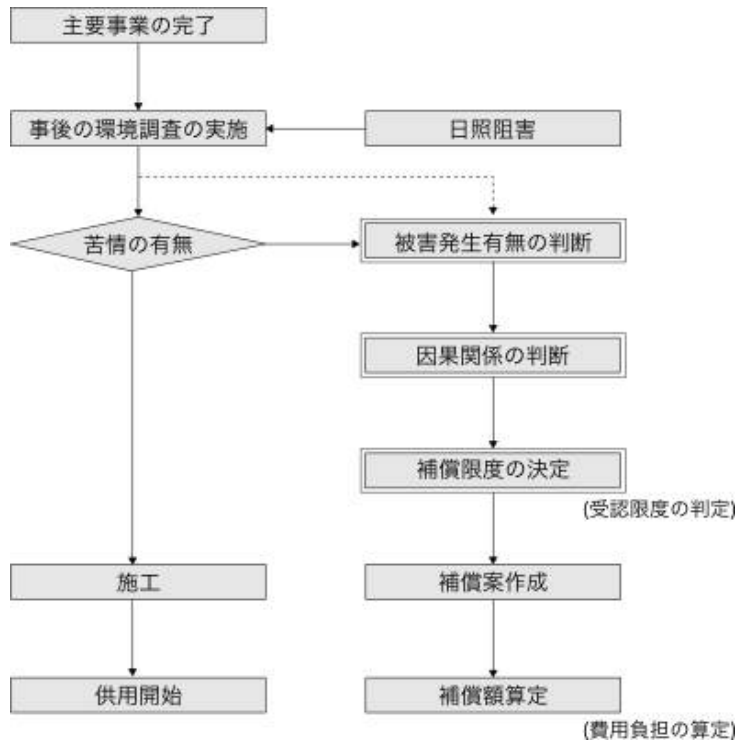
(6) 부담비용액수

농산물 가격은 비용부담 시의 생산자 가격이다.

비용부담은 대체로 30년을 한도로 하지만 택지에정지는 대체로 10년을 한도로 한다.

4.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침해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특히 채소, 과일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1>

(1) 피해 발생 경위

배추를 비롯해서 채소에 있어서 빛은 광합성 에너지원으로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고가교에 설치에 따른 일조의 저해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얻지 못하여, 태양의 직사 에너지에 따른 기온·지온의 상승 일조(빛의 세기), 일장(일광 시간)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작물 생육, 나아가 농작물의 개체 수량, 수확 시기의 지연 등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 태양 고도가 변화하고 비, 기온 등의 다른 기상 조건과도 관계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특히 야채는 생육 기간이 2~3개월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름 생육의 야채에 대해서는 태양 고도가 높고 일조 저해의 영향이 낮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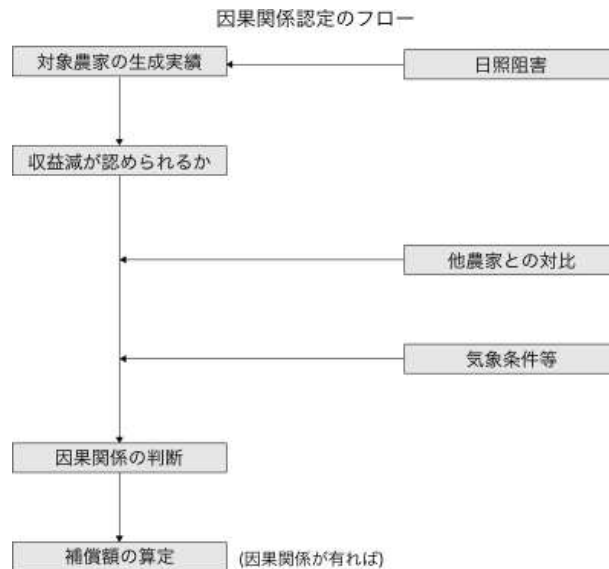
### (2) 인과관계 분석

밭은 동경 0도, 북위 0도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日陰 상황에 대해 오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의 일조 시간 3시간 및 6시간을 춘분, 추분, 동지별로 검토한다.

따라서 일조저해에 의한 성장 부족이 발생한 경우, 크기, 가격의 양면에서 농업 수익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 배추의 경우 농작물의 특성상 그 출하는 모두 농협 경유인 것으로, 출하량 파악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능하다. 피해 발생의 유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은 대상 작물을 배추로 가정하면,

- 대상 농가의 과거 5년간의 출하량 및 그 가격 자료 수집
- 동일한 생산을 하고 있는 다른 농가의 과거 5년간의 출하량 자료 수집
- 기상 자료
- 기타 작물과 일조에 관한 문헌 등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일조 장애와 수익 감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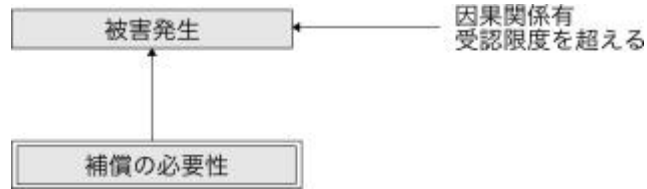


<그림 2>

### (3) 수인한도의 판정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판정은 그 피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의한다.

농작물의 감수는 대상 농가에게 영업 수익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고 생활과 영업에 현저한 차질을 빚는 일은 분명히 수인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 (4) 벼 경작자에 대한 일조지해 보상 사례

기존 공공사업에는 日陰에 의한 농작물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2004년 6월에 중앙농지대책연락협의회 합의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지침(안)」이 만들어졌다. 제정 당시 대상이 되는 사례는 없었지만 2008년 11월에 "고속도로의 日陰에 의해 발생한 농작물 감소의 손해에 관한 비용 부담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비용부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41명(80필지)에게 보상을 했다.

## IV. 대 안

### 1. 일조지역권<sup>21)</sup> 설정 도입

일조확보를 위해, 당사자 간에 일조지역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일조지역권의 설정에 관한 사례를 예시하면, 남쪽, 북쪽의 토지소유자 사이에 일조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일조지역권 설정 시 중요 내용으로는, 높이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쪽 5m에 건물 기타를 일절 건축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역권 보상료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건축물 높이 상한을 지역권으로 등기해 두면, 남쪽 땅(승역지)소유자가 상속·매매 등으로 바뀌어도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21) 일본 민법 제28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남의 땅을 자기 땅의 편익에 이용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장 제1절(소유권의 한계)의 규정(공공질서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2. 일조에 관한 협정체결방안

일조를 저해할 가능성 있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해당 토지에서 건축할 때 건축물의 높이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상호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일조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별첨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日陰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 등에 관계된 사무처리지침(안)

### 제1조(취지)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에 의해 발생한 日陰에 의해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를 한다. 이하 동일)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공사 완료 전부터 해당 공공시설 설치로 日陰이 생기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에 한함. 이하"농업 생산자"라 한다.)에게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범위(이하"수인한도"라는.)을 넘는 손해 등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이 지침(안)을 참고한다.

### 제2조(비용 부담의 요건)

농지에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후의 日陰 시간이 설치 전의 日陰 시간에 비해 증가하고 해당 농지에 재배되는 농작물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종전의 수확고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농업 생산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 등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비용 부담액 산정)

전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하는 비용은 전조의 수확량의 감소에 따른 농업 수익의 감소 금액으로 하는 부록의 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 제4조(사전 비용 부담)

해당 지역에서 日陰 시간과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관계를 농업시험장 등의 조사 결과 등의 사례가 있고, 日陰 시간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서 농업 생산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 등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손해 등의 발생 전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감소되는 예상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비용 부담의 청구 기한)

비용의 부담은 농업 생산자로부터 해당 공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완료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비용 부담의 방법)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자에게 금전으로 행한다.

## 부 록

$$\text{비용부담액} = A \times \frac{(1+r)^n - 1}{r(1+r)^n}$$

(1) A는 연간 농업 수익의 감소 금액으로 하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감소액=(종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농산물 가격-日陰이 생긴 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농산물 가격)×日陰 면적

### 1) 수확량 파악

(가) 비용 부담의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日陰 발생 시에 재배되는 작물이나, 밭농사 및 온실 재배의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다.

(밭작물)

해당 지역의 연간 재배되는 대표적 작물(연작을 하지 않는 작물에 있어서는 이것을 대신 하는 작물을 포함)이 재배되는 것으로 본다.

(온실 재배)

상기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나) 종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과거 3년간 평균(풍흉이 현저한 해를 제외한다.)에 따른 것으로 하고, 해당 시정촌의 통계 수치(지역 구분 등이 있는 것은 해당하는 구분의 것)를 이용할 수 있다.

(다) 日陰이 생긴 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실지 조사에 의해 요구되는 것 외에 농업시험장 등의 조사 결과에 근거한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현장 조사는 日陰 시간대별로 일정 면적을 구분하고 수확량 및 품질의 상태를 조사한다.

(라) 대표적 작물의 선정, 수확량 감소 등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개량보급원 기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 2) 농산물 가격

(가) 농산물 가격은 비용 부담 시의 생산자 가격으로 한다.

(나) 日陰이 생긴 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곱하는 농산물 가격은 日陰에 의한 품질 저하 상황을 반영한 생산자 가격으로 한다.

- (2) r은 연이율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세칙 제42조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 (3) n은 비용 부담의 기간으로서 대략 30년을 한도로 한다. 단 시가화구역(생산녹지지구 제외), 택지예정지지역은 대략 10년을 한도로 한다.



## 別 添

公共施設の設置に起因する日陰により生ずる農作物に対する損害等に係る事務処理指針（案）

### 第1条（趣旨）

公共事業の施行に係る公共施設の設置により生じた日陰により、農地（農地法第2条第1項に規定する農地をいう。以下同じ。）において農作物を生産している者（当該公共施設の設置に係る工事の完了以前から当該公共施設の設置により日陰が生じる農地において農作物を生産している者に限る。以下「農業生産者」という。）に社会生活上受忍すべき範囲（以下「受忍限度」という。）を超える損害等が生ずると認められる場合の費用の負担等に関する事務処理については、この指針（案）を参考にするものとする。

### 第2条（費用負担の要件）

農地において、当該公共施設の設置後の日陰時間が設置前の日陰時間に比して増加し、当該農地に栽培されている農作物の単位面積当たり収穫高が従前の収穫高に比し減少することにより農業生産者に受忍限度を超える損害等が生ず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損害等をてん補するために必要な最小限度の費用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 第3条（費用負担額の算定）

第3条前条の規定により負担する費用は、前条の収穫高の減少に伴う農業収益の減少額とし、付録の式によって算定するものとする。

### 第4条（事前の費用の負担）

当該地域において、日陰時間と農作物の収穫高の減少との関係につき農業試験場等による調査結果等の知見があり、日陰時間の増加により農作物の収穫高が減少し、農業生産者に受忍限度を超える損害等が生ず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損害等の発生前においても、前条の規定を準用して算定した減収見込額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 第5条（費用負担の請求期限）

費用の負担は、農業生産者から当該公共事業に係る工事の完了の日から1年を経過する日までに請求があった場合に限り、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 第6条（費用負担の方法）

費用の負担は、原則として、農業生産者に金銭をもって行うものとする。

## 부 록

$$\text{費用負擔額} = A \times \frac{(1+r)^n - 1}{r(1+r)^n}$$

1) Aは、年間の農業収益の減少額とし、次により算定した額とする。

減少額 = (従前の単位面積当たりの収穫量×農産物価格 - 日陰が生じた後の単位面積当たりの収穫量×農産物価格) × 日陰面積

### 1) 収穫量の把握

(ア) 費用負担の対象とする農作物は、原則として、日陰発生時に栽培されている作物とするが、畑作及び温室栽培のものについては次により扱うことができる。

#### 畑作)

当該地域において年間を通して栽培される代表的作物(連作を嫌う作物にあつてはこれに代る作物を含む。)が栽培されているものとみなす。水稻の裏作についても同様。

#### 温室栽培)

上記畑作が行われているものとみなす。

(イ) 従前の単位面積当たりの収穫量は、過去3年間の平均(豊凶の著しい年を除く。)

によることとし、当該市町村における統計上の数値(地域区分等があるものについては該当する区分のもの)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

(ウ) 日陰が生じた後の単位面積当たりの収穫量は、実地調査により求めるほか、農業試験場等による調査結果に基づく資料を用いることとする。実地調査は日陰時間帯ごとに一定面積を区切り、収穫量及び品質の状態を調査する。

(エ) 代表的作物の選定、収穫量の減少等の必要事項の把握にあつては、農業改良普及員その他の専門家から意見を聴取する。

### 2) 農産物価格

(ア) 農産物価格は、費用負担時における生産者価格とする。

(イ) 日陰が生じた後の単位面積当たりの収穫量に乗ずる農産物価格は、日陰による品質低下の状況を反映した生産者価格とする。

2) rは、年利率とし、公共用地の取得に伴う損失補償基準細則(昭和38年3月7日用地対策連絡会決定)第42に定める率とする。

3) nは、費用負担の期間とし、おおむね30年を限度とする。ただし、市街化区域(生産緑地地区を除く。)、宅地見込地地域はおおむね10年を限度とする。

## 참 고 문 헌

- 조연팔,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2011, 11, 234-235면.  
廣岡徳志, 事業損失の法的性質及び公共事業の適法性について, 行政サービスNo.08., 1頁.  
西埜章・田辺愛壺, 損失補償の理論と実務, プロGRESS, 2005, 107-108頁.  
加藤一郎, 事業損失の補償について, 補償研究 1966年8月号, 36頁.  
石田浩紀・小林茂信, 事業損失補償の一考察, 2頁.  
木村実, 道路公害と事業損失, 月刊用地 1992年6月号, 40頁.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研究, 有斐閣, 1968, 158-159頁.

#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 on the Crop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light by Overpasses in Japan

Choi, Cholho

professor, the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Business loss is not a los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or the one caused by expropriation of land itself, which means that it refers to the loss caused when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works under the public necessity even in case ownership of land is not directly deprived. For example, los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shine necessary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crops as an overpass is constructed in the vicinity of farmland where crops are being cultivated can be the example. This is referred to as indirect compensa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light, the Building Standard Law of Japan made it mandatory for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to be planned within the standard for control over sunlight.

Japan is setting a limit (tolerable limit) to admit shade caused when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such as overpasses etc., and government standards that compensate if the shade exceeding the limit damages to houses and crops have been prepared.

Key words : indirect compensation, the standard for control over sunlight, tolerable limit,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light, Compensation for Damage on the Crops

논문투고일 : 2015. 6. 30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집 1호  
2015년 7월호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방안

청주대학교 인재개발원 과장  
박 풍 규

### 국 문 요 약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급증하는 노인들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주며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교육, 학습활동의 필요성을 노인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찾기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것은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취업적응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사회 변동 흐름을 이해시키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고령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친화기업

## I. 서 론

21세기 인류는 의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오랜 꿈인 무병장수를 달성

하여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듯하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10여 년 후에는 120세를 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줄기세포 연구 및 암,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 치료제 개발, 노화원인 DNA의 발견과 예방, 생활조건의 개선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병장수의 위업을 달성하는 이면에서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 사회는 지금 선진국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 2014: 3).

이와 함께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현재 108만원으로 비노인가구(약368만원)의 29.3%에 그쳤다.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지난 40년간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2015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부양비는 18.12명으로 추산됐다. 2005년 12.96% 와 비교하면 올해는 5.16% 포인트 증가했다(통계청, 2014: 3).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혹은 노령화 속도를 보면, 프랑스, 스웨덴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로인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115년과 85년이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26년이고, 우리나라는 22년으로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후의 노인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충방안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설계가 전혀 준비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빈약하여, 각종 노인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노인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기업의 모델을 설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을 분석하여 노인 일자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작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의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고 친화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노인 일자리사업과 고령화 친화기업

### 1.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코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민간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이다(황윤란, 2006: 263).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일종으로써, 일부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립형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노인문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 문제, 노화로 인한 질병문제, 사회·심리적 갈등에 따른 고독과 소외문제,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의 문제 등이 있다.

이는 곧 노인 개개인이 본인의 노후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뜻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할 의지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노인부양에 대한 복지재정 부담가중, 노인빈곤 등의 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노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 2. 고령자 친화 기업

보건복지부는 '기업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기관)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자살 및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른바 핫(Hot)한 노인종합복지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민간 자원과 노인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시니어 직능클럽」을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이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

산지원과 민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 기업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노인인 구성된 기업도 무한히 도전하면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직능클럽」은 모(母)기업이 주도하여 퇴직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저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퇴직자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 활동 및 사회기여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1) 고령자 친화 기업의 정의 및 목적

고령자 친화 기업이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으로,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 고령자 친화 기업 신청자격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발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li> <li>○ 대응투자 70%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시장진입형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li> <li>○ 대응투자 20% 적용</li> </ul>

## Ⅲ.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

### 1. 일자리사업의 유형

#### 1) 공익형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가 공익형이며, 지자체 고유업무 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 공헌할 기회 제공으로 참여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킬수 있다.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제도, 지역행정 조사,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공공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한함) 지원 등이 있다.



## 2) 교육형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 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적자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노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수요처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세대강사파견, 노-노 교육 강사 파견, 취미활동 강사파견, 체육(건강)활동 강사 파견, 문화재해설, 숲 생태 해설 등이 있다.

## 3) 복지형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취약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부여하며,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거동 불편 요 보호자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 지원, 소외계층지원, (노인)가구주거개선, 아동청소년보호(상담·선도활동 등), 문화 복지사업 등이 있다.

## 4) 시장형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수익이 창출되는 경제사회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자립심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3년)지원 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또는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포함한 국가적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식품 제조·판매, 특산물 제조·판매, 공산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운영,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지역영농사업 등이 있다.

# 2. 청주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내용

## 1) 가죽공예 사업단

가죽공예에 필요한 작업 기술을 가진 여성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수제가죽공예 제품을 생산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며, 자신의 여가생활과 적성을 살려 근로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판매망 확충을 통해서 자립적인 사업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죽공예 사업은 수제 가죽가방, 지갑, 핸드폰 장식용 등의 가죽제품을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일반 대기업 브랜드의 대량생산품보다는 개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개별 작품 생산방식으로 틈새시장이다. 고가상품의 시장에서 작품성 가죽제품의 판매시장은 고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작품성 가죽제품의 경우 독특한 디자인과 제작능력이 있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내상권의 매장이 설치하거나 수제품 판매장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대량판매가 가

능하다. 현재는 인맥을 활용한 개별 소비자 판매에 한정하고 있다.

여성어르신 중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자신의 여가 생활과 연결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용면의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20여명 내외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있으며 2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제작과정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참여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디자인 부분 그리고 판매부분을 보충하여 실시한다면 60초반의 여성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활용가능하다(박풍규, 2008: 4-20).

## 2) 도시락배달사업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일상에서 획득한 음식 조리 능력을 활용하여 도시락 제조, 배달 판매 사업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존감을 획득하며 이 사업의 이용자인 소비자들은 음식을 소비하는 동시에 노인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경험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 3) 미원 할머니 장류 판매사업

여성어르신들이 오랜 삶의 경륜에서 획득한 손맛을 통해 장류(청국장, 된장, 간장 등)시장에 참여하며, 현대가정에서 만들 수 없으며, 어르신들의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장류를 생산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물맛으로 유명한 미원면의 특성을 살려 장류를 만들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장류시장은 청국장,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시장은 대기업의 대량생산과 유통에 대부분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현 장류시장에서 틈새시장은 40대 이상의 주부가 있는 가정에서 장류를 대량생산품이 아닌 전통방식의 장류를 구매하고 있으며,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서 전통생산품인 장류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40대 주부와 단체급식소용의 기호에 맞추어 고품질 전통 장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며, 어르신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얻고 소비자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의 맛과 문화, 정성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4) 밑반찬판매사업

어르신들이 오랜 삶의 경륜에서 획득한 손맛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며 단순히 '음식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세대간의 벽을 넘어 어르신세대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전통의 맛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참여 어르신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얻고 소비자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의 맛과 문화, 정성을 접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다.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차후에는 안정적인 판매망 및 수익금 확보를 통해 자립형 지원 사업이 되는데 있다.

## 5) 신나는 체험마을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선정하고 실무교육을 통하여 체험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로 채용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갖도록 하며, 참가하는 어린이 세대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여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군에 위치한 2개의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마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체험마을 도우미로 교육, 양성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드미 녹색마을의 경우 녹색농촌체험과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을 위주로, 별랏한지마을의 경우는 한지체험과 한지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을 위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르신들을 교육시켜 체험활동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보다 활발한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아동들에게 우리고장에 위치한 학습장을 이용한 교육은 우리고장 바로알기와 지역사랑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인 도움의 제공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참가하는 3세대와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가능하다(박풍규, 2008: 4-20).

## 6) 기타

이 밖에 우리 문화 지킴이, 의류재활용 사업단, 전통수의 사업단, 짚공예 사업단, 행복나눔 집수리 사업단, 실버시장 사업단, 우리부채, 연 만들기 등이 있다.

# IV. 현행 노인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 1)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 (1)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노인을 만55세 이상인 자로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차별을 두고 있다. 관련 법체계 또한 문제가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고 하였으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제외시킴으로서 노인복지관련 법제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과의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역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의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일자리사업 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경력인정, 상해보험 제도, 노후보장·저축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이명숙, 2000:80-81).

노인복지사업법 제2조에 노인에 맞는 일자리 종사를 선언하고 법제23조에 노인적합직종 개발·보급 시책장구,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자리 규정은 사회참여의 수단으로만 제시하고, 일자리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취업알선기관 등에 대한 지원규정만 있는 실정이다. 다른 법에서는 취약계층 인력운영시설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여성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령자고용은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설립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노인복지법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이 법조문만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 (2) 행정적 문제점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여 각 구청별로 있는 복지관의 노인관련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서비스 대상이 빈곤노인인지 아니면 중상류층 노인인지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홍보미흡으로 인해 구인처와의 연결된 정보망이 부족한 고령자 인재은행 등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3) 경제적 문제점(노동시장)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업은 대기업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일관되어 노인들이 취업하기 좋고 노인인력이 일터에서 적응을 잘하면서 은퇴 전 직장경험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위주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필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 (4)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덜 성숙된 것 같다. 즉, 노인은 무조건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선입견과 노인들은 성격 면에서 완고하며 새로운 일이나 과제에 적응하기가 젊은 사람보다 어렵다는 편견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고용의 채용빈도나 가능성이 낮아지며 실제로 취업현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 2) 고령자 고용 촉진제도의 문제점

### (1) 취업알선 제도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하여 노인 취업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업알선은 보통 건물 청소부나 환경미화원, 일반노무원, 간병인, 조리원, 가정도우미 등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고 전문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전문인력의 상용근로자를 원하지 않고 있고 주로 단순노무직의 노인만을 요구해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고령화 인재은행은 이미 전국화된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와는 달리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월 70만 원 정도의 낮은 지원수준과 구인, 구직처 개발 소홀로 취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그밖에 일반취업알선기관 직원들이 고령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취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들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고, 이들 기관의 담당직원은 그 숫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엄수원, 2007: 264).

### (2) 직업훈련제도

고령인력을 제대로 취업시키거나 일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는 각종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맞춤형 취업이나 일자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적위주의 단기적응 훈련실시는 직업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 (3) 고령자에 대한 차별

고령자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며, 조기퇴직과 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항상 지니고 있다. 신체적 노화에 따른 친화력과 활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저임금과 조기 퇴출 등의 차별을 받고 있으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이명숙, 2008: 18).

## 3)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001년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노인일자리아의 핵심으로서 클럽운영이 내실화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시니어클럽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시니어클럽을 총괄·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아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시니어클럽보다는 상위조직으로서의 일자리아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그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 노인에 맞는 일자리아제공을 포함하여 다수의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자리사업은 체계성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령사회에 노인인력의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구심체역할을 할 통합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2.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

### 1) 일자리사업 수행방법 개선방안

#### (1) 노인일자리 예산 심의 편성과정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급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고 및 지방비 예산부담의 증가가 예견되는바, 이를 위해 일자리 사업예산의 심의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예산의 추가요구나 또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 하므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면, 첫째 정보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지자체별로 요구 사업량을 반영 할 것.(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둘째,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일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한다(지자체별 사업량, 인건비, 교육비, 부대경비, 관리비용의 산출근거 제시).

#### (2) 사업수행 전산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

사업수행 전산관리 시스템은 일선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보고하는 수작업 실적관리는 실적취합의 지연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인인력의 수급동향은 전체적인 자료·분석의 곤란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상태가 있으므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전국 사업수행기관을 온라인망으로 연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조합 전산망”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실적통계관리·인건비 지출 등 회계관리·평가관리·구인/구직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3) 공공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수행의 방법개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65세 이상의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일자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는 취로사업 형태의 임금 살포식 일자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소수의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첫째, 환경·복지·교통 등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로서의 지속 가능한 사업위주로 실시하여야 하며, 둘째, 작년도에 실시 프로그램을 자체 심사·평가 후 부적합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변경 조치하여야 하며, 셋째, 과거의 유사한 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하고, 넷째, 공공 참여형 일자리는 읍·면·동의

조직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사회복지담당자의 행정관리와 노인사업단 단장의 현장 자율관리 병행 등을 들 수가 있다.

#### (4) 공익 강사형 프로그램 사업수행 방법개선

공익 강사형 참여자는 과거 교사 등 경력직 종사 노인에게 적합한 유형이므로 당초 저소득 위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일부 고소득층 노인의 참여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수요처 발굴의 전제가 되어야 하나 수요처 발굴이 쉽지 않는 일자리 사업이므로 공익 강사형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우선 참여권을 부여하고 고소득층 노인은 무료 자원봉사 또는 참여 노인을 교육시키는 전문 강사로 육성 하여야 한다.

둘째, 수요처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유치원 원장·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방교육청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하며,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서와의 협조체제도 구축 할 것.

다섯째, 문화재의 해설사 등 관광객이 찾아오에 따라 수요처 발굴이 불필요한 분야를 우선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5) 인력 파견형 프로그램 사업수행 방법개선

인력파견형의 현 실태를 보면 IMF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청년실업의 증가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인력을 파견할 수요처 발굴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교육 후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파견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처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둘째,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 셋째, 기존 노동시장 중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보면 주말근무·비면자 교대근무, 파트타임 시장 등 파견 범위의 다각화 시도, 넷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 기이수자는 잠재적 인력파견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6) 시장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수행 방법개선

시장 참여형 일자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형 일자리로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바람직한 유형이나 시장에서 개인 사업자와 경쟁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의 한 분야이고 수익금이 창출되는 일자리임에도 월20만원이라는 저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임금의 중복지원의 문제 제기 및 계속지원여부 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러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시장 참여형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립형 일자리이므로 매년 일정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초기 예산지원 방안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 (7) 담당자 인센티브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 급선무이며 특히 업무담당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책임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전문운영체계의 확립

### (1) 노인적합직종의 개발 및 보급

현재 노인에 적합하다고 개발된 직종은 주로 단순노무직에 치우쳐져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1.8%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약 52만 명이상의 노인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전문 인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수가 약 48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즉,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전문직종의 개발과 보급은 노인인력의 전문화를 앞당기고, 고령자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다.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으로서, 노인의 직업능력을 측정·평가하고, 해당직종이 요구하는 조건을 분석한 다음 양쪽의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많은 직업 중에서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발·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김근홍, 2002: 48).

노동부에서는 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저연령 층과 차이가 나지 않는 직종, 노동 강도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직종, 보편적인 직종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선정하여 이에 종사하는 젊은 노동자를 다른 직종으로 이동시키고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의 적합 직종을 단순노무직으로 한정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학적 연구나 실무위주의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적합직종의 개발이 요구된다(이근홍, 2006: 27).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제작한 “고령자 취업가이드”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들을 위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는 고령자의 취업 자세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들이 진출가능한 대표적인 직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취업목적에 따라 생계유지형, 사회참여형, 경력개발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생계유지형의 직업은 생계유지가 취업목적으로, 단기간의 훈련을 통한 취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려는 고령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육체적으로 강인성을 요구하거나 위험한 근로환경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조립원, 도배원, 배달원 등의 12개의 직업과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참여형은 돈이 취업목적이라기 보다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다. 보수가 적고,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



이며, 사회교육강사, 주례사 등의 5개의 유형이 있다.

경력개발형은 젊은이에 비해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장기간의 경험이나 경력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다. 대체로 기술직이나 전문직(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직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경력, 학력, 경험 등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축기술자, 토목기술자, 번역가, 배관원, 미장원 등의 19개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때, 노인들의 욕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연령별, 지역별, 교육별, 성별의 욕구수준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2) 직업능력 배양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미국의 경우 고령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노인법, 연령차별금지법, 직업훈련 협력법을 만들어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만들어 고령화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대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인색하다(황춘익, 2008: 56).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고령자취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직업훈련과 직업훈련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하여 단순노무직에서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고령자의 인격자원을 교육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도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고령자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취업 및 창업지원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노인들의 제 특성, 노동시장의 연결 가능성,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취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노인창업을 통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확대의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경륜있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보편화하여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노후생활 패턴을 적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원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지원체계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의 지를 고양시키는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하고, 전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지원에만 의지하고 않고 시민사회 내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및 교

육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이명숙, 2000: 4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원내용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신속한 하달, 보수지침 등의 확정,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기업 또한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때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공동체를 창업할 때, 유사업종의 민간기업에서 기술 중 일부를 양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사업 시 필요한 경영, 기술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지역시민사회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공동체 창업을 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조직할 때, 이것을 구입하고 자원봉사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설립된 초기에 각종 사업은 관련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의 설립

중장기적으로는 산재해 있는 노인 취업알선과 훈련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비체계적, 분산적, 비전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와 고령자 창업지원센터를 흡수하여 고령자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관의 조정 및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의 목적과 목표, 기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운영방법, 인력,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마련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특성 있는 기능을 전문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고령자인력관리공단의 업무는 첫째, 55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성연구, 둘째,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셋째, 전직훈련, 넷째, 고령자 창업지원, 다섯째, 고령자 고용정보 총괄, 여섯째, 고령자 평생교육 및 정보화 교육, 일곱째, 고령자 취업알선 업무 총괄, 여덟째, 퇴직준비 교육 연구 및 지원, 아홉째,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 조직화 및 관리 등을 위임하여 취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자들은 연령과 더불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융통성이 적어지는데다가 장유유서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령자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외면 또는 도외시하고 고령자 측의 필요만을 강조하거나 그 고용을 정책적으로 강요만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취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쇠퇴현상, 재활가능성, 재활훈련 등에 관한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와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과 같은 기초조사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황 변화를 정확히 관찰할 것이 요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연구체제의 횡적 연결 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 3) 노인 취업알선사업의 내실화

#### (1) 읍·면·동 주관 취업알선사업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주관 취업알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집단 간에 원활하게 정보공유와 교육, 수용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력 고용에 있어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노인인력취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노인인력 층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기업 등에 노인인력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하며, 프로그램 교육장에 노인인력의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재교육 및 교육이수의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재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해 나가면 될 것이며,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산업기반이 틀리므로 산업기반이 왕성한 자치단체와 교류하여 노인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읍·면·동사무소와 프로그램교육장에 필요로 하는 노인인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는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교육장에 취업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이렇게 상호간에 활발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속적으로 노인인력의 활용에 있어, 과거와 현재와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 (2) 원스톱 구인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노인취업알선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가. 취업알선센터 간에 전산망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단일부처에 귀속시킴이 정보와 자료의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노인취업 관리상의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의 중복, 비효율을 축소하고 관련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처리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직업교육을 통한 노인인력의 능력향상은 빈곤층 노인의 단기취업, 단순노무 위주의 구빈사업적인 취업알선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취업희망노인에 대한 포괄적, 전문적 상담, 구인처 개발, 사후관리 등의 부진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전문인력의 보강과 전문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라. 알선센터는 노동시장정보를 상시 확보하고, 주변 기업과 협조관계 및 인력수급의 채널을 계속 유지하여 시장의 인력수요와 기업의 구인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노인일자리를 안내하고 알선할 수 있는 전국공통 전화번호를 신설하여 편리하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 (3) 노인취업박람회 활성화

시도별 노인취업박람회 예산이 현재 좀 상향·조정되었다고는 하나, 매우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60세 이상만이 참여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는 기업의 정년에 맞추어서 5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단위 지역의 개최 및 순회, 분산개최가 가능토록하고, 행사대행업체의 공동선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며, 박람회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상설사무국이나 박람회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하여야 한다.

## 4) 전달체계의 제도화

### (1) 노인고용 전달체계의 통합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러 부처가 노인고용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공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대상자도 다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은 고용정책의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이유에서 기인 한 것이다. 노인 고용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심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정보소의 등의 문제, 취업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처간의 통합화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고용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관장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노인고용 전문기관의 설립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 개발, 직업교육훈련 및 일거리 마련, 창업지원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장애인이나 부녀,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취업훈련기관등과 유사한 형태의 노인고용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산업자원부와 기타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의 노인고용기관은 시·군·구에 노인고용기관을 두고, 읍·면·동의 고용알선창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혼재되어 있는 노인고용의 전산망을 통합관리하여 일괄적인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노인고용의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미래사회의 노인 노동력을 확보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 노동경쟁력의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령사회에 노인인력의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구심체역할을 할 통합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V. 고령화 친화기업의 현황 및 우수사례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에 비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부 지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노인 산업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때가 되면서 노인표를 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공약에서는 유독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자 친화기업이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한때의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듬어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구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실버카페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장을 제공하는 등 시장자립형 일자리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까지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 설립하고, 「시니어 직능클럽」은 300인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게겐 낯설기만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려면 신청-지원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응투자란 참여 법인이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 제공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하는 걸 말한다.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개소당 최대 3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예 산경영·판매·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시장 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올리기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시장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게 노인 복지의 경제적 해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관건은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여부다.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15개소, 2013년에 20개소가 선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 기업이 설립

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 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 원선이라고 한다. 2012년 평균 72만 원에 비하면 1만 원이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뒷받침해주는 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91억6천만 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왔다. 3개년 동안의 누적액은 약 172억 원 수준. 매출액의 기조를 보면 2011년 10억9천만 원에서 2012년 69억8천만 원으로 크게 점프했으며, 2013년의 91억 6천만 원으로 약 30% 가량 상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 1. 고령화 친화 기업의 목적 및 배경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고령화 친화 기업이라고 하며,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단순한 급여보존 방식의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에 따라 고령화 친화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 2. 고령자 친화 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령화 친화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관계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다양한 고령화 친화기업이 없고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기반이 모두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노인들은 젊은 계층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득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친화기업을 도전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친화기업이 중소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고령화 친화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며 이에 따라 R&D 투자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화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협소한 데다 부족하여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가 부진한 실정이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 표1 >와 같이 44개 기업을 설립·지정 했으며,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원 선이다.

< 표1 >

구 분	계	기 관 유 형(개소)		비 고
		노인일자리발전형	기업연계형	
전 국	44	7	37	
중부지역	11	6	5	대전충청권
청 주 시	3	-	3	

※노인일자리발전형: 노인일자리 시장진입형 사업을 2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

※기업연계형: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1) 연도별 현황

○ 2011년 : 9개소

지정번호	기업명	사업내용
2011-01	(주)고을	문화재발굴원 인력과건
2011-02	(주)덕용잡스	외식업체 매장(스텝)인력과건
2011-03	(주)딜리셔스플랜	도시락, 반찬(지역아동센터) 급식납품
2011-04	(주)이웃애	카페전문점프랜차이즈
2011-05	(주)6088식품	전통부각 생산판매
2011-06	(주)희망과복지	청소, 경비 인력과건
2011-07	(주)마음터	베이비시터, 가사간병 인력과건
2011-08	(주)보듬이	베이비시터, 가사간병 인력과건
2011-09	(주)시니어맘	베이비시터 인력과건

○ 2012년 : 15개소

지정번호	기업명	사업내용
2012-01	(주)보현	가사도우미, 간병인 인력과건
2012-02	(주)올워드	청소, 경비, 방역 인력과건
2012-03	(주)자인에프앤이	현미스낵 생산판매
2012-04	지수바이오푸드(주)	전통식품(김치류) 생산판매
2012-05	(주)미추홀카페	카페전문점프랜차이즈
2012-06	미스터베이커리에스(주)	제과제빵 생산판매
2012-07	(주)은영수산	간고등어 생산판매
2012-08	(주)천년누리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
2012-09	(주)새참수레	한식전문레스토랑(케이터링)
2012-10	(주)커피플러스	카페전문점프랜차이즈
2012-11	지평선에프앤에프(주)	파일즐 가공판매사업
2012-12	(주)탐리서치코리아	설문조사업체(온, 오프리서치)
2012-13	(주)청초원피앤에프	LED활용 친환경 영농사업
2012-14	(주)에이지상조	애완동물 장례업
2012-15	(주)희망충전	근층생태체험관 사업

○ 2013년 : 20개소

지정번호	설립기업명	사업내용
2013-01	주)실버종합물류	통합물류택배
2013-02	주)자원과사람	폐합성수지 재활용처리사업
2013-03	주)행락	벽면녹화사업
2013-04	주)위산업	간편조리식품가공(고구마)
2013-05	주)사진과사람	액자앨범 제작
2013-06	주)한덩이	친환경소시지 공장
2013-07	주)새하얀크린세탁	삼성전자 세탁공장운영
2013-08	주)봄날비단	실크원단생산 및 칩구류
2013-09	주)뉴욕푸드	도너츠생산공장 설립운영
2013-10	옥송농산(주)	농산물가공, 포장판매
2013-11	주)행복일번지	골판지상자 제작공장
2013-12	주)청정콩나물	아산탕정 콩나물공장 운영
2013-13	주)지엠코퍼레이션	맞춤형 근로자과견업
2013-14	주)추억더하기	문화공간 운영 및 도시락 생산판매
2013-15	주)언약시니어	양봉축산물(벌꿀등)생산유통
2013-16	주)실버&골드	연음식 제조판매
2013-17	주)좋은사람들	공원관리(삼척시)과견사업
2013-18	농업회사법인(주)섬강	파프리카 생산유통
2013-19	주)다원공방	차선제조(다도용품)판매
2013-20	주)실버네트웍스	불용 전산장비 리사이클링

2) 중부지역 고품자 친화기업 현황 ('14. 6. 30 기준)

지정번호	고친기업	대표	사업내용	보조금(천원)	대응투자(천원)	주소
2011-06	(주)희망과복지	이영배	경비·간병인·문화재발굴 과견사업	150,000	30,000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47-3 3층
2011-07	(주)마음터	김희숙	간병인·베이비시터 과견사업	100,000	20,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56 3층
2011-08	(주)보듬이	허운호	간병인·베이비시터 과견사업	100,000	13,000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344-3
2012-01	(주)보현	강숙자	간병인·베이비시터 과견사업	100,000	2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계룡로 47번길 46
2012-04	지수바이오푸드(주)	김갑용	김치 제조판매사업	250,000	150,000	충북 청주시 남이면 양촌리 15-5
2012-06	미스터베이커리애스(주)	이향숙	베이커리류 제조판매사업	260,000	180,000	대전시 동구 우암로 319
2013-02	(주)자원과사람	정장환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	260,000	21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1길 40
2013-05	(주)사진과사람	이상준	앨범·액자 제조사업	200,000	210,000	충북 청주시 남이면 가마리 306-1
2013-06	(주)한덩이	임태철	수제 소시지 제조사업	270,000	46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01
2013-07	(주)새하얀크린세탁	박상규	세탁사업	170,000	50,000	충남 아산시 탕정면 피팔성길 143-33
2013-12	(주)청정콩나물	박상규	콩나물 재배 및 납품	150,000	30,000	충남 아산시 탕정면 피팔성길 143-33



### 3. 우수 고령자 친화 기업의 우수사례

고령 친화 기업의 경우 사회적 고령화 도움기업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이 시점에 고령 친화 기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전 직원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기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성실하게 성장하는 것 만으로도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며 고령화 친화 기업들이 가져오는 매출은 고령자에게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고령자 친화 기업의 우수 사례를 들어 보겠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세는 지표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령자 친화기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캐릭터, 즉 대표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법이다. (주)행락은 2013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행락의 주 분야는 벽면녹화 사업. 과연 어떻게 행락이 고령화 친화기업의 대표로서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삶과 성취감을 제시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본다.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보인다. 문화재발굴원 인력 파견, 전통부각 생산, 베이비시터, 양봉, 삼성전자 세탁공장 운영까지, 언뜻 독특하면서도 고령층에 알맞은 업종으로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주)행락은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고령화 친화기업 리스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뜨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몇몇 고령자 친화기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 행락

고령자 친화기업인 행락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과 건강이 있는 공간,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모 기업인 Eco-wall의 새로운 개념인 Vertical Green Wall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감성적 Design으로 특별하고, 개성 있는 녹색공간과 새로운 콘텐츠로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고령화 친화기업이다.

#### (1) 실내벽면조경인테리어

외부의 자연환경을 유기적으로 실내에 기능성과 디자인성을 고루 갖추어 유입될수 있도록 생태적 장치를 통하여 벽체에 녹화를 실현함으로써 공간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창출한다.

#### (2) 실외벽면조경

실외벽면녹화 도시의 발전에 따라 증가되는 벽면공간에 비하여 녹지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실외벽면 녹화를 실현함으로써 근본적인 환경적, 자원적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도시의 경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다.

### (3) 사무벽면조경

사용자들의 상황과 업무 스타일을 고려하여 분위기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우면서 창조적인 녹화 디자인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싱그러운 자연의 공간을 불러일으켜 이상적인 사무공간을 만든다.

### (4) 미니수반제작

자체 특허 기술인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의 수반제작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식생 수반들을 인테리어적 아이템으로 활용하여 벽면녹화를 실현하기 협소한 공간에 두어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http://haengrak.com>).

## 2) (주) 시니어맘

성남 시니어클럽 베이비시터 사업단에서 출발한 제 2011-10호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화 친화기업이다. 시설보육의 대체적인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개별 가정에게 베이비시터를 파견함으로써 아이돌봄의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 3) (주) 6088식품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인 (주)6088식품은 지역의 노인 50여명을 채용해 전통식품인 부각반제품을 생산, (주)하늘바이오에 납품한다. 연간 12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경남도와 진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 기업은 부각 명인인 오희숙 명장의 기술을 전수받아 제품을 생산한다. 또 부각의 주원료인 고추, 연근, 우엉 등을 인근 지역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받기로 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생산에 적합한 노동력을 확보해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 4) (주) 고을

(1) (주)고을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1년 6월 23일 우리나라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공식 출범 하였다.

(2)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현재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필요한 시기이다.

(3) (주)고을은 문화재발굴사업 등의 인력 공급업을 통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노후의 소득보장과 사회적 역할 부여 등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보

람을 느끼며 일하는 노인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원 공급 사업은 우리의 옛 문화를 노인의 손으로 직접 발굴한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고을은 앞으로도 이처럼 노인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척하여 노인이 일하고 싶을 때까지도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이 고을을 통해 활기차고, 밝은 제 2의 인생을 향해할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할 것을 고을 임직원은 다짐한다.

## VI. 고령자 친화기업의 문제점 및 육성 방안

### 1. 고령자 친화기업의 문제점

#### 1) 한정적 노인 일자리 사업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단순업무의 한정적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자 친화기업의 큰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고령자 친화기업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업운영 경력이 충족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매우 부족하고 한정적이다. 다양한 사업 개발로 이익 창출을 위한 연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2) 자금확보 문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로 고령자 친화기업이 선정될지는 미지수이며, 참여단체가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현금 투자로 하게 되어 있어서 자금 확보도 문제가 있다.

#### 3)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의 어려움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하여는 민법상 법인 조합,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 약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 4) 영세성

우리나라 고령자 친화기업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이 미흡하고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고령화 친화기업이 정부지원 및 주도로 전환하여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기타의 문제점

### (1)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 부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위축,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 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 등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장차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으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최성재외, 2003: 373-376).

### (2)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미흡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고, 고령자고용정책이 청년실업해소 등 일자리창출의 큰 틀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고, 법령상의 정책들도 대부분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추진이 미흡하다.

### (3) 노인인력 활용정책의 정책적 혼란

노인인력활용정책이 정부 부처 간의 혼재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정책적 혼란이 야기되고, 비효율적 예산의 집행 및 투자로 인하여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노인인력활용이 필요하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비중 : 한국 2.0%, 미국 8.7%, 영국11.1%, 스웨덴 18.7%).

## 2.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방안

### 1) 실버산업 발전에 따른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최근 노인복지분야 중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실버산업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실버산업은 노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노후의 어려움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용품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이르면 장수국가인 일본의 경우, 실버산업은 시장규모 320조원, 일본 전체 소비총액의 20%에 달하며, 상품도 다양하여 실버 주택, 레저 관광, 요양원, 건강 기기 등의 노인생활용품, 기능성 건강식품, 금융상품과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틀 등을 구상할 때는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공급 즉 실버산업의 육성과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건강, 경제력, 교육수준 등의 향상으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노인구매계층이 두터워질 것이며, 이들은 과거의 노인과는 상이한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실버산업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실버산업의 육성이 고령자 친화기업을 육성하는 모티브가 될 것이다.

## 2) 고령자 친화 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 아무런 노후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노인이 되었고, 자녀들이나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아무리 고령화 기업이 번창해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등장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질적 증가, 둘째, 연금제도 발전에 따른 노인의 경제력·구매력의 향상, 셋째,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보호기능의 저하·부양인력 감소, 넷째, 민간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노인의 인식변화, 다섯째, 양질화 현상 및 욕구의 다양성 등이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행정지원을 먼저하고 고령화 친화기업의 각종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행정감독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과급시켜 고령자 친화 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 친화 기업 운영자의 신중한 선정, 친화기업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영리추구의 친화기업으로부터 노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 3) 고령자 친화기업지원법의 제정

「고령자친화기업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노인복지와 고령자 친화기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경우, 첫째는,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자 친화기업 및 산업 8대 산업분야로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이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고령자 친화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자산업에서 친화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재택 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며, 고령친화기업이 만든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자 친화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자 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자 친화 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고령자 친화기업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친화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의욕 제고와 소비자에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공서비스를 우선구매, 기술개

발 자금 우선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 친화기업의 제품 등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노인복지 로드맵’과 ‘노인복지법’을 제정해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자 친화기업을 하나의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령사회를 미리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고령자 친화 기업 공모제도 점검

(1) 각 신청기관은 친화기업 신청 전후에 아이템의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분석, 관련기관 협의,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 등 해당 지역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단 중 운영성과가 좋은 사업단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인큐베이팅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 시 노인일자리 사업단 운영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국한되어 있어 자부담금 마련에 부담감이 있는바 부담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5) 고령자 친화기업 창업 유도

(1)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 및 친화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으로 고령자 90%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다양한 친화기업의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

#### 6) 대기업의 관심과 고령화 친화기업 창업

대기업도 자본주의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고령자 친화기업 창업이나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서 건전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 7) 사회적 인식개선

##### (1) 노인 재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과거의 노인에 대한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노인은 생산성이 없으며, 비활동적이고 융통성이 없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수용이 없거나 느리다거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은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계층으로 젊은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지 생물학적인 연령만으로 삶의 기회가 결정되는 연령차별적인 사회가 아닌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 적합 직종의 선정과 채용 장려,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원,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오정”, “오륙도” 심지어 “삼팔선”과도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고령 인력의 채용

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자료를 보면, 일본은 제도 및 시설중심의 고령인력정책을 추구하는 반면에 미국은 고령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 실버채용박람회를 참여하는 노인들을 보면 변화하는 사회를 실감할 수 있다.

### (2) 재고용을 위한 노인자신의 태도개선 노력

고령근로자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연공서열식의 임금구조에 대한 기본틀을 깨고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저하는 임금과 연결되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자신의 건강유지와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노동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취업 시에는 일을 맡으면 책임을 다하여 임하고 일이나 직업의 귀천은 없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지위에 연연하여 동료근로자나 청장년층의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요구된다. 결국 노인들 자신의 의식구조가 변해야만 국가나 사회에서의 고령자재고용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일자리와 자원봉사 연계강화 추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은 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하여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의 유발 책으로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겠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동기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상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자원봉사는 무보수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노인자원봉사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노인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넘치는 노인 가용인력이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케 연구, 개발, 지도, 교육, 배치, 조정, 관리해줄 수 있는 전담기구나 부서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식사비만 받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노인의 자원봉사 일자리사업이 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II. 결 론

경로현장에서 보듯이,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이다.

그럼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급증하는 노인들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주며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교육, 학습활동의 필요성을 노인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찾기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것은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취업적응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사회 변동 흐름을 이해시키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55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그리고 기대 수명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노인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의 발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아름다운 기업문화 창달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선기업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일상, 실버산업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집문당, 2013
- 김근태,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2.
-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 출판부, 2001.
- 김봉수,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와 현안과제, 보건복지포럼, 2010.
- 김태현, 전길양, 한국의 노인 가족부양의 현황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 라이터스 편집부, 국내실버산업의 성장전망, 2006
-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2012
- 박재간, 주거복지시설의 개발전략,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98 - 01, 1998
- 박풍규, 「고령화사회의 노인일자리사업 개선방안연구」, 우암논총,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8
- 박풍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충청노인복지지연구회, 2005.
- 보건복지부, 2006년 상반기 노인일자리사업 실무관계자 교육자료, 2006
- 박홍민,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3
- 보건복지부, 2006년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워크샵, 2006.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실태 조사 및 산업분석, 2011.
- 원용희, 실버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백산출판사, 2002
- 손준규, 박대환, Susumu Sato 발표에 대한 토론, 실버산업개발전략, 1993
- 안예숙, 베이비붐세대의 라이프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스타일에 따른 실버산업 인지도 및 이용의사 분석,
- 이춘봉, 「고령화사회의 노인인력활용 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6.
- 이인수, 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Prospect and issues of the silver industry, 대왕사, 2008
- 조은경,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취업 및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4.
- 진석범, 실버산업과 유료노인복지시설, 학이당, 2014
- 청원군홈페이지 통계연보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2008.
- 최병원, 「노인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5.
- 통계청, 2012 고령자 통계, 20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 통계청,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2013.

한성대학교,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2009.

한쌍암, 「고령화사회에서의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5.

현성외·조추용·윤은경·김양이,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평출판사, 2014

황운란, 「고령 사회 대비에 따른 실버산업의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 2010.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friendly business for the Create Plans of the aged job Work

Pung-Kyu Park

(Ph. 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Cheongju University

Since the 21th century, the aged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and this situation is hardly found in the OECD countries. Ageing brings several social, economic changes and also creates the large portion of senior workers in the future labor market. Therefore, if there are no effort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employment, living security of the aged would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 near future. Compared to other policies, especially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 elderly employment policy tends to be delayed.

According to this study, several reorganizing ways can be suggested to prepare the ageing society and the more activ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There they discover a growing willingness to hire older people, because of the need created by rapid economic growth.

Companies that implement elderly-friendly employment programs will be supported with subsidies and a new scheme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many large firms where in return for extra years of employment, elderly workers receive less payment.

Key word : Aging, aging society, elderly friendly business.

논문투고일 : 2015. 7. 6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

## 주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구 철 회

###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인 통일과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요 정부정책에 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사회의 주요이슈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은 자신이 처해있는 경쟁적인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의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면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청년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요이슈가 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그들은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한 정책을 선택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의 대학생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대학생 청년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대학생의 의식, 통일, 복지정책, 경제상황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 론

청년층의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비판적 시각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커다란 힘의 원천이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바로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온 것이 우리사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치적인 극단적 대립과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적 전망 속에서 성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의 압박감과 어려움이 미래의 희망을 제약하고 스스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를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사회 변화의 커다란 추세인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은 해결되기 어렵다. 고령화는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비가역적 현상이므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부정책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인 통일과 정부정책에 관해 대학생 청년들의 견해를 조사하여, 그들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한 후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부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인 통일과 현재 쟁점화가 되고 있는 주요 정부정책에 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주대생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에서 15일까지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였다. 모든 학생에 설문지를 돌리고 무작위로 회수된 결과지 120명에 대해 횡단면 조사를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방법론적 타당성은 통계분석 서적을 참고하였다 (강병서·김계수 2009).

### 3. 선행연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대학생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치의식적인 측면에서 배한동(2001)은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정치의식, 정부형태 및 정치과정에 대한 의식, 정부의 정책수행능력평가, 통일과 대북 및 안보의식,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 등을 고찰하였다. 박제신(2003)은 1980년대 학번과 2000년대 학번의 정치의식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정치참여의식과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980년대 학번처럼 2000년대 학번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취업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임옥진(2012)은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계열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 삶에서 중요한 것, 아르바이트, 잘하는 일, 진로상담 등이 직업결정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김주섭(2013)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움과 함께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찰하고 있다.

사회의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미정(2011)은 전통적인 공경의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효를 가르치는 것이 인간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영기(2012)는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83%가 정당한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미래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강선아(2013)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분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원만하면 할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또한 높다는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차세대 동력인 대학생의 의식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정책지향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4. 연구한계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우선 지역에 한정된 소수의 표본이기에 수도권 및 다른 지방학생들과는 현실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과는 정치적 성향, 취업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의 발달 등으로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는 요즘에는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요즘의 악화된 경제 상황은 지역적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표본이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라 현실 정책에 관해 평소에 관심을 지니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도 응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Ⅲ.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및 해석

이하에서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을 통일문제, 주요정부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통일문제

아래의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 120명중 80명(66.7%)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8명(31.7%)이었다. 무응답자는 2명(1.7%)이었다. 분단된 국가의 민족으로서 통일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학생들이 통일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을까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1.488 이고 자유도가 2일 때  $p = .475$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다. 즉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1> 통일의 필요성

(단위: 명, %)

	필요하다	필요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80	38	2	120
%	66.7	31.7	1.7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20.

<표 2>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첫째로 꼽은 이유가 안보위협완화(36.1%)이다. 계속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전쟁경험이 없는 젊



은 세대지만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더욱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30.1%). 통일이 된다면 국토의 확장과 새로운 사업들로 인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국방예산을 절약해서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다 (25.3%).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분단되어 산 것 때문에 이질화된 민족의식을 극복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통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8.4%). 통일 한국은 인구 면에서나 군사력 경제력에 있어서 보다 향상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2> 통일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민족의 동질성 회복	안보위협 완화	경제발전	국제적 위상 제고	합계
빈도	21	30	25	7	83
%	25.3	36.1	30.1	8.4	100

출처: 저자 계산, N = 83.

<표 3>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생각하는 이유들이다. 첫째로 국가재정부담(40.5%)이다. 통일로 인해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 둘째는 민족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32.4%). 오래 동안 계속된 분단으로 인해 심화된 민족의 이질성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류를 통해 점차 어느 정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 후 통일을 하면 보다 원활한 민족적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한 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족적 이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는 현 상태에 만족하기에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다(21.6%).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위협한 인식인데 현재 상태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젊은이들은 더욱 회의적으로 될 것이다. 넷째는 무응답이 2명이었다.

**<표 3>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

(단위: 명, %)

	국가재정부담	민족의 이질성 심화	현 상태에 만족	무응답	합계
빈도	15	12	8	2	37
%	40.5	32.4	21.6	5.4	100

출처: 저자 계산, N = 3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의 필요성과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전망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 카이제곱 값이 14.933 이고 자유도가 6일 때  $p = .021$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즉,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예측을 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은 각각 중도가 57.8% (N=67), 진보가 28.4% (N=33), 보수가 13.8% (N=16)이다. 어떤 정치성향이든 10년 이내의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된다는 예상은 가장 적었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각각 69.7%와 43.8%가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중도는 43.3%가 20년쯤 후에는 통일이 되리라 예상하여 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31.2%)은 10-20년 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중도의 다수자보다도 낙관적인 예상을 하였다. 하지만 보수적 성향의 학생들은 통일의 시기에 대해 제각각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정치적 성향과 통일시기 예측과의 상관관계**

(단위: 명, %)

			통일시기				전체
			5-10년	10-20년	20년이후	어려울것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0	5	5	23	33
		정치성향 중 %	0.0%	15.2%	15.2%	69.7%	100.0%
	중도	빈도	3	10	29	25	67
		정치성향 중 %	4.5%	14.9%	43.3%	37.3%	100.0%
	보수	빈도	0	5	4	7	16
		정치성향 중 %	0.0%	31.2%	25.0%	43.8%	100.0%
전체		빈도	3	20	38	55	116
		전체%	2.6%	17.2%	32.8%	47.4%	100.0%

출처: 저자 계산, N = 116.

## 2. 정부정책

정부정책을 청년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어떠한 정책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지를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더욱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의 함양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우리의 대우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표 5>는 청년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 둘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31.960 이고 자유도가 8일 때  $p = .000$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과 정부에 대한 신뢰관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은 각각 중도가 57.8% (N=67), 진보가 28.4% (N=33), 보수가 13.8% (N=16)이었다.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진보와 중도는 각각 48.5%와 46.3%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보와 중도 각각 24.2%와 13.4%가 전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보수는 정부를 약간신뢰하거나 보통인 응답이 각각 25.0%와 56.2%를 차지해 진보나 중도에 비해 정부를 신뢰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사실 보수에서는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없고,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도 12.5%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보수는 보통이거나 약간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치적 성향과 정부신뢰와의 상관관계

(단위: 명, %)

			정부신뢰					전체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거의 신뢰 없음	전혀 신뢰 없음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0	1	8	16	8	33
		정치적 성향 중 %	0.0%	3.0%	24.2%	48.5%	24.2%	100%
	중도	빈도	0	1	26	31	9	67
		정치적 성향 중 %	0.0%	1.5%	38.8%	46.3%	13.4%	100%
	보수	빈도	1	4	9	2	0	16
		정치적 성향 중 %	6.2%	25.0%	56.2%	12.5%	0.0%	100%
전체	빈도	1	6	43	49	17	116	
	전체%	0.9%	5.2%	37.1%	42.2%	14.7%	100%	

<표 6>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부가 우선해야 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5.8%). 다음으로는 경제활성화(22.5%), 보건정책(18.3%), 지역균형발전(5.0%), 노인복지(3.3%), 연금개혁과 외교(1.7%)의 순서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들은 현실의 취업난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보건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가 높는데 이는 최근 중동호흡기질병인 MERS의 확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염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한 점은 아무래도 조사표본이 지방대생인 것이 작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정책인식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연금개혁과 외교 분야는 관심을 적게 받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정부가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명, %)

	연금개혁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노인복지	보건정책	외교	지역 균형발전	합계
빈도	2	27	55	4	22	2	6	118
%	1.7	22.5	45.8	3.3	18.3	1.7	5.0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18.

<표 7>는 우리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도 역시 청년들은 최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일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37.5%). 다음으로는 빈부격차해소(21.4%), 사회정의 실현(14.5%), 권위주의 극복(11.1%), 물질만능주의 극복(10.3%), 인권존중(4.3%)의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들은 역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보다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구성원간의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빈부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부패사건의 현실이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개혁하기 위해 사회정의의 실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권존중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이 항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체로 우리사회는 인권존중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

(단위: 명, %)

	청년 일자리	사회정의	물질만능 주의 극복	빈부격차 해소	인권존중	권위주의 극복	합계
빈도	45	17	12	25	5	13	117
%	37.5	14.5	10.3	21.4	4.3	11.1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17.

<표 8>는 우리사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정당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정당하게 예우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이 실종될 것이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공적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해 정당하게 잘 예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아쉽게도 많은 청년들은 잘못 예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77.5%). 그 다음으로 보통으로 예우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이고 정당하게 잘 예우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2.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이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연대의 공고화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예우하고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8>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단위: 명, %)

	정당한 예우	보통	잘못 예우	합계
빈도	3	24	93	120
%	2.5	20.0	77.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20.

**3. 주요 복지정책**

우리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무상급식,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에 관한 복지정책에 대해 대학생 청년들의 견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복지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의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수급권을 형편이 어려운 국민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와 부모님 봉양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9>는 우리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대학생 청년들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쟁점을 인식한 대학생들의 응답이라고 여겨진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무상급식은 하위 20-30%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47.5%). 그 다음으로는 상위계층을 제외한 하위 70%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25.0%).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대학생들은 비록 무상급식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무상급식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모든계층	하위 70%	하위 50%	하위 20-30%	필요없음	합계
빈도	19	30	10	57	5	120
%	15.0	25.0	8.3	47.5	4.2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20.

<표 10>은 2008년에 도입되어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43.3%의 청년들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하위 20-30%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0%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2%에 그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은 우리사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기초연금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모든계층	하위 70%	하위 50%	하위 20-30%	필요없음	합계
빈도	11	52	18	36	3	120
%	9.2	43.3	15.0	30.0	2.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20.

<표 11>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혼자 살기 어려울 때 누가 봉양해야하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부모님에 대한 봉양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아래의 결과는 아직 우리사회가 온정적이고 효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무려 82.1%의 대학생들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손수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응답은 각각 7.7%와 8.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대학생이 아닌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좀 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대학생의 순수성과 효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아직 개인주의적인 속성에 지배받지 않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 부모봉양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나 자신	다른 형제자매	정부	사회복지기관	부모님 스스로	합계
빈도	96	1	9	10	1	117
%	82.1	0.9	7.7	8.5	0.9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17.

<표 12>는 현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대학생들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의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재정적자의 지속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존에 합의된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합의된 소득대체율 40%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집단들이 참여하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다시 개정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연금고갈시기만 앞당길 뿐이므로 개혁의 의미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면 연금개혁은 노후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대학생이 43.3%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후세대 부담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 연금개혁에 대해 별 반응이 없는 응답이 20.8%, 반대가 2.5%순이다. 대체로 76.6%의 대학생이 연금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이는 아래 <표 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노인이 되는 미래에 연금을 확실하게 수급가능하다는 응답이 17.5%에 불과한 사실에서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12〉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후세대 부담 경감 위해 필요	노후적정소득 보장 위해 필요	보통	필요없다	합계
빈도	40	52	25	3	120
%	33.3	43.3	20.8	2.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20.

〈표 13〉 노령연금수급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수급 가능	수급 불가능	모름	합계
빈도	21	30	69	120
%	17.5	25.0	57.5	100

출처: 저자 계산, N = 120.

## I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견해에 관해 살펴보았다. 통일에 대한 의식과 그 시기에 대한 전망, 정부에 대한 신뢰와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 복지정책 중 이슈화되고 있는 무상급식, 기초연금,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의식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학생들은 66.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1.7%이었다. 이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안보위협완화이고 그 다음이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이었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를 국가재정부담과 민족의 이질성이 심화에서 찾았다. 통일의 필요성과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전망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정치성향이든 10년 이내의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된다는 예상은 가장 적었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각각 69.7%와 43.8%가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중도는 43.3%가 20년쯤 후에는 통일이 되리라 예상하여 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31.2%)은 10-20년 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중도의 다수자보다도 낙관적인 예상을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달



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진보와 중도는 각각 72.7%와 59.7%가 정부를 거의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보수는 정부를 약간 신뢰하거나 보통인 응답이 각각 25.0%와 56.2%를 차지해 진보나 중도에 비해 정부를 신뢰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청년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경제활성화와 보건정책 등을 중시하였다. 우리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최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꼽았고 다음으로 빈부격차해소, 사회정의 실현, 권위주의 극복, 물질만능주의 극복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적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복지정책 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청년들이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하위 20-30%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시행되거나 상위계층을 제외한 하위 70%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기초연금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하위 20-30%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님 봉양과 관련해서는 82.1%의 대학생들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손수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은 아직 개인주의적인 속성에 지배받지 않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이 극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개혁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76.6%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과 후세대 부담경감 등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의 주요이슈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은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이 통일의 필요이유이기도 하고 부정적 요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 정책이 중요하게 선택되었다. 주요이슈가 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선택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의 대학생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의 엄중함을 느끼며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학생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병서·김계수, 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출판사, 서울.
- 강선아, 201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부모 부양의식, 인제대학교 석사 논문, 경상남도.
- 김미정, 2011, 대학생들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전라북도.
- 김주섭, 201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6. No. 4, pp. 31-59.
- 박제신, 2003,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서울.
- 배한동, 2001,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서울·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정치 의식 비교, 집문당, 서울.
- 임옥진, 2012,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 논총*, Vol. 33. No. 2, pp. 19-49.
- 황영기, 2012,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서울.

#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rucial social Issues

Chulhoi K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rucial social issues, such as unification and welfare policy. The outcomes show that college students tend to be affected by the competitive surroundings. With respect to unification of the country, economic situation in which they are positioned could be a positive or negative factor. In terms of enhanc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young college students, it is more important to increase job opportunity and vitalise economic situation. Moreover, with reference to welfare policy, given limited government financial situation, college students tend to take a political and social position based on realistic situation.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unification, welfare policy, economic situation

논문투고일 : 2015. 7. 8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주식회사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제도의 문제와 해결\*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주 기 종

### 국 문 요 약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현행 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종전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는 이사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재산 빼돌리기를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일삼는 탈법적 거래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기업들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상법 제398조의 내용을 대폭 바꾼 것이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사 등의 개시무리를 부과하였으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승인요건으로 추가하였고, 이사회 승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요건도 강화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활발한 투자여건을 만들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임을 공개하고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적 감시 및 사후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대해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까지 확대한 점이나 세계유일의 이사회결의요건 등은 경영현실에서 회사를 위하여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강화된 요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상법 제398조의 전반적인 규정의 내용을 종전의 규정 내용과 비교하여 달라진

\* 이 논문은 2014-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점을 적시하고, 변경된 점들로 인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규정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실무에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완책을 탐색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개시의무, 공정성, 이사회 의사결정권, 이사회 의사결정절차

## I. 서 론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담당자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이사가 그 자격을 떠나서 개인법상의 입장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위험성이 있다.<sup>1)</sup> 그래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여 왔었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현행 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종전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사회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의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이사 등의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요건을 신설하였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sup>2)</sup> 그래서 활발한 투자여건을 만들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종전의 규정으로는 이사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재산 빼돌리기를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하는 탈법적 거래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전 상법 제398조의 내용을 대폭 바꾼 것이다.<sup>3)</sup>

또한 이사회 승인의 결의요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이사의 과반수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던 것을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하였고, 이사회 승인도 사전에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 시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력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하에서는 자기거래라고도 표현할 것임)임을 공개하고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적 감시 및 사후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sup>4)</sup>

1) 홍복기, 개정상법상 자기거래규제의 범위와 이사회결의,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211면.

2) 김병기, 이사의 자기거래와 개정 상법 제398조,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2011.9, 176면.

3)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227면.

그런데 이러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자주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398조를 기업실무에서 적용할 때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상법 제398조의 전반적인 규정의 내용을 종전의 규정 내용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규정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실무에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완책을 탐색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II.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한 규정 내용과 종전규정과 달라진 점

종전의 규정과 대비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문제를 적시하고자 한다.

### 1. 상법 제398조의 규정 내용

#### (1) 종전의 규정의 내용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현행 규정 내용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738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2. 종전규정 대비 현행규정의 내용상 달라진 점

위에서 기술한 종전규정과 현행규정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달라졌다.

### (1)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종전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에만 적용하여 규제하던 것을, 자기거래규제에 해당하는 인적 대상을 크게 늘렸다. 즉, (ㄱ) 이사 또는 주요주주,<sup>5)</sup> (ㄴ) 이사(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ㄷ) 이사(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ㄹ) (ㄱ)(ㄴ)(ㄷ)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ㅁ) (ㄱ)(ㄴ)(ㄷ)의 자가 앞의 (ㄹ)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등으로 확대하였다.<sup>6)</sup>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대상 주체를 이사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로 늘린 것은 회사와의 거래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 (2) 이사 등의 개시의무의 명문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은 이사회에 미리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종전 규정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sup>7)</sup>에서 이사에 요구하고 있던 개시의무를 이사 등에게 명문 규정으로서 개시의무를 부과하였다.

### (3) 이사회의 사전 승인 명문화

종전 규정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사후추인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었다.<sup>8)</sup>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명문으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4)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5)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구승모, 상법 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5호, 법무부, 2011, 115-119면).

6) 이하에서는 (ㄱ)(ㄴ)(ㄷ)(ㄹ)(ㅁ)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 등'이라 표현한다.

7)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91 판결

8)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91 판결



의결정족수를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하였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이사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였다.

#### (5)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요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공정성 요건을 부가하였다. 종전 규정에는 없었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동시에 이사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6) 종전 규정 제2문의 규정 삭제

종전 규정 제2문에 규정하고 있었던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 Ⅲ.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한 규정변경에 따른 주요 문제 검토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제한 규정의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회사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회사자본유지의 이념 실현 및 경영현실의 요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9)</sup>

#### 1. 이사회 의 승인 대상 거래 주체의 확대

현행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범위를 종전의 이사에 한정하던 것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 이사 또는 주요주주,<sup>10)</sup> (㉡) 이사(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사(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의 자가 앞의 (㉣)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사란 상법상의 이사로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포함하고,<sup>11)</sup> 집행임원도 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에 의해 이 규정의

9) 김병기, 앞의 논문, 177면.

10) 주요주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주주를 포함한다(홍복기, 앞의 논문, 214면).

11) 이사에 준하는 퇴임이사(상법 제386조 제1항), 일시이사(상법 제386조 제2항), 법원의 가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 제1항), 청산인(상법 제542조 제2항)이 포함된다(홍복기, 앞의 논문).

적용대상이다. 상법 제398조 제1호의 주요주주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등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뜻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sup>12)</sup> 상법 제39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이사회 승인대상 거래주체의 범위를 넓힌 것은 거래자체가 아닌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 그가 단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확대·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sup>13)</sup>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의 입장에 서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내부자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므로 거래가 불공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성격의 불공정성은 이사만이 아니라 대주주 또는 이사 혹은 대주주와 이해를 같이 하는 특수이해관계인들이 회사와 거래상대방이 되었을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와 이사 등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렇게 구체적으로 승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오히려 실제의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의 적용대상이 축소될 우려도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열거규정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 사법적 판단의 여지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전의 규정에서 ‘제3자의 계산으로’라는 개념에 위의 승인대상들은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sup>15)</sup> 한편 거래주체 중심으로 이사회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그의 거래 자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거래금액이나 성격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어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가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

문, 213면).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이사대우, 이사보 등은 상법사용인 내지 수입인에 불과하므로 실령 사장, 전무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제외된다(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성사, 2012, 732면). 그리고 본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관계로 업무집행지시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1012면).

12) 여기서 주요주주라 할 때 상장회사의 주주에 한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은 상법 제542조의8이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이어서 해석상 상장회사의 주요주주로 보아야 하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요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주요주주의 영향력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로 주주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법인인 주요주주 및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와의 거래도 이사회의 승인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98조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므로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준용규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파악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본다는 의견이 있다(홍복기, 앞의 논문, 215면).

13) 정경영, 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06, 458면.

14) 회사에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모두 자기거래에 포함된다(홍복기, 앞의 논문, 218면). 따라서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이사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도 자기거래에 해당한다(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2012, 410면).

15) 김병기, 앞의 논문, 188면.

있다.

우선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ㄱ) 적용대상 거래상대방에 포함되는 주요주주의 범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은 소유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관계로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비지배 주요주주인 경우도 이에 포함하게 되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 확대가 되었다. 또한 그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그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가족관계 또는 다른 회사 지분 소유관계 등을 밝힐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상회사로서는 그 적용대상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ㄴ) 적용대상 상대방이 확대되었는데도, 적용대상 거래금액이나 성격에 대한 제한, 또는 간편한 이사회 결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규정에 의하면 이해상반의 가능성이 있는 소액의 거래의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특히 내부거래가 많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경우, 실제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sup>16)</sup> 그럼에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회사로서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상법의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거래의 불안정성, 이사의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ㄷ) 일상적인 거래나 금액이 적은 거래로서 제3자와의 거래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자기거래 적용대상 거래라는 이유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게 되면 불필요한 이사회 개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 대상회사에 이익이 될 것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빠른 진행이 필요한 계열사 간 거래인데도,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을 위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이로 인해 각 기업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과 비용의 문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무한경쟁시대를 고려하면 적정한 규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대상회사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 특히 법인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해당거래가 대상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398조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래상대방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은 대상회사에 있어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외 가능하므로 문제

---

16) 전삼현, 회시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정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2011, 56면.

가 크지 않다거나,<sup>17)</sup> 포괄승인의 방법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sup>18)</sup> 그러나 개별 사례별로 판례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법문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sup>19)</sup> 그래서 입법론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사회에서 각 회사별로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상적인 조건이나 영업방법에 따르는 거래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이해상반의 가능성이 없는 계열회사가 아닌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거나, 현재 일부기업들이 실시하는 바와 같이 매년 계열회사와의 거래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해당 금액 내에서는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동종 동형의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포괄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상법 제398조의 입법목적인 회사의 이익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운영간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개시의무의 명문화

중전 상법 제398조 규정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개시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sup>20)</sup>에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개시의무를 인정하여 왔었다. 판례가 이사의 개시의무를 인정한 것은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거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이사회 결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한 결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sup>21)</sup> 현행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 등은 회사와의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여 이사 등의 개시의무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사 등의 개시의무는 승인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승인대상 사실을 알고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또한 이사 등의 개시의무는 이사회 승인의 절차적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17) 법무부, 앞의 책, 239면; 이철송, 앞의 책, 735면.

18) 법무부, 앞의 책, 240면.

19) 전삼현, 앞의 논문, 56면

20)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91판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1) 홍복기, 앞의 논문, 223면

22) 홍복기, 앞의 논문, 223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개시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결의만 얻은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4)</sup>

여기에서 중요사실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는 개시하여야 할 사항을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아직 현행 상법에서는 그 요건인 중요사실에 대한 개념,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개념과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개시의무의 범위에 대해선 이사 등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 및 중요사실에 대해서만 개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sup>25)</sup> 중요사실은 이해관계 없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이사라면 그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을 중요한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있어서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사항인 해당거래의 목적, 상대방, 거래의 내용, 일자, 거래의 기간 및 조건,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 잔액(상법 제542의9, 시행령 제35조 제8항)은 유력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는 주요주주 등은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sup>27)</sup>

### 3. 이사회 승인의 사전승인

종전 규정에는 없던 이사회 승인의 승인시기를 현행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조건으로 이사회 승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전승인을 하게 한 것은 사후승인을 인정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거래를 먼저 한 이후에 이사회에 자기거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압박을 가하여 형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늘어 결국 자기거래규정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sup>28)</sup> 또 추인을 인정하면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고, 또한 추인을 예상하여 회사와의 거래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폐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9)</sup>

그런데 이사회 승인의 사전승인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련된 업무 등이 회사외부관계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등의 경영관행을 고려할 때, 이사회 승인의 사전승인을 이사 등과 회

---

23) 임재연, 앞의 책, 417면.

24) 이철송, 앞의 책, 628면.

25)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이익충돌이 있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거래만이 상법 제398조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임재연, 앞의 책, 413면);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Alann R. Palmiter, *Corporations*, Aspen Publishers, Inc., 2006, p237.

26) 권윤구, 이사 등의 자기거래, *주식회사법대계II*, 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708면.

27) 홍복기, 앞의 논문, 224면.

28) 구승모, 앞의 논문, 115-119면; 임재연, 앞의 책, 416면.

29) 최기원/김동민, *회사법신론*, 박영사, 2014, 838면.

사 간의 거래 성립의 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경영현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규제에 여겨질 수도 있고, 신속한 경영판단이나 자기거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사회 사전결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상법 제398조 적용대상 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sup>30)</sup> 그리고 이사회 승인시기보다는 이사의 자기거래가 공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시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31)</sup> 나아가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상 일부기업에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를 매우 자주 열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후추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은 나누어진다. (㉠) 긍정설은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의 핵심은 이사회 통제를 통한 거래의 공정성 확보, 즉 회사의 이익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이 사전이나, 사후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추인도 유효하다는 것이다.<sup>32)</sup> 또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개시 하였는가 또 그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가 하는 것도 이사회 승인 못지않게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중요하므로 추인을 해도 무방하다고 긍정하기도 한다.<sup>33)</sup> 또한 사후적이라도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상법 하에서도 사후추인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sup>34)</sup> 대법원의 판례는 승인시기와 관련하여 논리적 해석상 사후승인도 인정 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sup>35)</sup>와 사후승인인 추인을 긍정한 판례<sup>36)</sup>가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제정법과 판례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의한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sup>37)</sup> 일본의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허용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시기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후승인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sup>38)</sup> (㉡) 부정설은 사후승인을 인정하게 되면 이사가 미리 사후승인을 예상하고 회사와 무단으로 거래를 한 후에 이를 기정사

30) 전삼현, 앞의 논문, 58면. 결혼과 이혼 등으로 친인척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지분율의 변화 등 갑자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의도하지 않는 법률위반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실무자들의 소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사회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성립 후 당해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거래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거래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31) 김병기, 앞의 논문, 181면-182면.

32) 권기범, 앞의 책, 660-661면.

33) 강희갑, 회사법강의, 책과사람들, 2004, 602면.

34)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2, 473면; 천경훈, 개정상법상 자기거래제한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31호, 2012.8, 80면.

3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685 판결

3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37) James D. Cox & Thomas Lee Hazen, *Corporations*, 2nd ed., Aspen, 2003, pp.215-217; Paul L. Davies, *Gr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Sweet & Maxwell, 2003, pp.437-440.

38) 김병기, 앞의 논문, 181면 참조; 近藤光南, 最新會社法(第2版), 中央經濟社, 2011, 182면.

실화함으로써 다른 이사에게 추인을 강요하는 폐해가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sup>39)</sup>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에 따를 때 사전승인만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승인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sup>40)</sup> 그리고 이사 등의 자기거래제한규정의 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승인 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제도가 경영진의 사익추구라는 일탈행위를 규제하고자 승인요건을 종전의 규정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1조의2 등에서 정한 회사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정들은 경영진의 사익추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에 의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자기거래승인에 대한 승인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sup>41)</sup> 일정한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실무상 불편을 해소하여 현행 상법 제398조의 입법목적과 기업실무운영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상법상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요건의 강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 제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별기업들은 상법 제398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상법에 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으로 정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던 사후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42)</sup>

#### 4. 이사회의 승인 결의요건의 강화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 등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여부의 결정권을 이사회가 갖도록 한 것은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나 안이한 이사회의 승인을 막기가 쉽지 않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98조 규정은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승인결의도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다.<sup>43)</sup> 종전 규정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39) 이철송, 앞의 책, 744면; 임재연, 앞의 책, 416면;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635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2, 973면;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2, 417면.

40) 김은정,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4호, 2011, 57면.

41) 위원회에 위임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는 진흥기, 자기거래 대상과 그 유형의 확대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제22호, 2012, 215면; 천경훈, 앞의 논문, 189면.

42) 법무부, 앞의 책, 233면.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에 거래의 상대방인 당해 이사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 인이기 때문에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91조 제2항, 제368조 제4항). 그러나 당해 이사도 이사회의 소집통지서를 받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는 재임이사로서 이사전원의 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sup>44)</sup>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sup>45)</sup> 그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없거나 또는 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이사회의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중진의 의결정족수보다 현행 상법의 규정에서 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재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으로 강화한 것은 회사 사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법 제199조 규정<sup>46)</sup>과의 비례와 균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비례와 균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7)</sup> 또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강화한 것은 자기거래 적용 상대방이 확대됨으로써 빈번한 이사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무상 이사회 승인결의를 적시에 받기 힘들게 할 것이다. 즉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회사들의 경우 자기거래를 위한 이사회 소집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개의 자기거래를 하나의 이사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각 거래 시기를 늦추거나 이사회 일정에 맞추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sup>48)</sup> 또한 자기거래 승인을 위한 정족수의 강화는 위원회에 위임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실무상 문제가 생긴다. 이론적으로는 상법 제392조의2에 의하여 자기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 결의방법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준용되므로(상법 제393조의2 5항), 위원회의 결의의 정족수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상법 제391조). 그러나 위원회가 자기거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거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에 의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자기거래승인에 대한 승인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49)</sup> 그렇지 아니하면 위원회제도를 활용하여 자기거래의 승인요건

43) 여기의 이사는 재임이사를 뜻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재적이사와 재임이사가 동일하나, 재적이사 중 퇴임이사(상법 제386조 제1항), 일시이사(상법 제386조 제2항), 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 제1항) 등은 재임이사에 포함되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제외되므로,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재임이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임재연, 앞의 책, 418면).

44) 김병기, 앞의 논문, 179면.

45)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

46)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47) 김병기, 앞의 논문, 187면.

48) 전삼현, 앞의 논문, 57면; 진흥기, 앞의 논문, 213면.

49) 위원회에 위임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진흥기, 앞의 논문, 215면; 천경훈, 앞의 논문, 189면.



을 강화한 상법 제398조를 얼마든지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 제398조에서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거래가 자기거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괄승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에 행해지는 동종 동형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종류, 기간, 한도 등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sup>50)</sup> 그리고 빈번한 소액거래 있어서도 제품, 거래수량, 총액 등을 예측하여 사전에 포괄승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대표이사는 사후에 포괄승인에 따른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up>51)</sup>

## 5. 거래의 공정성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물론 거래 절차의 공정성과 거래 내용의 공정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공정성을 요구한 것이다.<sup>52)</sup> 상법이 거래의 사전승인에 추가하여 공정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현실에서 형식적인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한 자기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중요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이사 등은 자기가 행하거나 수권한 거래가 회사 및 주주 전체에 대하여 엄격하게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자기거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sup>53)</sup>

거래절차의 공정성은 거래 체결과정과 승인과정의 공정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래 조건의 설정과정, 상대방의 선정 절차, 거래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여부,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에 의한 독립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회사가 수령하는 용역과 물품에 대한 반대급부 및 가격의 적정성, 회사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러한 거래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거래절차의 절차적 공정성과 거래내용의 실체적 공정성 모두를 이사회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거래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자기거래의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거래조건에 대한 사후의 사법심사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sup>54)</sup> 따라서 이사회에서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여부의 판단을 할 때에는 거래조건의 공정

50) 임재연, 앞의 책, 418면.

51) 홍보기, 앞의 논문, 226면.

52) 홍복기, 앞의 논문, 224면.

53) 홍복기, 앞의 논문, 224면.

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구조, 거래의 협상과정, 거래체결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사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선책으로는 절차적 공정성이 인정된다면 내용적 공정성은 사실상 추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효율적인 경영과 회사의 이익보호라는 양측면의 균형을 이루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또한 실제적 공정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경영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이사의 책임경감 규정 단서에서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 등이 자기거래 위반의 경우 이사의 책임감경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상법에 따라 자기거래규제를 위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승인을 한 이사들 역시 연대책임을 진다(제399조). 그러나 공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 이외에 주요주주 또는 상법 제398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된 자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한 거래가 불공정한 경우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다. 결국 상법 제398조에서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이란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되었을 때에 의미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sup>56)</sup>

## 6. 민법 제124조의 적용배제 내용 삭제

종전 규정 상법 제398조 제2문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12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상법 제398조에서는 종전 규정 제2문에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124조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렇다고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서 민법 제124조의 규정 적용 요건을 갖춘다면 적용해도 된다고 할 수 있는지의문이 생긴다.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법 제398조의 적용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되므로 그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전 상법 제398조 제2문의 규정에 정해졌던 민법 제124조의 불적용 규정을 삭제되었다면 현행 상법 제398조 하에서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54) 임재연, 이사의 자기거래와 공정성 요건, 성균관 법학 제21권 제2호, 2009, 476면; 임재연, 앞의 책, 422면.

55) 이사회 승인과 실질적 공정성을 선택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임재연, 앞의 책, 423면).

56) 이철송, 개정상법주석서, 박영사, 2011, 85면.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승인할 때에 그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승인할 것이므로 민법 제124조의 불적용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민법 제12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전의 상법 제398조 제2문의 규정 즉 민법 제124조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하여 정한 규정이었는데,<sup>57)</sup> 그 취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398조는 민법 제124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주장<sup>58)</sup>에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상법 제398조에서는 종전 상법 제398조 제2문의 규정(민법 제124조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민법 제124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지 민법 제12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즉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종전의 상법 제398조와 현행 상법의 제398조의 규정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폈고,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달라진 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주요한 대안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가) 이사회 승인 대상 거래 주체의 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각 회사별로 이사 등의 자기거래로서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상적인 조건이나 영업방법에 따르는 거래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이해상반의 가능성이 없는 계열회사가 아닌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거나, 매년 계열회사와의 거래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해당 금액 내에서는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동종 동형의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포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나) 개시의무의 명문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개념의 설정이 요구되는데, 개시의무 부담의 범위에 대해선 이사 등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 및 중요사실에 한정한다고 해야 하며, 중요사실은 이해관계 없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이사라면 그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을 중요한 거래 조건을 뜻한다고 본다.

(다) 이사회 승인의 사전승인만의 허용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소책으로서는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에 따를 때 사전승인만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

57) 김병기 앞의 논문, 178면.

58) 임재연, 앞의 책, 413면.

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 소지가 있으므로 승인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1조의2 등에서 정한 회사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정들은 경영진의 사익추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ㄹ) 이사회 승인의 결의요건의 강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행해지는 동종동형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종류, 기간, 한도 등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빈번한 소액거래 있어서도 제품, 거래수량, 총액 등을 예측하여 사전에 포괄승인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ㅁ)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요건 추가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여부의 판단을 할 때에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의 구조·거래의 협상과정·거래체결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포함하여 이사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절차적 공정성이 인정된다면 내용적 공정성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실제적 공정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ㅂ) 종전 규정 제2문의 민법 제124조의 적용배제 내용 규정을 삭제함에 따른 해석은 현행 상법 제398조에서는 종전 상법 제398조 제2문의 규정(민법 제124조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민법 제124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여전히 상법 제398조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지 민법 제12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강희갑, 회사법강의, 책과사람들, 2004.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2.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 이철송, 개정상법주석서, 박영사, 2011.
-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2012.
-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2.
- 최기원/김동민, 신회사법론(제20판), 박영사, 2014.
-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2.
- 구승모, 상법 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5호, 법부부, 2011.
- 권윤구, 이사 등의 자기거래, 주식회사법대계II, 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 김병기, 이사의 자기거래와 개정 상법 제398조,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2011. 9.
- 김은정,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4호, 2011.
- 임재연, 이사의 자기거래와 공정성 요건, 성균관 법학, 제21권 제2호, 2009.
- 전삼현,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정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 25권 제4호, 2011.
- 정경영, 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조세법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6.
- 진흥기, 자기거래 대상과 그 유형의 확대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제22호, 2012.
- 천경훈, 개정상법상 자기거래제한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31호, 2012.8.
- 홍복기, 개정상법상 자기거래규제의 범위와 이사회결의,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 近藤光南, 最新會社法(第2版), 中央經濟社, 2011.
- Alann R. Palmiter, *Corporations*, Aspen Publishers, Inc., 2006.
- James D. Cox & Thomas Lee Hazen, *Corporations*, 2nd ed., Aspen, 2003.
- Paul L. Davies, *Gr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Sweet & Maxwell, 2003.

# The Problems in the Transaction between Directors of Corporation and Company and the Solution

Ju, Gi-Jong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The current provision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Transaction between Director and Company" is a great amendment of the same provision, under the judgment that the previous restriction on the self-dealing of a director has a limited scope to regulate the illegal transaction through "pilfering the company assets", and hence is designed to prevent the companies' pursuit of private interest. Through the amendment, the subject of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transaction between director and company has been expanded, the duty of disclosure has been imposed on the directors, while the fairness in the details of the deal and the procedure has been added as on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approval, and the condition of quorum for the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reinforced. Such measures were taken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the companies to adjust to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by improving the transparency in the business management and creating active investment conditions. Moreover, through a procedural control of the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transaction between directors and company, the characteristic of the transaction is disclosed while prior surveillance as well as subsequent liability claim on self-dealing is facilitated.

However, there are still continued disputes whether this is the optimum choice for the company in the current business management situation, regarding the expansion of control to the interest groups such as the major shareholders, or the world's only uniqu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resolu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as stipulated by Article 398 of the current Commercial Act. Furthermore, this Article may be frequently applied considering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with numerous business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yet there are many issues being pointed out due to the reinforced terms and conditions.

This paper explains the differences between Article 398 of the current Commercial Act to the previous provision, and has attempted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by searching for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newly arising due to the amendment that will revive the purpose of adopting this provision yet can allow this system to operate harmoniously in the actual business environment.

Key words : Transaction between Director and Company, Duty of Disclosure, Fairness, Prior Approval from Board of Directors, Quorum for Board of Directors

논문투고일 : 2015. 7. 11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임야지역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조교수  
홍성언

###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지적의 선진화와 디지털 지적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이용상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불부합하는 것을 바로잡아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선진화된 국가토지행정의 기반을 확립함은 물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방법은 주로 토지부분에 핵심을 두어 추진하고 있을 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좌표 변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세부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임야지역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야지역 국공유지에 관한 기초 현황분석과 지적재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추진 방안으로서 국공유지의 사전 정비 후 경계 재설정 방안, 도해지역 성과결정 방식에 기반 한 토지·임야 경계 일치 방안, 향후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제시하였다.

주제어 : 국공유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세계좌표, 경계, 도해지역

\* 이 논문은 2013-2015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서 론

우리나라는 그간 현실의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4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이용상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불부합하는 것을 바로잡아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선진화된 국가토지행정의 기반을 확립함은 물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집단적인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의 약 15% 정도의 토지 부분 필지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부합지역으로 간주하여 세계좌표 변환 방식을 적용해 세계좌표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좌표 변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세부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 외에 임야지역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지상측량 방식과 위성측량 방식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해상도의 항공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전략이나 경제성 그리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강태석, 2005; 신평우, 2009; 배우재 등, 2014; 한정희 등 2014).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역좌표인 필지경계점의 세계좌표 변환을 위해 좌표변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곽인선·고준환, 2009; 윤한철 등, 2010; 여원찬, 2011). 임야지역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연구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필지의 경계설정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항공사진측량이나 항공라이다 측량 등의 기술들에 대하여 임야지역에서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홍성언 등, 2007; 김정민, 2010; 윤한철 등, 2013). 선행연구의 경우 임야지역에서 항공사진측량이나 항공라이다 측량 기술들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항공사진의 해상도 문제와 토지경계 설정 방식의 제시가 구체화 되지 못해 실제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임야지역 국공유지의 측량방식이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임야지역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논의

### 1. 국공유지 및 지적재조사 개념

#### 1) 국공유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국유라 함은 사유 내지는 민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흔히들 사용되어지며, 국가의 소유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국유지는 나라가 소유하는 토지, 국가가 부담하거나, 기부 받거나, 또는 법령 내지는 조약의 규정으로 국유로 된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간략히 국가 소유의 토지로 정리된다. 한편, 공유라 함은 사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다.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토지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국공유지는 국가 내지는 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일체의 토지재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숙자, 2007; 김준호, 2014).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크게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김진 등, 201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재산의 행정재산에 있어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행정재산에 있어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본 연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세계측 지계 전환 및 지적경계 재확정을 요하는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임야부분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표 1> 국공유재산의 구분 및 내용

구분	내 용		
국유 재산	행정 재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일 반 재 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공유 재산	행정 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 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 반 재 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자료 : 국유재산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김진 등, 2015.

## 2) 지적재조사의 개념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현지상의 토지표시 사항이 부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정리하고 토지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정보를 추가 등록하기 위하여 새로이 실시하는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지역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국한하여 실시하거나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소규모의 지구를 단위로 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에는 필지별로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여 확인한 토지 경계 위치를 기본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 이용 상황,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일필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위치와 경계를 정확히 측정하고 면적을 새로이 확정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조사는 현재와 같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지하시설물 또는 토지의 속성으로서 토양이나 토질에 대해서도 조사 등록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적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토지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현행 토지경계의 오류가 산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오류만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나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의 오류 정리 이외에도 새로운 토지 등록사항을 추가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에도 건축물이나 다른 토지정보를 추가조

사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조사도 넓은 의미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라고 할 수 있다(강태석, 2005; 최한영 등, 2006).

현행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일필지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확장하고 있다. 일필지 조사에 있어서는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로이 작성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역시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이동 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등 기존 2차원적인 등록사항을 3차원으로 대폭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2. 국공유지 지적재조사 추진의 법률적 근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유지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22호)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해 부합여부를 검사해 부합하는 경우는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로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즉, 전체 필지 중에서 집단 불부합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변환에 의해 우선적으로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 집단 불부합지와 개별 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측지계 변환 지역의 사업량은 전체 3,753만 필지 중 집단 불부합지 554만 필지와 지적확정측량 지역 약 498만 필지를 제외한 그 외 2,701만 필지이다.



<그림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국토교통부, 2013)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를 결정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결정에 있어서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지적기준점은  $\pm 0.03m$ , 경계점은  $\pm 0.07m$ 이내 일 때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인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동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이상과 같이 국공유지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해 보았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업추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세계측지계 변환을 함에 있어 부합여부를 검

사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측지계를 변환함에 있어 부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측량 방법이나 성과 검사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내용을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특별법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지상측량 방법과 함께 항공사진측량을 규정하고 있어 국공유지의 경계를 재설정함에 있어 지상측량 방법은 물론 항공사진측량 방법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시 임야지역에 토털스테이션과 같은 지상측량 방법을 적용할 경우 높은 정확도는 확보되나 지형이나 광범위한 면적을 고려할 경우 작업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야지역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 방법으로 좌표변환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항공사진측량방법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 Ⅲ. 임야 국공유지의 현황 및 지적재조사 방법 수립

#### 1. 임야 국공유지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필지의 면적은 2014년 기준 100,283,945,001.3㎡이고 필지 수는 총 38,034,978필 이다. 이중에서 국공유지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는 국유지의 경우 면적이 24,806,598,396.7㎡이고, 필지 수는 5,621,856필이다. 도유지는 면적이 2,727,877,997.3㎡이고, 필지 수는 1,048,526필이다. 군유지는 면적이 5,125,991,648.0㎡이고, 필지 수는 3,549,670필이다. 이를 합산하면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면적이 총 32,660,468,042.0㎡이고, 필지 수는 10,220,052필로 집계된다(국토교통부, 2015).

이 중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국공유지 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 필지 수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임야지역의 경우 총 면적은 64,080,691,335.4㎡이고, 총 필지 수는 4,717,304필이다. 이중 국공유지는 총 면적이 21,435,437,840.6㎡, 필지 수는 651,390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하면 국유지는 총 면적이 16,297,020,855.1㎡, 필지 수는 335,955필을, 공유지 중 도유지는 총 면적이 1,756,530,761.4㎡, 필지 수는 78,449필을, 군유지는 총 면적이 3,381,886,224.1㎡, 필지 수는 236,986필을 차지하고 있다. 임야지역에서 국공유지의 등록 비율은 면적 기준 33%, 필지 수 기준 14%에 해당한다. 사유지의 경우 면적으로는 42,645,253,494.8㎡를, 필지 수로는 4,065,914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민유지와 법인,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에는 창씨명 등, 외국인 등, 종종, 종교단체, 기타단체의 소유로 구분된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특히 임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공유지 임야에 대해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지적 재조사사업의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임야 국공유지 현황

구 분		면적(㎡)	필지 수
총 계		64,080,691,335.4	4,717,304
국유지		16,297,020,855.1	335,955
공유지	도유지	1,756,530,761.4	78,449
	군유지	3,381,886,224.1	236,986
소 계		21,435,437,840.6	651,390
사유지	민유지	31,274,494,615.2	3,496,694
	법인	3,457,796,679.6	249,547
	기타	7912962200	319673
소 계		42,645,253,494.8	4,065,914

주) 기타는 창씨명 등, 외국인 등, 중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소유를 합제한 것임.

임야지역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시도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지 중 임야지역 면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73,944,327.6㎡, 부산광역시가 93,723,662.3㎡, 대구광역시가 58,654,038.5㎡, 인천광역시가 75,349, 342.6㎡, 광주광역시가 28,065,935.4㎡, 대전광역시가 65,083,796.4㎡, 울산광역시가 90,173,866.6㎡, 세종특별자치시가 31,076,403.0㎡, 경기도가 1,496,889,219.0㎡, 강원도가 8,890,655,548.0㎡, 충청북도가 1,802,403,656.0㎡, 충청남도가 576,986,158.2㎡, 전라북도가 1,306,454,636.0㎡, 전라남도가 1,296,048,780.0㎡, 경상북도가 3,854,529,070.0㎡, 경상남도가 1,332,360,093.0㎡, 제주특별자치도가 363,039,30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유지 임야 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가장 많은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수는 서울특별시가 8,610필, 부산광역시가 8,819필, 대구광역시가 5,145필, 인천광역시가 4,265필, 광주광역시가 4,247필, 대전광역시가 3,917필, 울산광역시가 9,832필, 세종특별자치시가 3,327필, 경기도가 92,809필, 강원도가 88,943필, 충청북도가 40,818필, 충청남도가 52,202필, 전라북도가 61,975필, 전라남도가 82,338필, 경상북도가 100,052필, 경상남도가 63,550필, 제주특별자치도가 15,545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임야 필지 수의 경우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2014년 기준 시도별 임야 국공유지의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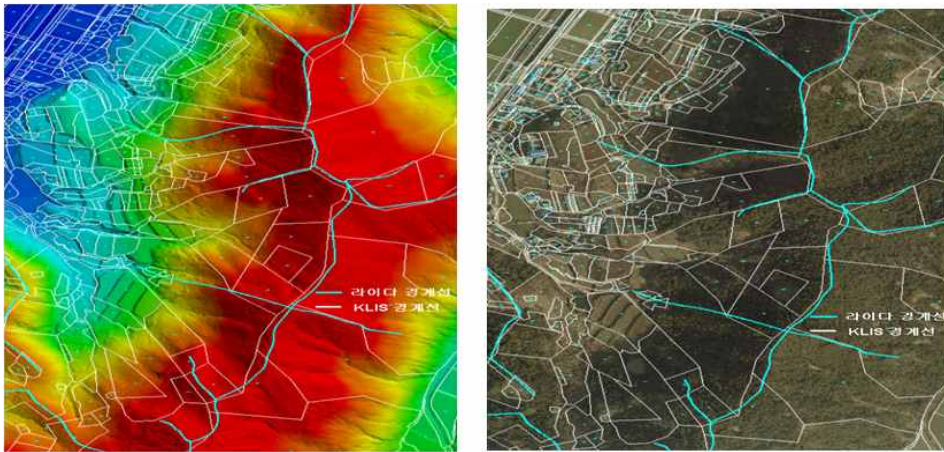
구 분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합 계	16,297,020,855.1	335,955	1,756,530,761.4	78,449	3,381,886,224.1	236,986
서울특별시	60,403,015.8	4,405	12,435,374.5	3,187	1,105,937.3	1,018
부산광역시	65,385,234.1	3,994	14,760,695.6	2,141	13,577,732.6	2,684
대구광역시	25,439,746.0	2,147	21,016,064.0	1,466	12,198,228.5	1,532
인천광역시	54,898,500.3	5,092	5,658,854.6	1,435	14,791,987.7	2,716
광주광역시	16,991,543.2	1,757	10,407,284.4	1,664	667,107.8	844
대전광역시	55,247,025.5	2,631	9,221,170.1	804	615,600.8	482
울산광역시	64,071,567.6	3,855	23,057,304.3	3,298	3,044,994.7	2,679
세종특별자치시	26,345,339.0	2,270	3,305,617.0	535	1,425,447.0	522
경기도	1,036,944,574.9	55,049	334,034,051.7	10,359	125,910,592.7	27,401
강원도	7,885,783,160.9	60,223	311,475,288.5	4,317	693,397,098.3	24,403
충청북도	987,792,922.5	20,147	242,721,670.0	2,883	571,889,063.4	17,788
충청남도	359,623,282.8	25,662	108,162,467.2	6,626	109,200,408.2	19,914
전라북도	988,352,749.2	31,205	124,392,648.8	7,313	193,709,238.1	23,457
전라남도	925,187,086.4	43,207	119,089,122.1	7,179	251,772,571.7	31,952
경상북도	2,650,981,062.8	41,158	166,016,580.8	6,915	1,037,531,426.6	51,979
경상남도	791,266,512.1	30,237	194,622,616.8	6,491	346,470,963.7	26,822
제주특별자치도	302,307,532.0	2,916	56,153,951.0	11,836	4,577,825.0	793

## 2. 임야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방법의 수립

현황 분석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 특성상 임야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이중 상대적으로 국공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임야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 추진함에 있어 많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야지역의 재조사 측량 방법에 있어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제시되었듯이 임야지역은 현행 지상측량 방법과 위성측량 방법 등으로는 지형의 특성상 적용에 한계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선행연구에서도 임야지역의 경우는 항공사진측량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에 기반 해 항공사진 방법으로 임야지역 재조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항공사진측량 기술은 다음의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임야지역의 능선과 계곡선을 항공라이다측량과 연계해서 도화할 수 있지만 현재 등록된 임야 경계가 능선 및 계곡으로만 등록된 것이 아니고 산림으로 인해 현실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필지가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경계설정 및 복원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즉, 계곡 및 능선 등으로 필지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경계선은 이 기술로 경계를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항공사진측량 기술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요구하는 공간위치정확도의 만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방식을 개선해 국공유지 특히 임야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그림 2> 항공사진 및 항공라이다 측량을 이용한 계곡선 경계 추출(최한영, 2009)



<그림 3> 계곡선 외의 경계선 추출이 어려운 지역(홍성언, 2009)

국공유지 특히 임야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5cm급의 고해상도 실감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지적경계를 추출재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이 실제 임야지역 국공유지의 경계 재설정에 확대·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필지경계 설정을 위한 위치정확도 수준의 만족과 실감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필지경계를 추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위치정확도 만족요소의 경우 본 연구의 방법은 5cm급의 고해상도 실감정사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최신 항공사진측량 기술의 도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요구하는 공간위치정확도의 만족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지경계를 추출 문제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선 방법론으로서 고해상도 실감정사영상, 현행 지적도면 전산파일 그리고 도해지역에서의 경계설정 방식 적용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고해상도의 실감정사영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파악된 현황을 이용해 지적도면 전산파일의 사정선, 기존 등록선, 지형경계선 등을 이용해 경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임야지역의 특성상 항공사진 영상만으로 경계설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실무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야지역 성과결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경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고해상도의 실감정사영상을 지적경계 추출해 이용함으로써 그간 임야지역에서의 항공사진측량 기술 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치정확도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지적경계선 추출에 있어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사진이미지로부터 정확한 지적경계선 추출의 한계성의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임야 지역 국공유지 경계 재설정을 위한 확대 적용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IV.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추진 방안

### 1. 국공유지의 사전 정비 후 경계 재설정

국공유지 측량은 대부분 도해 지적측량 방식으로 이루어지 있다. 이로 인하여 도상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할 작업 후에도 별도의 정비 없이 지적공부가 관리됨으로 인하여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필지 간 미세 불부합 오류 등으로 인한 필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미세폴리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공유 토지의 소유기관 역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게 소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유지 임야 부분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경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 부분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선행된 이후 경계 재설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국공유지의 경우 사유지와는 달리 해당 필지를 소유한 소유기관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조건을 이용해 정비한다면 필지 수가 상당량 감소할 것이다. 즉, 무수히 많은 필지에 대해 합병 조건에 부합하는 필지들을 사전 정비 작업을 거쳐 최대한 필지 수를 줄인 후 경계 재설정 작업이 시행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조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0조와 동법 시행령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80조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합병 규정 근거해 합병이 가능한 필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시행한다면 필지 수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으므로 재조사 측량의 기간과 경계 재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도해 성과결정 방식 기반의 토지·임야 경계 일치

임야지역은 농경지 및 시가지와는 달리 정확한 기준점을 이용한 성과결정 보다는 주변 현황에 기초한 현형법으로 성과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임야(도해)지역에서의 성과결정 방식을 최대한 이용해 경계 재설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형법에 의한 도해지역에서의 성과결정 방식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10).

현형법에 의한 성과결정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정선에 의한 성과결정, 기존 등록선에 의한 성과결정, 지형·지물 등 현황에 의한 성과결정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사정선에 의한 성과결정은 기준점이 없을 경우 임의점에 기계를 거치하고 현황을 취득한 후 지적도와 중첩하여 현황선과 지적선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 사정선에 의한 성과결정은 주변에 사정선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사정선에 의한 성과결정은 토지이동이 없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성과결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정선이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기준점이 없을 경우 사정선에 의해서도 성과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정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존 분할 측량 등으로 기 등록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성과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사정선과 기존 등록선을 함께 참고하여서 성과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선행 측량등록된 경계선을 이용함으로써 선행 측량사와 성과의 일률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 등록 경계선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다음 성과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형·지물 등 현황에 의한 성과결정은 대상지역 주변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담장, 옹벽, 가로망 등이 성과결정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농촌지역은 전, 담의 독 등이 성과결정 기준으로 이용된다. 이 방법은 세부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점이 없는 경우 임의의 측점에서 비교적 변형되지 않은 토지경계선을 방사법으로 측정하여 지적도와 현형을 중첩시켜 성과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성과결정을 위해 전, 담의 독, 계곡, 능선 등을 경계설정원칙에 의해 등록된 선으로 인정하여 측정을 함으로써 성과를 결정한다.

임야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함에 있어 현행 도해지역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이 반드시 참고되어야 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측량 규정(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지역 관련 경계설정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지역의 경계설정 기준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의 경계설정 기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계설정 기준을 확장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임야지역과 관련한 추가적인 경계설정 기준을 참고해야 경계설정에 있어 지적재조사사업과 통일성을 확보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실감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임야지역 국공유지에 대해 지적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지와 임야가 접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임야지역의 경우, 현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측량함에 있어서 “당해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적도의 축척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그 성과에 따라 결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시 임야도의 축척으로 전환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강학상으로는 이른바 축척중대의 원칙(縮尺縱大의 原則)이라고 하며, 특히 임야도의 토지와 지적도의 토지가 인접된 지역에서는 대축척으로 등록된 지적도의 토지경계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이 선행(1918년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1916년부터 임야조사사업이 후행(1924년 완료)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인접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지적도상의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임야도의 토지를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측량의 기준은 근대지적이 창설된 이후 약 100년 이상이 경과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준수되고 있는 실무상의 규약이라는 것이 학설상의 통설이다. 따라서 임야지역의 경계 재설정 작업을 함에 있어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그간 임야지역의 성과결정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부분과의 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임야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행 연구 성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박춘수 등, 2013).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의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적공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이 등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임야지역의 경우는 더욱이 그러하다. 따라서 기존 지적공부를 최대한 준용하면서 토지·임야부분의 경계를 부합하여 경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 개략적인 과정은 고정밀 토지·임야 접합도면 작성을 위한 실감정사영상 자료취득 → 지적도·임야도의 접합도면 작성(1차) → 공통점의 선정 및 임야 정위치 → 임야지역 경계재설정 및 좌표변환 수행 → 지적도·임야도의 접합도면 작성(2차) → 면적 및 경계 조정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4> 지적도면 기준의 지적·임야도 접합(박춘수 등, 2013)

### 3.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계획의 수립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전국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대 추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시 되는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연구에서는 사업기간, 총 사업물량, 시범사업 및 시스템 구축 기간, 우선 추진 지역, 항공측량 및 경계 재설정 기간, 합병 조건을 이용한 선행 임야도면의 지적정리 등을 국공유지 확대 추진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유지 정비 및 경계 재설정의 사업기간은 계획시점부터 2030년까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성 있는 추진과 이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총 사업물량은 임야지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로 위성 및 지상측량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임야지역에서는 이 기술의 적용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임야지역은 현실적으로 고해상도 실감정사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임야지역 중 사유지의 경우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소유자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계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임야지역 중 정비가 용이한 국공유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한다. 물론 국공유지 내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지가 있고, 소유자의 동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유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 및 시스템 구축 기간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2년 정도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사업추진 방식은 지적재조사와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별 추진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시도별 임야지역 국공유지의 면적이나 필지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적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실감정사영상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 전 공정과 경계설정 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연간 항측 가능일 수, 대상지역 면적 및 촬영 소요 시간, 경계설정기간 그리고 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촬영사진확인, DEM제작 등의 항공사진촬영 후속공정시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국공유지 확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 요소에 대해 기준을 설정한 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제시하고자 한다. 확대 추진 단계는 크게 기반조성 단계, 시범사업 단계, 전국 확산 단계로 구분하였다. 기반조성 단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임야지역 경계 재설정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적 보완사항 정비, 파일럿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구축, 필요 예산의 추산 및 수급계획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시범사업 단계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2개 지역 임야지역 선정·시범사업, 지적정리 추진 방법론 정립, 법률·제도·기술적 문제점 도출 및 보완 등으로 설정하였다. 전국 확산 단계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필지 및 면적 기준의 전국 시도별 국공유지(임야) 정비 계획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임야지역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의로서 국공유지의 개념, 지적재조사의 개념, 국공유지 지적재조사 추진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모색하였다. 법률적 근거부분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사전 검토하였다.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임야 국공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재조사 추진 방법을 수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임야 국공유지는 2014년 기준 면적이 64,080,691,335.4㎡이고, 총 필지 수는 4,717,304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국공유지는 총 면적이 21,435,437,840.6㎡, 필지 수는 651,390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임야의 점유 비율은 면적 기준 33%, 필지 수 기준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방법의 수립은 임야지역은 현행 지상측량 방법과 위성측량 방법 등으로는 지형의 특성상 적용에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실감정사영상을 지적경계 추출해 이용함으로써 그간 임야지역에서의 항공사진측량 기술 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치정확도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경계선 추출에 있어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사진 이미지로부터 정확한 지적경계선 추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추진 방안으로서 국공유지의 사전 정비 후 경계 재설정, 도해 성과결정 방식 기반의 토지임야 경계 일치,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국공유지의 사전 정비 후 경계 재설정은 국공유지 임야 부분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경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비작업 이후 경계 재설정 작업 진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법으로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조건을 이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해 성과결정 방식 기반의 토지임야 경계 일치 방안에서는 임야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함에 있어 현행 도해지역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이 반드시 참고 되어야 하고,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지역 관련 경계설정 기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그간 임야지역의 성과결정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부분과의 일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서 토지를 기반으로 임야필지를 접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계획의 수립부분에서는 확대 추진 단계는 크게 기반조성 단계, 시범사업 단계, 전국 확산 단계로 구분하였다. 기반조성 단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임야지역 경계 재설정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적 보완사항 정비, 파일럿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구축, 필요 예산의 추산 및 수급계획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시범사업 단계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2개 지역 임야지역 선정·시범사업, 지적정리 추진 방법론 정립, 법률·제도·기술적 문제점 도출 및 보완 등으로 설정하였다. 전국 확산 단계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필지 및 면적 기준의 전국 시도별 국공유지(임야) 정비 계획 수립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임야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토지부분에 비해 많은 면적과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사업을 가정한다면 토지 부분에 국한되어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임야지역도 함께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강태석. (2005).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한국지적학회지, 21(2), 1-20.
- 곽인선, 고준환. (2009). 필지경계를 세계측지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5(2), 283-300.
- 국토교통부. (2013).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2015). 지적통계연보.
- 김정민. (2010).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김준호. (2014). 지적정리를 통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김진, 정영진, 김준호, 이현준, 홍성언. (2015). 국공유지 필지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6(1), 136-145.
-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10). 지적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연구.
- 박종현, 김종문, 최윤수, 김재명. (2014). 임야도 지역의 필지경계점 좌표 등록기준 및 절차 정립. 한국지적학회지, 30(3), 21-34.
- 박춘수, 홍성언. (2013). 지적선진화사업을 위한 임야지역의 효율적 등록 방안. 국토지리학회지, 47(1), 11-21.
- 배우재, 송명경, 이용호. (2014).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0(2), 145-158.
- 신평우. (2009). 지적재조사사업상의 경계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여원찬. (2011).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경계점좌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윤한철, 박민호, 최승영. (2010). 세계좌표계 전환에 따른 지역좌표계의 좌표변환 분석. 대한지적공사, 지적, 40(1), 257-274.
- 윤한철, 박민호, 최승영. (2013). 경제성을 고려한 지적재조사 측량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9(1), 71-89.
- 윤한철. (2011).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제적 측량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숙자. (2007).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 최한영, 홍성언. (2006). 임야지역 지적재조사를 위한 KLIS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14(3), 23-30.
- 최한영. (2009). 지적재조사를 위한 비용분석 및 3차원 측량기법에 관한 연구. 지적세미나논문

집, 대한지적공사.

한정희, 최세휴, 김준현. (2014).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0(2), 65-77.

홍성언, 서철수, 강태석. (2007). 효율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3(2), 13-26.

홍성언. (2009). 임야지역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분석, 국토지리학회지, 43(1), 103-1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지적재조사사업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A Study on Efficient Cadastral Re-survey Method of Public Forest Land

Sung-eon, Hong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a cadastral re-survey project from 2012 for the advancement of land registration and construction of a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system.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not on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advanced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by constructing accurate digital cadastral information through rectifying the non-coincidences between the land use state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s and actual land use state, but also for the stable protection of the land property rights of the public. The method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merely focuses on land parts, and fails to suggest specific detailed methods for other areas, except that a converting global coordinate system method is being applied.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an efficient cadastral re-survey method for public land that occupies a considerable part of forest area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is study provided a basic analysis of current status on the public land in forest areas and suggested a cadastral re-survey method. Based on such, this study established and suggested a re-establishment method of land boundaries after pre-organization of public land, a method of reconciling land and forest land boundaries based on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of the cadastral surveying result in graphical map-based area, and a roadmap for expanding public land in the future, as ways to implement cadastral re-survey of public land in forest areas.

Key Words : Public land, cadastral re-survey project, cadastral record, global coordinate system, land boundary, graphical map based area

논문투고일 : 2015. 7. 13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유머광고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 재 록

### 국 문 요 약

유머는 광고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20년 사이에 유머 및 유머광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과거의 결론을 지지할 뿐이며, 유머를 응용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에서 유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에 따라 주의, 이해, 설득, 원천신뢰성, 호감, 그리고 실행적 요소와 청중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머는 보다 나은 광고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유머의 형태나, 상황, 그리고 청중만큼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유머, 주의, 이해, 설득, 원천 신뢰성, 제품의 본질, 표적청중, 유머형태

### I. 서 론

미국에서 유머광고가 텔레비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특 A급 시간대의 24.4%를 차지한다. 유머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유머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유머의 영향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지만 유머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유머에

\* 이 논문은 2014-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나 연구자들은 광고에서 유머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였다.

유머가 복잡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유머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개념이다. 기대된 목표에 따른 많은 결과에 의해 유머의 형태, 매체, 배치와, 청중, 그리고 유머의 효과에 대한 일반화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광고에서 유머의 효과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약요소를 가지고 살펴보면 유머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적절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유머의 사용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것인가? (2) 어떤 실행적 요소나 메시지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3) 어떤 청중에게 유머가 가장 적절할까? 그래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유머연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앞에서의 질문과 관련된 유머의 효과에 통찰력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 II. 유머연구

유머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Sternthal and Craig(1973)는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에 따라 유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시험적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시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1973년까지의 문헌은 작고 광고에 대한 사전연구가 거의 없는 비광고 분야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Sternthal and Craig의 연구이후 유머는 마케팅 문헌에서 30개가 넘는 연구를 통해 좀 더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의 문헌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논문들은 Sternthal and Craig의 연구를 더 최신의 것으로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였다. 그래서 아래에 제시되는 형태는 유머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응용될 때의 효과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행요소, 배치, 청중, 그리고 제품요소들을 포함함으로써 연구를 보다 확장할 것이다.

### 1. 커뮤니케이션 목표

앞에서도 암시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본질은 유머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있다. Sternthal and Craig(1973)는 광고목표와 각각의 목표에 대한 유머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론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으며 또 다른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 1) 유머와 주의

광고실무가들의 94%가 유머는 주의를 끄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더욱이 임원들

의 55%는 주의를 끄는 데는 비유머 보다 유머가 더 낫다고 믿는다(Madden and Weinberger 1984). 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엄격한 가설검정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견해는 매일매일 쌓아온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주위에 관해서는 실증적인 증거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표준산업광고 검증 상황에서 실제잡지광고(Madden and Weinberger 1982), 텔레비전광고(Stewart and Furse 1986), 그리고 라디오 광고(Weinberger and Campbell 1991)에 대한 연구에서 유머가 주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주의효과는 실험실에서도 증명되었다. 광고영역에서 주의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Speck(1987)은 네 개의 주의 측정치로 비유머광고와 유머광고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각각의 주의 측정치에서 유머광고는 비유머광고에 비해 성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머가 주의를 끄는 능력은 교육학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Powell and Andresen 1985; Zillmann 등 1980). 교육학 문헌을 검토한 후에 Bryant and Zillmann(1989)은 유머가 주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Bryant and Zillmann이 취한 조심스러운 발견은 모든 유머-주의 연구에 적합하다. 결과가 주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과거 20년간의 연구는 Sternthal and Craig(1973)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모든 유머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제품이나 촉진과 연결된 유머는 관련이 없는 유머 보다 더 성공적으로 나타난다(Duncan 1979; Lull 1940; Madden 1982). 사실 관련된 요소를 통제하는 것은 실험연구의 발견점들이 주위에 관한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틀에 짜여진” 유머를 광고에 단순히 넣는 것은 보다 더 통합된 유머를 사용하는 것만큼 주위에 대한 영향이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한다.

## 2) 유머와 이해

유머가 이해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혼잡되어 있다. 1000개의 방송광고에 대한 연구에서 Stewart and Furse(1986)는 유머스러운 내용이 광고의 이해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었다(Duncan, Nelson and Frontczak 1984; Weinberger and Campbell 1991; Zhang and Zinkhan 1991). 그러나 이 연구는 유머와 이해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를 발견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첨예하게 대비가 된다(Cantor and Venus 1980; Gelb and Zinkhan 1986; Lammers et al. 1983; Sutherland and Middleton 1983). 이해에 관한 유머효과의 부정적인 견해는 다수의 실무가들도 공유한다. 요약하면 이해에 관한 유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광고실험 중에서 6개는 유머가 이해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5개는 중립적이거나 혼합된 결과를 보여 주었고, 6개는 유머가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확실히 이해에 대한 유머의 참된 효과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ternthal and Craig(1973)에 의해 가정된 부정적인 효과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결과 이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구분 짓는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세 개의 요소가 나타난다. 첫째, 연구들 간에 이해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부족하다. 사용된 특별한 측정치에 의존한다면 회상은 이해를 나타낼 수 있거나 단순히 주의를 나타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된 측정치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해에 대한 다항목 측정치나 합산한 측정치를 사용한 연구들(Speck 1987; Weinberger and Campbell 1991)은 단일 측정치를 사용한 연구들(Cantor and Venus 1980; Lammers et al. 1983) 보다 이해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나 혼합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좁은 측정치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Murphy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측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Murphy, Cunningham and Wilcox 1979). 그들의 맥락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회상의 다른 측정치는 다른 회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두 번째로, 유머형태는 이해효과에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이해에 관한 다양한 유머형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Speck(1987)은 형태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유머광고는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또 어떤 유머광고는 비유머 광고에 비해 메시지 이해에서 효과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머의 형태에 기인한 것이다. “comic wit”는 비유머의 경우 보다 성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유머 형태(예, 풍자, 완전 코미디, 센티멘탈 유머, 그리고 센티멘탈 코미디)에서는 비유머에 비해 유머광고가 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광고된 제품의 형태가 이해에 관한 유머의 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요소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제품과 허구의 제품, 그리고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 일반적으로 실제 제품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Speck 1987; Stewart and Furs 1986; Weinberger and Campbell 1991; Zhang and Zinkhan 1991). 이에 비해 가상적인 제품을 채택한 연구에서는 이해에 관한 유머의 부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Cantor and Venus 1980; Gelb and Zinkhan 1986). 그러나 두 연구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실제 제품을 사용한 광고실험이다(Lammers et al. 1983). 그러나 이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그 제품이나 제품군에 친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무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 제품은 가상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의 부정적인 발견은 실제 제품-가상의 제품과 퀘를 같이 한다. 실제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 효과를 발견한 연구는 응답자인 학생들이 자주 구매하지 않는 고관여 제품(배낭과 35mm 카메라)을 사용하였다(Sutherland and Middleton 1983). 이러한 사실은 다른 중요한 제품 구분, 즉 고관여-저관여를 지적하고 있다.

광고연구의 모순된 결과가 주어지고 이해의 측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광고 연구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학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해에 관한 광고의 효과를 쓰여진 형태로 조사한다(written test). 이것은



광고가 제시되거나 검증되는 조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유머와 광고 사이의 관계를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광고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 8개의 연구가 이해에 관한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11개의 연구는 효과가 없거나 혼합된 효과를 보고하였다. 비광고 연구의 어떤 것도 이해에 관한 유머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교육학 문헌에서 유머와 이해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아마도 Ziv(1988)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머가 유의적으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Ziv의 실험은 관련 유머가 포함된 기초통계과정과 유머가 없는 과정을 비교하였다. 선생님과 강의자료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학습수준은 객관식 학기말 시험으로 측정되었다. 이 시험에서 유머를 처리한 반의 유머에 관한 평균 점수는 비유머 반 보다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높았다. Ziv는 이 실험을 두 개의 심리학 강의실에서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유사하였다. Ziv가 한 연구는 다른 비광고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예, Chapman and Crompton 1978; Davies and Apter 1980; Gorham and Christophel 1990; Kaplan and Pascoe 1977; Vance 1987; Zillmann et al. 1980). 이들 비광고 연구들은 또한 유머형태가 이해에 관한 유머의 영향에 조정적 작용을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Vance(1987)에 의해 교육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는 광고 분야에서의 Speck(198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들은 모두 유머형태에 대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교육학 문헌에서는 또한 메시지에 대한 유머의 관련성은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관련된 유머를 사용한 연구는 관련이 없는 유머를 사용한 경우 보다 이해를 더 잘 증가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해에 관한 유머의 효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미래 연구자들은 특히 유머의 형태와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고연구자들은 가상의 제품이 아닌 실제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해에 대한 다수의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3) 유머와 설득

Sternthal and Craig(1973)는 유머의 주의산만 효과가 설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머의 설득적 효과는 심각성 소구(serious appeals)의 경우 보다 효과가 더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론은 미국의 광고 임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Madden and Weinberger(1984)는 실무자들의 26% 만이 유머가 있는 문장이 유머가 없는 경우 보다 더 설득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미국의 광고 임원들 대부분이 Sternthal and Craig(1973)의 결론에 동의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침예하게 대비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임원의 62%가 유머가 비유머 보다 설득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임원은 7% 뿐이다(Weinberger and Spotts 1989).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문헌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유머에 대

한 설득적 효과의 증거가 혼합되어 있다. Speck(1987)은 5개의 유머 처치 실험에서 3개가 설득의 2 측정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개는 제품 사용의도와 지각된 제품품질의 변화이다. 마찬가지로 실험연구에서 Brooker(1981)는 유머소구가 공포소구 보다 더 설득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유머소구나 공포소구나 모두 직접적인 접근법 보다는 더 설득적이지 못하였다. Stewart and Furse(1986)는 설득에 관한 유머의 효과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라디오광고 연구에서 Weinberger and Campbell(1991)은 관련이 없는 유머와 유머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설득 측정치가 같거나 더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덧붙여 저관여 제품의 경우 관련이 있는 유머는 유머가 없는 경우 보다 더 설득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덜 설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고 연구에서도 또한 이해와 같이 다른 요소들이 설득에 관한 유머의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Lammers와 그의 동료들(Lammers et al. 1983)은 설득에 관한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지만, 이 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Chattopadhyay and Basu(1989)는 유머의 수정된 긍정적인 설득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사전 긍정적인 상표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이 유머 처치에 대해 더 설득되어 졌으며, 사전에 부정적인 상표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유머의 설득적 효과에서 가장 강한 경우는 Scott, Klein and Bryant(1990)의 연구일 것이다. 그들은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치와는 달리 설득의 행동적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촉진 광고 중 하나를 본 응답자들 보다 유머광고를 본 응답자들이 사회적 이벤트(예, 읍내 소풍)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비즈니스 이벤트(예, 읍내 기업인 회의)에서는 유머 처치에 의한 응답자들이 다른 광고에 노출된 응답자에 비해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Scott, Klein and Bryant의 연구에서 보여준 설득적 효과는 유머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에 비추어 보아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Belch and Belch 1984; Bryant et al. 1984; Duncan and Nelson 1985; Kennedy 1972; Markiewicz 1972, 1974). 전반적으로 광고문헌을 살펴보면 설득에 관한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5개이며, 중립적이거나 혼합된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8개,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1개로 나타났다. 비광고 연구 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경우는 없다. 7개는 중립적이거나 혼합된 효과를 그리고 하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의 모호한 본질의 일정한 부분은 기본적인 요소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 요소는 널리 사용된 메시지의 밀도이다. 밀도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두 개의 연구(Bryant et al. 1981; Markiewicz 1972)에서는 유머 메시지의 설득에 관한 메시지 밀도의 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밀도 요소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머의 밀도이고 다른 것은 주변 메시지의 밀도이다. Bryant 와 그의 동료들(1981)은 유머수준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낮은 유머수준은 유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설득의 수준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비해 높은 밀도의 유머는 설득에 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arkiewicz(1972)는 주변

메시지의 밀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녀는 soft sell 접근법에 낮은 밀도의 유머를 더하는 것은 설득수준을 도와줄 수 있지만, hard sell 접근법에 유머를 더하는 것은 실제로 설득에 해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밀도수준 요소는 유머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설득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요약하면 우리의 합성은 유머는 설득적 이지만 비유머 보다 더 설득적이지는 않다는 Sternthal and Craig(1973)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 유머와 원천신뢰성

원천신뢰성에 관한 유머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혼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최적일 것이다. 원천신뢰성을 조사한 광고연구는 비슷한 규모의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유머조건에서는 원천신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가 세 개, 중립적이거나 혼합된 연구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4개,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세 개다. 비광고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분포를 보였다.

세 개의 혼합된 결과는 원천의 본질이나 유머의 본질과 같은 요소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yant와 그의 동료들은 원천에 관한 유머의 효과가 원천의 성적 차이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학 강의실에서 유머의 효과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유머와 원천의 어떠한 긍정적인 관계도 경미한 것이며 남자 교수들에게만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ryant et al. 1980). Speck(1987)의 연구에서는 사용된 유머의 형태가 원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ck은 원천신뢰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지식”과 “신뢰성”이다. 그는 실험에서 모든 원천이 적절하게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비유머 광고의 원천은 유머 원천 보다 더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원천의 신뢰성은 한 가지 특별한 유머형태를 사용함으로써 향상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두 가지 유머 과정의 조합으로서 Speck이 정의한 “sentimental humor”인 환기-안전(arousal-safety), 부조화-해결(incongruity-resolution)은 공감-걱정-안도의 과정이 일어나며, 다른 유머 처치와 비유머 처치의 경우보다 신뢰성 측정치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광고와 비광고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유머를 사용하여 원천의 신뢰성이 일정하게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들은 유머가 원천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Sternthal and Craig(1973)의 결론에 의문을 던져준다.

#### 5) 유머와 호감

원천신뢰성이 신뢰와 전문성으로 인지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원천-호감은 비인지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Sternthal and Craig(1973)에 의하면 유머는 원천의 호감을 향상시킨다. 그들의 연구 이후 광고와 비광고 연구에서 이 결론을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선생님 효과의 연구에 따르면 유머를 섞어서 수업을 한 선생님은 특징

척도에서 유의적으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Gruner 1967), 평균보다 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yant et al. 1980). 유머는 선생님 효과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용한 유머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yant and Zillmann 1989). 유머는 또한 교과서나 교육 텔레비전과 같은 교육재료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yant et al. 1980; Zillmann et al. 1980).

마케팅문헌에서도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호감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의 호감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Belch and Belch 1984; Gelb and Pickett 1983; Duncan and Nelson 1985; Speck 1987), 상표의 호감도도 증가시켰다(Gelb and Pickett 1983; Gelb and Zinkhan 1986; Duncan and Nelson 1985). 전반적으로 10개의 광고연구와 7개의 비광고 연구가 호감도에 대한 유머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2개의 광고연구와 3개의 비광고 연구가 중립적이거나 혼합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어느 집단에서든 호감도에 대한 유머의 부정적 효과를 보고한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유머가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강한 호감도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호감도는 광고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Biel and Bridgwater 1990; Haley and Baldinger 1991). Haley and Baldinger(1991)의 포괄적인 연구에서는 셀당 400-500명의 응답자들에게 5개의 쌍을 이룬 광고를 노출시키는 연구를 6번에 걸쳐 수행하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00번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호감도 측정치가 광고의 성공에 가장 강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호감도에 의해 표시했을 때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쌍을 이룬 광고가 87%의 판매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양자택일형 호감도 측정치를 이용하였을 경우 성공 예측율은 93%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광고효과에서 유머의 중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Haley and Baldinger(1991)의 연구와 관련하여 Biel and Bridgwater(1990)는 “광고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광고에 의해 설득되어지는 정도가 광고에 대해 중립적인 사람들 보다 2배 이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비록 Biel and Bridgwater의 연구에서 호감도가 엔터테인먼트 가치에 한정되지 않았고 그러한 요소를 개인적인 관련성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Haley and Baldinger(1991)의 연구에서 발견된 것이 유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2. 실행적 요소

### 1) 유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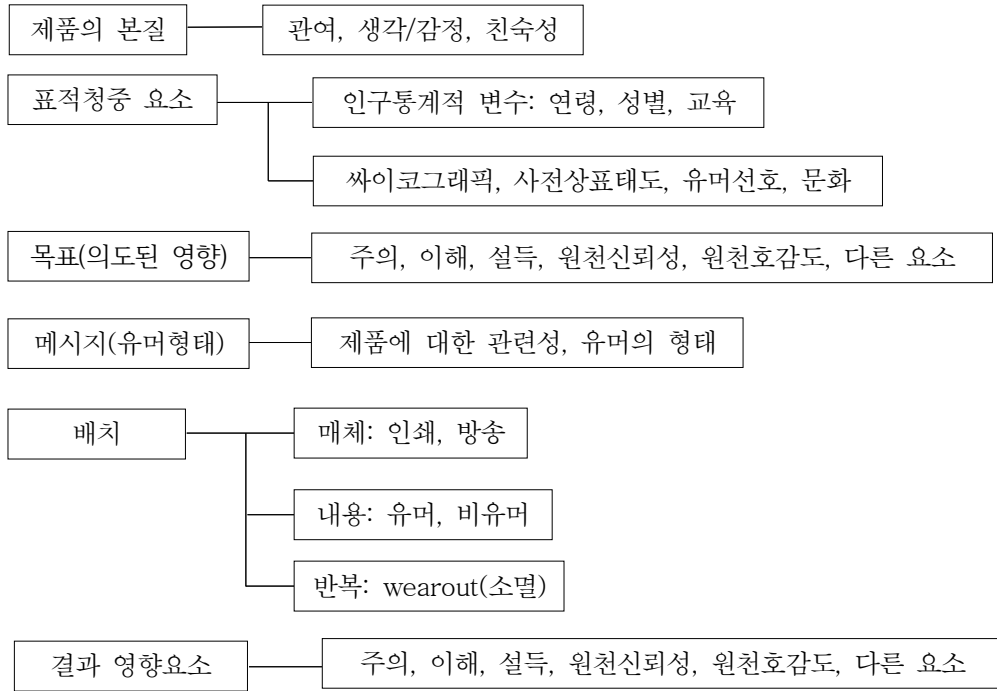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주어진 유머의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머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실행적 요소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실행적 요소는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머와 제품 또는 메시지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경우에 “조크”는 상황에 의존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똑같이 우스운 것일 수 있다. 관련성의 개념에 대

해 정의를 한다면, Speck(1991)은 3 가지 형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의도적-메시지 형태와 메시지 처리과정에 대한 유머의 관계, (2) 어의적-제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유머의 관계, 그리고 (3) 구조적- 유머의 문법적 기능, 유머와 제품의 통합에 관한 것. 관련성이 유머의 효과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지만 유머를 사용한 대부분의 광고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이 있는 유머와 관련이 없는 유머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Kaplan and Pascoe 1977; Madden 1982; Weinberger and Campbell 1991)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머가 관련이 없는 유머 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실행요소는 유머의 형태이다.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유머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머의 연구 개념을 조작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분류가 제안되었다. 유머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내용”과 “기법”이 그것이다. 보통 사용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유머를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공격적(aggresive), 성적(sexual), 또는 난센스(Goldstein and McGhee 1972). 기법 형태 또한 사용되고 있다. Kelly and Solomon(1975)은 유머광고를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 말장난 또는 말재간(a pun), (2) 절제된 표현(an understatement), (3) 조크(a joke), (4)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something ludicrous), (5) 풍자(satire), (6) 아이러니(irony), 또는 (7) humorous intent.

Alden, Hoyer 그리고 Lee(1993)는 광고에 대한 유머의 이해를 위해 다른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이 작업은 유머를 창출하는 기초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실증적 자료뿐만 아니라 문헌연구를 통해 유머러스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불일치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 작업은 불일치의 보급이 비교문화적으로 유지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Alden과 그의 동료들이 4개 국가에서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유머형 TV광고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불일치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유머형 TV광고 69%가 불일치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Alden, Hoyer, and Lee 1993).

<그림 1> 광고에서 유머의 실행적 요소



유머를 구분 짓는 보다 더 폭넓은 방법은 Speck(1991)이 제안한 방법이다. 그는 유머는 별개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안전 환기(arousal-safety), 불일치 해결(incongruity-resolution), 그리고 유머스러운 경멸(humorous disparagement). 이들 과정은 따로 혼자 행동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 형태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HT1) comic wit(불일치-해결), HT2) sentimental humor(안전-환기), HT3) 풍자(불일치 해결과 유머러스한 경멸), HT4) sentimental comedy(안전 환기와 불일치 해결), HT5) 완전한 코미디(안전 환기, 불일치 해결, 그리고 유머러스한 경멸).

실망스럽게도, 유머형태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시도한 Speck(1987) 연구에 의하면 유머의 형태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주의에 따른 유머의 효과를 측정할 때(다섯 가지의 주의 측정치의 평균) Speck(1987)은 완전한 코미디에는 강한 긍정에서부터 감상적인 유머(sentimental humor)에는 본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범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세 가지 형태의 유머과정을 가진 완전한 코미디를 기대할 것이라는 것에 소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유머가 그것이 없는 경우 보다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직관적으로, Speck이 원천에 대한 호감을 분석한 것에서도 이러한 소구결과가 발견되었다.

Speck의 보고에서 발견된 것은 유머형태 연구의 출발이 되고 있다. 발견된 것들은 보편적

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 유머형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Speck(1987)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머형태에서 다섯 개의 광고만 분석했을 뿐이다. 유머형태에 관한 연구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시험적인 것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 표 1 >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관한 유머형태의 차별적 효과

	코믹 위트	감상적인 유머	풍자	감상적인 코미디	완전 코미디	유머 없음
전반적 주의	.06	.02	.07	.06	.27	-.45
메시지 이해	-.15	-	.23	-.01	-.11	-.11
기술적 이해	-.18	-	.21	-.13	.13	-.04
지각된 원천 신뢰	-.1	.00	-.26	.27	-.10	.11
지각된 원천 지식	-.09	-.21	-.05	.23	-.21	.16
원천 호감	-.01	.31	-.23	.23	.15	-.19

\* 5개의 주의 측정치를 합제한 것임.

## 2) 배치(placement)

매체의 형태, 광고가 나타나는 맥락, 유머광고의 반복정도가 지난 20년간 연구되어온 모든 주제들이다. Madden and Weinberger(1984)에 의하면 미국의 광고실무가들은 라디오와 TV가 유머광고를 사용하는데 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비해 인쇄매체는 유머를 사용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미국에서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확신을 심어주었다. 미국에서는 라디오광고의 30.6%가 유머를 사용하였으며(Weinberger and Campbell 1991), TV는 24.4%를 그리고 인쇄매체는 9.9% 만이 유머광고를 사용하였다(Weinberger and Spotts 1992). 이 자료에서 분명한 것은 유머의 사용은 조사된 광고실무가들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유머가 인쇄매체에서보다 방송매체에서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다 미시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서 매체 안에서는 유머광고가 나타나는 내용이 광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로그램 환경과 광고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 밝혀졌다(Goldberger and Gorn 1987; Kamins, Marks, and Skinner 1991; Mathur and Chattopadhyay 1991).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머영역에서 직접 수행된 연구는 강한 맥락 상호작용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Candor and Venus 1980; Madden 1982; Markiewicz 1972). Murphy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맥락효과의 증거가 발견되었다(Murphy, Cunningham and Wilcox 1979). 그들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지

만 그것은 몇 개의 측정치에서만 그러했다. 도움을 받지 않은 제품회상에서는 맥락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광고문헌에서 맥락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유머문헌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맥락효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거의 없거나 맥락효과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효과에 대해 함부로 결론적인 말을 할 수는 없다.

< 표 2 > 광고의 배치

저자와 날자	연구주제의 형태	매체	발견점	코멘트
매체				
Madden & Weinberger(1984)	140명 미국 광고경영자 조사	없음	긍정적	방송이 최적, 인쇄는 최저
Weinberger & Campbell(1991)	광고 사전조사	라디오	-	유머는 라디오에서 많이 사용
Weinberger & Spotts(1992)	내용분석, 미국과 영국	TV, 잡지	-	유머는 TV에서 많이 사용, 잡지에서 적게
내용				
Murphy, Cunningham & Wilcox(1979)	실험실 실험, 115명 학부생	TV	비유머맥락에서 유머광고 회상, 비보조제품 모든 맥락에서 똑같이 회상	
Canton & Venus (1980)	실험실 실험, 117명 학부생	라디오	유의적인 맥락효과 없음	
Madden (1982)	실험실 실험, 326명 학부생	라디오	유머맥락효과 없음	
Kamins, Marks, & Skinner(1991)	실험실 실험, 124명 학부생	TV	“행복한”광고가 행복한 맥락에서 더 효과 있음.	행복한 광고는 반드시 유머 광고는 아님, 연구결과는 건강식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
반복				
Belch and Belch(1984)	실험실 실험, 184명 학부생	TV	유머와 비유머 광고 사이에 소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Gelb & Zinkhan (1985)	실험실 실험, 성인 120명	라디오	노출빈도가 많아질수록 광고에서 유머의 비율이 줄어듦.	
Zinkhan & Gelb (1990)	개념적 논문	없음		좋아하는 유머의 기대감으로 소멸이 지연됨.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유머광고를 얼마나 자주 반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반복 노출을 할 경우 유머광고는 비유머 광고 보다 더 빨리 소멸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elb and Zinkhan 1985). 유머에서 종종 등장하는 놀라움 요소는 첫 번째 노출 후에 약화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소구(intuitive appeal)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Belch and Belch 1984)은 유머광고가 비유머광고와 똑같은 비율로 쇠퇴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Zinkhan and Gelb(1990)는 “모든 유머광고가 반복에 따라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어떤 사람은 제시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유머반응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유머가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머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머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때 더 즐거운 것으로 지각된다. 이러한 발견점은 Zhang and Zinkhan(1991)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머광고의 wear-out 효과를 지연시킬 수 있게 한다.

### 3. 청중 요소

다수의 실무자들은 유머광고가 더 교육을 받은 젊은 남자로 구성된 표적청중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믿고 있다(Madden and Weinberger 1984). 광고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념을 지지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성과 유머효과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으며(Gorham and Christophel 1990; Lammers et al. 1983; Madden and Weinberger 1982; Stewart-Hunter 1985; Whipple and Courtney 1980, 1981), 민족과 유머효과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있음을 지적한다(Madden and Weinberger 1982) (<표 3> 참조).

성의 효과는 유머의 차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헌을 살펴보면, Whipple and Courtney (1981)는 남자는 여자 보다 공격적이고 성적인 유머를 더 좋아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터무니없는 유머에 더 감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가 결론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으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이러한 성향도 변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유머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관점은 중요한 조절자가 될 수 있다.

마케팅에서의 상당한 연구 성과와는 달리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머반응에 대한 성의 효과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되었던 포괄적인 교육실험(Ziv 1988)과 다른 실험(Davies and Apter 1980; Weaver, Zillmann and Bryant 1988; Zillmann et al. 1980)에서 학습에 관한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는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머에 관한 성의 효과에 대한 양분된 결과는 몇 가지 흥미 있는 이슈를 던져준다. 유머는 문화, 경험, 그리고 유머의 생산자와 수신자 사이에 공유된 준거점으로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유머에 대한 성의 반응은 유머의 생산자가 여성일 때는 역전된다(Gallivan 1991). 그리고 조크의 표적의 특징은 청중이 조크를 즐겁다고 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uner 1991).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에 기초한 많은 변화들 인종과 연령은 유머 조크의 생산자와 수신자 확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유머광고의 생산자와 광고표적 사이의 “공유된 관점”은 유머효과에 중요한 매개변수가 된다. 이 문제는 연구자들에 의해 간과되어 왔다.

성, 인종, 연령과 더불어 다른 청중요소도 유머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국경을 넘었을 때 유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유머는 모든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 사람에 의해 표현된 가장 보편된 인간적인 과정이다(Alden, Hoyer and Lee 1993). 그러나 비교 문화적으로 광고에서 유머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나라에 따라 유머의 형태와 유머의 절대적인 수준에서 유머의 사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예, Alden, Hoyer and Lee 1993; Weinberger and Spotts 1989). 더욱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유머에 다르게 반응하는 실증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 표 3 > 청중 요소

광고연구 : 저자와 날짜	연구와 주제 형태	매체	발견점	코멘트
Shama & Coughlin(1979)	실험실 실험, 403명 학부생	라디오와 TV	성의 효과 없음. 인종효과 발견	백인들에게 유머가 더 효과적
Whipple & Courtney(1980)	실험실 실험, 284명 대학원생과 학부생	인쇄	성의 효과 있음.	남자대학원생은 광고를 여성과 같이 평가한다.
Whipple & Courtney(1981)	문헌연구		성의 효과	
Madden(1982)	실험실 실험, 326명 학부생	라디오	성의 효과 없음	
Madden & Weinberger (1982)	148개의 인쇄광고 대상	인쇄	인종과 성의 차이	백인남성에게 유머가 가장 효과적임.
Lammers, Leibowitz, Seymour & Hennessey	실험실 실험, 64명 학부생	라디오	성의 차이	유머가 남성선호를 증가시키고, 여성선호를 감소시킴.
Sutherland & Middleton(1983)	실험실 실험, 107명 학부생	인쇄	성의 효과 없음	
Madden & Weinberger (1984)	미국광고회사 임원, 조사회사 임원,	없음	연령, 성, 교육의 차이	보다 젊고 교육을 잘 받은 남성에게 생각이 보다 효과적임.
Weinberger & Spotts(1989)	광고회사 임원, 미국과 영국 광고대행사, 182명 학부생	없음	영국경영자들의 견해에서 나이가 적음과 교육에서 차이가 있음.	
Alden, Hoyer & Lee (1993)	내용분석, 비교문화	TV	국가에 따라 부적합을 많이 사용함.	
Zang & Zinkhan(1991)	실험실 실험, 216명 학부생	TV	집단에게 제시되었을 때 유머가 더 효과적임.	
비광고연구				
Smith et al. (1971)	실험실 실험, 215명 학부생	문장 검증	성의 효과 없음	
Chapman and Crompton(1978)	교육실험, 5,6 세의 어린이	슬라이드	남성에게 유머가 더 효과적임	

다른 청중요소도 유머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가 유머에 대한 반응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다. 높은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자유로운 유머 보다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유머를 더 즐거운 것으로 판단하였다(Hehl and Ruch 1990; Ruch and Hehl 1986). 주목할 만한 또는 청중요소로는 사전상표태도와 같은 청중과 제품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Chattopadhyay and Basu(1989)에 의하면 사전에 긍정적인 상표태도를 가진 청중들이 설득과 관련하여 유머가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제품요소

다른 중요한 상황적 요소는 제품의 본질이다. 조사에 참여한 광고경영자들은 비내구재와 같은 저관여 제품은 유머광고로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Madden and Weinberger 1984). 유머의 사용은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다. 1,600개 이상의 라디오 광고를 분석하여 Weinberger and Campbell(1991)은 FCB 제품그리드의 다른 셀 간에 유머를 응용할 때 유의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낮게 사용하는 셀, 고관여-감정 제품(패션 의류, 향수 등)에서는 모든 광고의 10.0%만이 본질적으로 유머였다. 이것은 광고의 39.6%가 유머인 저관여-감정 제품(스낵류, 맥주, 와인 등)과 대비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머의 영향이 FCB 매트릭스의 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Weinberger and Campbell(1991)은 고관여 감정 제품(셀 2)이 사용될 때는 관련된 유머가 관련이 없는 유머나 유머가 없는 경우 보다 회상 정도가 더 높았다. 반대로, 고관여 생각 제품(셀 1)에 대한 유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Bauerly 1990; Scott, Klein and Bryant 1990; Stewart and Furse 1986).

더욱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머광고는 신제품 보다는 기존의 제품에서 더 성공적이었다 (McCollum/Spielman 1982; Stewart and Furse 1986). 이러한 요소는 중요한 방법론적 이슈를 던져준다. 실험연구에서 가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전상표태도를 제거하게 되고, 가상의 제품은 유머효과를 감소시키는 “신제품”이 된다. 이것은 어떤 실험실 연구에서 발견된 유머광고의 약한 효과가 친숙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Ⅲ. 논의와 결론

#### 1. 논의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광고에서 유머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문헌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덧붙여야

한다. 유머연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요소들이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변수들은 주어진 유머광고와 결과 사이의 관계에 매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다양한 효과를 가진 많은 관계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림 1>에 있는 요소들은 광고에서 유머의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에서 기술된 복잡한 관계는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론적 문제로 인해 더 복잡해진다 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 복잡성은 음악이나 따뜻함과 같은 다른 메시지의 특징을 연구할 때 발견된 것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 메시지 요소의 어떤 것을 연구하더라도 모든 방법에서 시험용 광고와 동일한 통제광고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구 되어지는 요소는 통제광고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광고는 개별광고로는 그럴 듯하게 보여야 하며, 시험용 광고와 길이가 같아야 한다, 아울러 결과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떠한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유머의 경우에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유머가 촉진되어진 제품과 관련이 있을 때 가장 성과가 높기 때문이다. 관련된 유머를 제거하기 위하여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적절한 통제요소를 발견하는 문제는 정말 성가신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용기 있는 노력들을 지지한다. 그러나 결론에서 특별한 방법론적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유머 연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 연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논문들은 동등하지 않은 문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치명적인 결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유머문헌을 검토할 때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연구가 혼합될 때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유머처치와 유머형태에 대한 청중의 구성원이 보이는 특별한 반응이 유머연구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뜻함과 같은 다른 메시지 특징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듯이 이들의 결과는 형태 보다는 정도의 문제이다. 이에 비해 유머는 아주 특별하다. 풍자 (satire), 성적 유머, 그리고 다른 형태의 호전적인 유머와 같은 유머형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런 점에서 유머는 다른 많은 접근법 보다 더 위험한 진술이다. 유머연구가 더 복잡한 것은 유머가 따뜻함을 창출할 수 있으며(Aaker, Stayman and Hagerty 1986) 다른 감정적 반응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머에 대한 따뜻함 반응은 그 효과가 복잡적이다. 유머연구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유머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연구의 강점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2. 결론

지금까지 유머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머는 주의를 끈다. 광고와 교육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유머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연구에서는 해로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유머는 그러한 효과가 전혀 없다. 사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머가 이해를 도와주기도 한다. 유머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교육 분야의 연구와 영국의 광고 경영자의 견해에서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셋째, 유머는 설득을 증가시킬 때 비유머 광고에 비해 더 나은 점은 없다. 설득을 증가시킨 몇 가지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 사전태도, 제품의 본질 그리고 진행된 촉진 활동에 의해 뒷받침된 결과이다. 유머와 설득에 관한 영국 광고대행사 경영자들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설득이 목표일 때 유머가 비유머에 비해 유의적인 강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유머는 원천신뢰성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머가 차별적인 효과가 없으며,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유머가 원천의 신뢰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유머는 호감을 증진시킨다. 사실 유머와 호감의 연결 관계는 다른 어떤 요소들의 경우 보다 더 강하다.

여섯째, 관련이 있는 유머는 관련이 없는 유머 보다 더 우수하다. 두 가지 형태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는 관련된 유머에서 차별적인 우위요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한 형태의 관련성이 차별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곱째, 청중요소가 유머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유머에 대한 청중의 선호와 청중의 반응에 변화가 있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흐르는 모래이다. 성, 민족, 연령에 재미있는 것은 집단의 관점과 관련지어서 평가되어야 하며 유머의 표적이 누구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남자들은 성적 유머를 즐기고 여자들은 즐기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것은 여성 청중들이 조롱의 대상으로서 남성을 성적 유머로 쓴 것을 조사할 때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것은 광고에서 향후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본질은 유머처치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많은 형태의 제품에 유머가 사용되지만, 신제품 보다는 기존의 제품에 더 성공적이다. 유머는 또한 저관여 제품이고 감정지향적인 제품에 더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유머는 보다 성공적인 광고를 확신시켜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그러나 유머광고가 성공적일 수는 있다. 유머광고의 효과를 과장되게 하는 많은 유머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머가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또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머의 효과를 정의하는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광고에서 유머사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향후 유머광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이종민, 이동건 (2005), “유머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개인적 상품관여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6권 제1호(봄), 141-162.
- 정진완, 김민정, 이종민 (2012), “정보처리관점에서 살펴본 유머광고효과 연구: 개인적 성격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56 No.6, 222-246.
- Aaker, David A., Douglas M. Stayman and Michael R. Hagerty(1986), “Warmth in Advertising: Measurement, Impact, and Sequence Eff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March) 365-381.
- Alden, Dana L., Wayne D. Hoyer, Chol Lee(1993), “Identifying Global and Culture-Specific Dimensions of Humor in Advertising: A Multinational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 Belch, George E. and Michael A. Belch(1984),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Repetition on Cognitive and Affective Reactions to Humorous and Serious Television Commercial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1, Thomas C. Kinnear, ed.,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4-10.
- Biel, Alexander and Carol A. Bridgwater(1990), “Attributes of Likable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0(June/July) 38-44.
- Brooker, George(1981), “A Comparison of the Persuasive Effects of Mild Humor and Mild Fear Appeals,” *Journal of Advertising*, 10(4) 29-40.
- Bryant, Jennings, Paul W. Comisky, Jon S. Crane and Dolf Zillman(1980),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Teachers’ Use of Humor in the Classroom and Students’ Evaluation of Their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4) 511-519.
- \_\_\_\_\_ and Dolf Zillmann (1989), “Using Humor to Promote Learning in the Classroom,” *Journal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20(1-2), 49-78.
- Cantor, Joanne and Pat Venus(1980), “The Effect of Humor on Recall of a Radio Advertis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24(1), 13-22.
- Chattopadhyay, Amitava and Kunal Basu(1989), “Prior Brand Evaluation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Humor in Advertis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4), 466-476.
- Duncan, Calvin P. (1979), “Humor in Advertising: A Behavior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7(4), 285-3-6.
- \_\_\_\_\_ , James E. Nelson, and Nancy T. Frontczak(1984), “The Effects of Humor on Advertising Comprehension,”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1,

- Thomas C. Kinnear, editor,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432-437.
- \_\_\_\_\_ and James E. Nelson(1985), "Effects of Humor in a Radio Advertising Experiment," *Journal of Advertising*, 14(2), 33-40.
- Gelb, Betsy D. and Charles M. Pickett(1983), "Attitude-Toward-The Ad: Links to Humor and To Adverti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Advertising*, 12(2), 34-42.
- \_\_\_\_\_ and George M. Zinkhan(1985), "The Effects of Repetition on Humor in a Radio Advertising Study," *Journal of Advertising*, 14(4), 13-20.
- \_\_\_\_\_ and \_\_\_\_\_ (1986), "Humor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after Repeated Exposures to a Radio Commercial," *Journal of Advertising*, 15(2), 15-20.
- Goldberg, Marvin E. and Gerald J. Gorn(1987), "Happy and Sad TV Programs: How They Affect Reactions to Commerci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December), 387-403.
- Goldstein, Jeffery and Paul McGhee, eds(1972), *The Psychology of Humor*, New York: Academic Press.
- Gorham, Joan and Diane M. Christophel (1990), "The Relationship of Teachers' Use of Humor in the Classroom to Immediacy and Student Learning," *Communication Education*, 39(January), 46-62.
- Kamins, Michael A., Lawrence J. Marks, and Devorah Skinner(1991), "Television Commercial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Program Induced Mood: Congruency Versus Consistency Effects," *Journal of Advertising*, 20(2), 1-14.
- Kaplan, Robert M. and Gregory C. Pascoe(1977), "Humorous Lectures and Humorous Examples: Some Effects upon Comprehension and Reten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1), 61-65.
- Kelly, J. Patrick and Paul J. Solomon(1975), Humor in Television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4(3), 31-35.
- Lammers, H. Bruce, Laura Liebowitz, George Edward Seymour, and Judith E. Hennessey(1983), "Humor and Cognitive Responses to Advertising Stimuli: A Trace Consolidation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2), 173-185.
- Madden, Thomas J. and Marc G. Weinberger(1982), "The Effects of Humor on Attention in Magazine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11(3), 8-14.
- \_\_\_\_\_ and \_\_\_\_\_ (1984), "Humor in Advertising: A Practitioner View," *Journal of*

- Advertising Research*, 24(4), 23-29.
- Mathur, Mahima and Amita Chattopadhyay(1991), "The Impact of Mood Generated by Television Programs on Responses to Advertising," *Psychology & Marketing*, 8(1), 59-77.
- Murphy, John H., Isabella C. M. Cunningham and Gary Wilcox(1979), "The Impact of Program Environment on Recall of Humorous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8(2), 17-21.
- Nelson, James E.(1987), "Comment on 'Humor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after Repeated Exposures to a Radio Commercial'," *Journal of Advertising*, 16(1), 63-68.
- Powell, J.P. and L. W. Andresen (1985), "Humor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0(1), 79-90.
- Scott, Cliff, David M. Klein and Jennings Bryant(1990), "Consumer Response to Humor in Advertising: A Series of Field Studies Using Behavioral Observ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March), 498-501.
- Speck, Paul Surgi (1987), "On Humor and Humor in Adverti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 Sternthal, Brian and Samuel Craig(1973), "Humor in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37(4), 12-18.
- Stewart, David M. and David H. Furse (1986), *Effective Television Advertising*,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Chicago.
- Sutherland, John C. and Lisa A. Middleton(1983), "The Effect of Humor on Advertising Credibility and Recall of the Advertising Message," In *Proceedings of the 1983 Conventio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dvertising*, D. W. Jugenheimer, editor, Lawrence, KS: William Allen White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Kansas, 17-21.
- Vance, Charles M. (1987),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e of Humor in the Design of Instruction," *Instructional Science*, 16, 79-100.
- Weinberger, Marc G. and Charles S. Gulas (1992), "The Impact of Humor in Advertising: A Review," *Journal of Advertising*, Volume XXI, Number 4, December, 35-59.
- \_\_\_\_\_ and Leland Campbell(1991), "The Use and Impact of Humor in Radio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1(December/January), 44-52.



- \_\_\_\_\_ and Harlan E. Spotts(1989), "Humor in U.S. versus U.K. TV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 Weller, Leonard, Ella Amitsour, and Ruth Pazzi(1976), "Reactions to Absurd Humor by Jews of Eastern and Western Desc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8(April), 159-163.
- Whipple, Thomas W. and Alice E. Courtney(1981), "How Men and Women Judge Humor, Advertising Guidelines for Action and Research," in *Current Issues and Research in Advertising*, J.H. Leigh and C.R. Martin Jr., editors, Ann Arbor, MI: Division of Re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43-56.
- Wu, Bob T.W., Kenneth E. Crocker and Martha Rogers(1989), "Humor and Comparatives in Ads for High and Low Involvement Products," *Journalism Quarterly*, 66(Autumn), 653-661.
- Zang, Yong and George M. Zinkhan(1991), "Humor in Television Advertising,"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8, Rebecca H. Holman and Michael R. Solomon, eds.,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813-818.
- Zillmann, Dolf and Jennings Bryant (1980), "Misattribution Theory of Tendentious Humor,"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6, 146-160.
- \_\_\_\_\_, Brien R. Williams, Jennings Bryant, Kathleen R. Boynton and Michelle A. Wolf (1980), "Acquisition of Information from Educational Televis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ly Paced Humorous Inser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2), 170-180.
- Zinkhan, George M. and Betay D. Gelb(1987), "Humor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Reexamined," *Journal of Advertising*, 16(1), 66-68.
- \_\_\_\_\_ and \_\_\_\_\_ (1990), "Repetition, Social Settings, Perceived Humor and Wearout,"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7, Marvin E. Goldberg, Gerald Gorn and Richard W. Pollay, eds.,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438-441.
- Ziv, Avner(1988), "Teaching and Learning with Humor: Experiment and Repl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1), 5-15.

# The Effect of Humor in Advertising

Jae-Rock Lee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  
Cheongju University

The use of humor has become common practice in advertising. But the effect of humor in advertising has not been worked in depth. In recent twenty years, a great deal of humo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only partially supports earlier conclusions and highlights the need to apply humor with c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ffect of humor in advertising as literature that has been conducted to gain insight. Through the use of humor the factors of communications goals, attention, comprehension, persuasion, source credibility, liking are most likely to be achieved. The executional or message factors, humor type, placement also likely to affect the outcome. Humor is by no means a guarantee of better ads, but its effect can be enhanc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objectives one seeks to achieve as well as the audience, situation, and type of humor.

Key words: humor, attention, comprehension, persuasion, source credibility, nature of product, target audience, humor type.

논문투고일 : 2015. 7. 15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5년 7월호

## 미·비혼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 II\*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미숙

### 국문 요약

이 글의 내용은 2012년 <사회과학연구>에 실린 “미·비혼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의 후속편에 해당된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2,3년 동안 국내외에서 새롭게 출판된 내용을 중심으로 2012년도 논문 내용을 보완, 정교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루어진 내용은 크게 4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혼자살이와 1인가구의 등장과 그 현황, 5가지 고정관념 및 적응방식, 둘째, 혼자살이와 관련된 개념들, 셋째, 혼자살이 집단에 대한 관점들 : 전통적, “화려한 혼자살이” 이미지, R.코넬의 젠더레짐론, 넷째, 혼자살이와 섹슈얼리티 담론들이 그것이다.

결론으로서, 21세기사회 사적영역이 가족이 아니고 “개인화(individualized)”된 혼자살이시대에 즈음하여 삶의 대응방식을 소개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될 혼자살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기훈련self-discipline과 취미생활, DIY와 같은 생활방식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편적 공적부조인 기본수입Basic Income 도입을 제안했으며, 또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장려책등을 언급하였다.

주제어: 혼자살이, 1인가구, 젠더레짐, 섹슈얼리티, 개인화, DIY, 공적부조, 기본수입제, 공동주택

\* 이 논문은 2013-2015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자는 “미·비혼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을 2012년 논문으로 이미 발표한 경험이 있다(사회과학연구 33권 2호:21-38). 당시 논문 내용은 젠더입장에서 무배우여성을 편의상 3개 독신자여성-생애미·비혼여성, 이혼독신여성, 사별독신여성-으로 구분하여 이들 해당 집단의 내부구성, 독신 사유나 계기, 그들의 삶의 양식 등에 관하여 살펴본 바가 있다.

또한 당시 논문은 글의 후반부에 19세기 영미사회 빅토리아 시대의 혼인유형과 혼인관, 그리고 여성독신집단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선, 여성의 삶,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해당 문헌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문헌정리 작업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배우 여성의 삶을 비교·대조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비혼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 제 2탄에 해당된다. 2012년도 논문 집필 당시 미처 접하지 못했던 자료나 문헌을 보완하거나, 최근 2,3년 동안 국내·외에서 새롭게 출판되어 개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교화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1·2차에 걸친 무배우 집단에 대한 고찰은 만혼화, 고이혼율사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급증에 대한 현실처방과 진단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차에 걸친 이러한 미·비혼 집단 및 1인 가구에 대한 고찰은 2000년대 들어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성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의 초반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무배우 상태의 혼자살이 삶의 양식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예외는 아닌 새로운 사회적 현상임에 주목하였다. 혼자살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해당 개인의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생애적 현상으로 전체,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 살 가능성에 대한 토의를 1인 가구 증가현상이라는 제목속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의 후반부에는 무배우 혹은 싱글집단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완·소개하고, 이들 결혼제도 바깥에 위치한 집단에 대한 상반된 시선 또는 관점 등을 다루어 개인화된 사회의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증가일로인 미·비혼 집단의 혼자살이현상에 즈음한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II. 혼자살기와 1인 가구

### 1. 현황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하면 특정 개인이 처한 구체적 모습을 평가할 때에 가

족관계라는 일차적 기준에 의거하여 행복한 삶 또는 그렇지 않은 불행한 삶으로 구분하는 성향이 있다(노명우 2014:126; 우에노치즈코·노부다사요코 2010:183; 야마다 마사히로 2010:143). 그러나 실제에 있어 제도로써 결혼은 더 이상 성인이 되는 관문으로서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 또는 옵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남녀 성별로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보다 여자들에게서 결혼해야 할 이유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과거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가족이나 남편 요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여성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노명우,2014). 예를 들어, 2010년도 결혼의사를 물은 한 사회조사에 의하면(노명우, 2014:128), 응답자의 64.7%가 ‘결혼은 필수’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998년도의 73.5%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이다. 나아가 성별차이는 더욱 뚜렷하여,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현재, 미혼여성의 46.8%만이 결혼에 ‘찬성’한데 반해 미혼남성은 62.6%가 결혼에 ‘찬성’하였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59.1%가 ‘결혼은 필수’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0.5%가 ‘필수’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결혼 할지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을 가족이라는 틀 속에 진입시키는 대신에, 그 동기가 개인감정 또는 낭만적 친밀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엘리자벳 벡이 언급한 바대로, 개인이 사적영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결정권을 지니는 시대인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족이라는 집단이나 주변인을 의식하는 삶 보다는 개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최우선의 소중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가치관의 변동이 있는 이른바 ‘개인화(individualization)’주의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노명우, 2014:69).

이러한 ‘개인화’가치관의 특성은 결혼에 대해 유보적이고(감정적‘스파크’가 생기지 않는 한 결혼을 급하게 선택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혼에 대해 용감해진 가치관(낭만적 친밀성이 소진된 결과 더 이상 ‘스파크’가 튀지 않는다는 점에서)으로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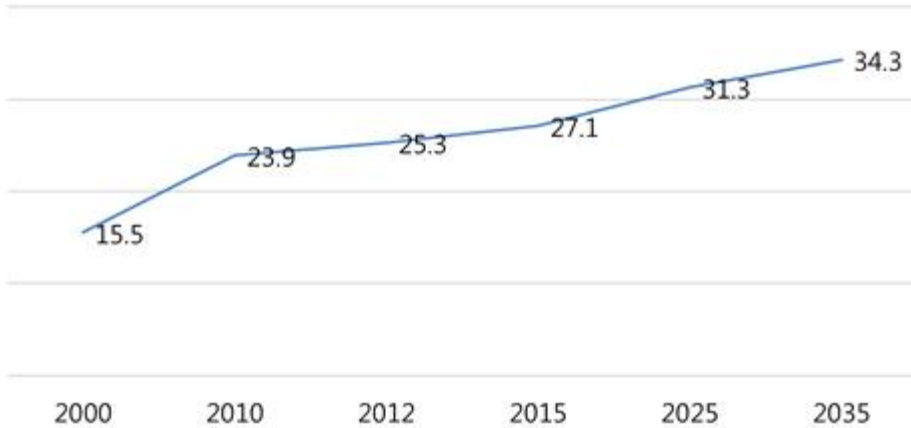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기존의 가족형태는 산업화 이전 ‘확대가족’ 시대를 거쳐 산업사회 ‘핵가족’형태로 이어진 이래 새로운 혼자살이 1인 가구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진단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 표준적 핵가족 구성원 부부 및 미혼자녀가구는 지금부터 20여년 후인 2035년경에는 양적으로 소수의 가족형태로 축소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신 1인가구가 수적으로 대세가 되거나 또는 통계적 정상성normality 자리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혼자살이하는 1인가구는 부지불식간에 양적으로 팽창하여 현재 및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노명우, 2014:43).

이러한 1인가구시대는 <도표1>에서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즉, 2000년도에는

15.5%에 불과하던 1인 가구 비율이 25년 뒤인 2025년에는 두 배인 31.3%로 확대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2025년에는 전체 3개 가구당 한 가구 꼴로 혼자살이 1인가구가 보편화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도표 1> 1인 가구의 변화추세

(단위 : %)



※2012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 통계청

## 2. 다섯 가지 고정관념들

그렇다면, 1인 가구 증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금까지 1인 가구에 대해 파편적이고 자의적으로 알려진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노명우, 2014:44-49).

첫째통념 “1인 가구 증가는 결혼을 늦추는 젊은 세대의 양적증가 때문이다.”

1인 가구 확대의 핵심원인은 평균수명 연장 혹은 인구의 고령화추세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다. 즉, 개인들이 나이를 먹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수록 혼자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1인가구의 확대라는, 인류사 전대미문의 삶의 방식으로서 가장 최소단위에 해당되는 1인가구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단독 1인 가구 경향은 젊은 세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어느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이다. 결혼을 거부했거나 결혼 못한 젊은 미혼세대에 한정된 특수한 세대에 한정된 문화현상은 아닌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통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1인 가구 증가의 주범이다.”

앞서 소개한 바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1인가구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향후 1인 가구

중 미혼가구 구성비는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배우자와 별거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에 놓이게 된다. 즉 1인 가구 증가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풍조로만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가상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미혼집단이 결혼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통념 : “1인가구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실제로 가족이 있음에도 1인가구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배우자 신분이지만,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1인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011년 현재 1인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기혼자의 경우 남성의 17.5%는 이른바 ‘기러기야 뻐’로서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2035년에는 유배우 1인 가구 남성비율은 전체 남성 1인가구의 27.3%를 구성하여, 마·기혼 또는 유·무배우자상태와는 무관하게 성인 남성 3명 가운데 한 명꼴로 1인 가구 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넷째통념 : “결혼을 하면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부부해로를 보장하던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끝없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으로 이어지는 변화무쌍한 가족관계 추세 속에서 결혼은 더 이상 안정적 등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대신, 수시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의 현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같이살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혼은 해당 부부에게 안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단단한 안식처가 아닌 것이다. 결혼은 이혼과 재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유동적 속성을 지닌 제도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결혼했던 사람일지라도 일시적 또는 (매우)장기적으로 혼자살이를 해야 할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통념 :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련되고 능력도 있는 화려한 싱글들이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부분은 오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일부 ‘골드세대’로 지칭되는 고학력·고소득 미혼집단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TV연작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등장하는 4명의 전문직 혼자살이 여성들은 미국 N.Y. 대도시에 부상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고소득 미혼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도시거주자인 동시에 3·40대 미혼집단들로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주도하는 층이자 새로운 소비를 주도하는 트렌드 창안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적으로 다수를 구성하는 1인가구의 대다수는 화려함보다는 사회적으로 약자 층인 한계집단marginal group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혼자살이 하는 1인가구의 수적인 증가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혹은 미기혼상태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현실로서 미래사회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핵)가족으로 진입하지 않은 미혼자, 이혼 또는 사별로 (핵)가족이 해체된 사람, 나아가 (핵)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현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3. 1인 가구(살이)의 적응방식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살이 집단 내부 구성은 크게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부류는 소수이지만, 본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의지나 선택으로 혼자살기로 결정한 “화려한 싱글”집단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안정장치로 편입되지 못하거나 이탈되어 타의로 혼자살이를 하는 집단들이 그것이다. 이들 후자의 경우 타의에 의한 혼자살이를 하기 때문에 생존자체가 위협받거나 박탈적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이한 내부구성과는 무관하게 1인가구살이의 당면한 딜레마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데, 그것은 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해당 개인이 겪어내야 하는 노화현상이다. 이들의 가장 큰 불안은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현실인 것이다. 노화로 인한 질병노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하가 쉽게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견지하는, 이른바 혼자살이 적응방식 혹은 처세술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명우(2014:237)는 개인이 가족환경이나, 집단소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뜻을 실현하고 관찰시킬 수 있는 토대로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Basic Income(모든 사회구성원이 개인단위로 자산정도나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도입이 그것이다. 1인가구가 개인적 삶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을 길잡이 공적부조로서 개인별 기본소득제 도입을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1인가구로서 독립을 이룬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율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홀로살이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서 주변 인물들과 사교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연계될 것을 제안한다(노명우, 2014:271; 우에노치즈코, 2014:173).

나아가 우에노치즈코(2014:172-173)는 여성 및 남성 혼자살이들이 주의해야 할 목록을 <7가지 여자들의 네트워크 금기사항>과 <7가지 남자들의 네트워크 금기사항>으로 구분하여 성별로 달리 소개하고 있다.



<여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지켜야 할 7가지 금계>      <남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지켜야 할 7가지 금계>

- |                           |                                   |
|---------------------------|-----------------------------------|
| 1. 남편직업을 말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 1. 자신과 상대의 전력은 말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
| 2. 자식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 2. 가족이야기는 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
| 3. 자기 학력을 말하지 않는다.        | 3. 자신과 상대의 학력을 말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
| 4. 서로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 4.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             |
| 5.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     | 5. 서로를 '선생님'이나 '직함'으로 부르지 않는다.    |
| 6. 모임을 돈벌이의 장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6. 거만한 태도로 말해서도 안되며 주체담게 나서지 않는다. |
| 7. 상대의 속사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 7. 특기나 노하우는 상대가 요구할 때만 발휘한다.      |

### Ⅲ. 혼자살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2012년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독신을 “형제, 자매가 없는 혹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 또는 ”홀몸” 등의 사전적 의미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독신’을 지칭하는 영어표기들 never-married, unmarried, single(hood), celibacy, bachelor/spinster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주어진 구체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 용례는 다양하게 쓰임을 지적하였다. 종교적이거나 보다 포괄적 의미나 긍(부)정적 뉘앙스를 지닌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다(김미숙, 2012:22).

이에 더하여 보다 최근에는 국내외 학자들이 유사 개념들을 새롭게 제기하여 ‘독신’을 둘러싼 용어 규정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벨라드파오로는 유배우중심사회에서 생애비혼자, 이혼자, 사별자 등 다양한 이유로 무배우상태에 놓여있는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적으로 낙인찍거나 차별하는, 이른바 “21세기형 이름 없는 문제”로서 “싱글리즘singlism” (Bella Depaulo, 2006:2)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즉, 배우자 없는 상태인 싱글집단은 차별의 대상이 되며 또한 부정적으로 취급되어 “비혼unmarried”라는 표식이 따라 다닌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오로지 법률혼만이 사회적 혜택, 보상 또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세대를 비판하는 용어로 이 “싱글리즘”을 채택하였다. 미국 통계청의 결혼상태 분류방식에 의하면 “법률적 싱글”은 “공식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으로서 이혼, 사별 및 생애비혼”으로 구분되고 있다 (Bella Depaulo, 2006:3). 즉, 일반사회의 결혼지상주의에 대한 반발차원에서 이 “싱글리즘”을 소개하여 기존의 결혼우선주의 고정관념에 썩기를 박고자 한다.

또한 일본가족학자 우에노치즈코(2014:132-133)는 “싱글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소개한다. 이 “싱글력”은 혼자살이에 익숙한 성격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까지도 홀몸살이에 적합한 형태를 포괄한다. 혼자 지내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이러한 홀로살기를 즐기는 사람을 지칭한다. “싱글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려서 자연 친화적 환경이나 그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생활한 경험이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이른바 누

구로 부터도 방해 받고 싶지 않은, 혼자만의 시간과 경험을 즐기고 또한 이러한 삶의 형태를 행복한 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컨대, 홀로 생활하지만 외롭지 않은 자기만의 순간과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일컫는다(우에노치즈코, 2014:136).

이에 더하여 노명우(2013)는 혼자살이(상태)를 “단독인”과 “독단인”으로 구분하여 독신 혼자살이에 대한 철학적·사변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타자 또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정립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철학자들<sup>1)</sup>은 주변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탈하여 홀로 단독살이를 감행하였다.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집단의 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리에서 밀려나온 배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한 시선을 담은 은둔자상태에서 벗어나 홀로서기가 가능한 사람을 ‘단독인’으로 지칭한다. 즉, 이들 삶의 모델로서 단독비행 혹은 홀로서기가 된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와 자기관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한 사람이다. “단독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고독한 작업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성찰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단인”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세속적 권력을 과시하고 휘두르는, 타인을 향해 강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이에 반해 “단독인”은 자신을 향해 배려할 줄 아는 권능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독단인”과 구분된다. 이렇듯 “단독인”은 고립된 인물 혹은 의도적으로 고독을 피하되 스스로를 외부세계로부터 닫아 놓는 인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고독을 존재의 한 범주”로 받아들이고 “집단성이야 말로 행복이고, 고독은 그것과 대립되는 것이라는 기존논리”에서 벗어난 사람이기도 하다(노명우, 2013:189).

## IV. 혼자살기에 대한 시선들

### 1. 전통적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이상주의적 사고에 지배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특정인이 태어나서 생애주기상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결정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다. 제도로서 결혼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인식 없이, 나아가 서로에 대한 정보나, 감정교류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만일 결혼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늦어지면 그 당사자는 매우 특이한 별종취급을 받기 일췌였다. 나아가 제

---

1) 데카르트, 뉴턴, 로크,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라이프니치, 쇼펜하우어, 니체, 키에르코고르, 비트겐슈타인 등 유명철학자들은 모두 일생동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지냈다. 이들의 위대함은 결혼에 대한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이들이 누렸던 의도된 외로움, 고독을 경험하면서 집합체로 부터 자신의 독립적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점이다(노명우, 2013:161-164).

도로서 결혼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더욱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싱글이란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적응이 덜 된 미숙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싱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은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사회적 의미에서 스스로 정체성 정립에 거부장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도를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우에노치즈코·노부타사요코, 2010:183). 이러한 목시적 거부장제 논리 아래에서 우리는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한편, 가족 외부에 맴도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습관이 있다. 이를테면,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혼자 사는 노인,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관행적 평가가 그러한 구체적 사례일 것이다.

특별한 종교적·개인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생활에 진입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성인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로 해석되어 왔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은 가장 널리 회자되는 일반적 통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성인이 결혼을 하던 시기라면 결혼과 어른 됨을 동일시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어른이 결혼에 진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어른만이 결혼생활을 한다면, 결혼을 성숙한 어른으로 가는 길로 연계시키는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 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조건들이 거의 사라진 이후에도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삶의 지혜’라는 논리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성숙 또는 미성숙 기준을 결혼제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가장 단세포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임은 부정하기 어렵다(노명우, 2013:12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혼자산다’는 구절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진술이요,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언급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우려나 배려 혹은 결핍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진술로 인식되는 것이다.

글의 전반부에서 소개된 1인 가구증가는 가족(생활)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의 가장 미시적 단위가 핵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임은 이미 지적되었다. 강화된 개인화 추세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 구성단위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했음을 반영하는 가치관 변화를 의미하며, 단지 “버릇없는 아이들”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것들” 아니면 “요즘 것들”과 같은 언급으로만 치부하게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을 개탄하는 가운데, ‘독신세’<sup>2)</sup>와 같은 징벌적 세제 도입을 시도하여 이러한 개인화 경향을 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싱글세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심한 여론비판에

2) 독신세 도입은 원래 1927년 이태리 파쇼적 지도자 무솔리니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자녀출산에 기여하지 않는 당시 이태리 독신자 집단을 향해 대표적 공적제재로서 독신세 도입을 표명한 것이다. 인구 9천만 명 독일인, 2억만명 슬라브민족에 비해서 겨우 4천만명의 당시 이탈리아 인구는 초라하고 왜소한 국력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무솔리니의 목표는 20세기 후반에는 이탈리아 인구 6천만명을 돌파하는 것이었다(노명우, 2013: 79).

직면한 바 있다(“싱글세”. 한국일보 2014.11.14.일자 30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공격적 재로서 사회적 낙인효과라는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노명우, 2013: 78).

## 2. “화려한 혼자살이”관점(이미지)<sup>3)</sup>

비현실적으로 극단적 전제에서 출발한 또 다른 시선은 혼자살이들이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미 1인 가구 고정관념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바와 같이, 혼자살이들은 단지 그들의 배우자 및 그 밖에 딸린 가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나름대로의 여유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특히 이러한 “화려한 혼자살이” 이미지는 TV드라마나 미디어 판타지를 통해서 소개되고 확대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미 소개된 바대로 미국 TV연작 프로그램 <섹스 앤 더 시티> 속 N.Y.시 거주 4명의 전문직 여성들은 자유로운 영혼 소유자들로서 거칠 바가 없이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문화 아이콘으로 투영된다. 또 다른 TV인기드라마 <신사의 품격> 속 미혼 남자 등장인물도 ‘혼자살이’의 아이콘으로서 그들의 삶은 우리들 삶 속에서 잃어버린 이상향으로 미화되고 있다(노명우, 2013:216).

이들 혼자살이 캐릭터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집단으로, 실제 현실 속 인격체들 간에 양방향적 관계에 기반 하기보다는 TV속 유명 인사나 연극·영화 속 페르소나와 형성된 일방적 관계에 기반 하여 구축된 이미지가 특징이다. 미디어 세계에서 상상으로 구축된 가상의 인물유형으로서 매개적(mediated) 친밀성을 통해 현실 속 “화려한 혼자살이”들의 멘토이자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려한 혼자살이”들은 (탈)산업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풍요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나 소비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쇼핑중독’ 이라고 불리울 만큼 자신과 관련된 미용, 패션, 가구, 주택 등 소비품 구매는 물론이고, 외모관리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골드미스”, “골드미스터”층은 마사지, 다이어트, 치아교정 같은 외모관리나 신체투자에 많은 관심을 지닌다. 해외 어학연수나 (비)정기적 국내외(휴가)여행 등 자기계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는 소비층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도 간심을 보여주지 않는 나에게 돈을 투자함으로써 ‘관심을 살 수 있는 나’로 변신시켜주는 “그루밍(grooming)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즉, 혼자살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치유해 주고, 어루만져주는 산업으로 전문화된 분야가 그것이다(우에노 치즈코·노부다사요코, 2010:14-17).

## 3. R.코넬Connell의 “젠더레짐” 속 혼자살이의 위치

R.코넬은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수준에서, 이러한 대조적 관점들이 하나로 정의되는 전제前提 — 여성에 대한 남성지

---

3) “화려한 싱글”로 더 잘 알려졌으나 이 글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려한 혼자살이”로 표기한다.

배 -를 중심으로 젠더질서가 서열화 되어졌음을 밝혔다(<도표2>참조). 코넬에 의하면 서열도식 맨 위에는 “패권적 남성스러움(hegemonic masculinity)”이 위치하는데, 사회에 존재하는 여타의 모든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 위에 군림한다. ‘패권적(hegemonic)’이라 함은 헤게모니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정집단의 사회적 지배로서, 억압적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 삶과 사회영역으로 침투 확장되는 문화적 역동을 통해서 행사된다. 그렇게 하여, 미디어 교육과 이데올로기, 심지어 스포츠와 음악 이 모두는 자리 잡은 헤게모니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코넬에 의하면, 패권적 남성스러움은 최초로 또 최우선적으로 이성애와 결혼과 연계되지만 또한 권위, 유급직, 근력과 육체적 거칠음과도 연계된다. 패권적 남성스러움을 구현한 현실속 남성들의 예로는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같은 영화배우, 음악인 래퍼50센트 그리고 기업가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도표 2> 젠더서열구조



출처 : A.기딘스(2013): 671쪽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회의 극히 일부 남성만이 이 범주에 소속되어 있다. 비록 실제로는, 더 많은 남성들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권을 아직도 누리 고 있음은 부정하기 힘들다. 코넬은 이것은 ‘가부장적 프리미엄’이라고 칭하며 그러한 프리 미엄의 덕을 보고 있는 부류를 “공모적 남성스러움(complicit masculinity)”을 구현한다고 칭한다.

패권적 남성스러움에 복종적 관계가 존재하는데 복종적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 그것 이다. 복종적 남성스러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적 남성스러움(homosexual masculinity)”이다. 패권적 남성스러움에 지배받은 젠더서열에서, 동성애자들은 ‘진정한 남 자’와는 정반대 집단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패권적 남성주의이념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패권 적 남성스러움의 여러 측면에서 ‘도태되어버린’ 면모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령듯 동성애적 남성스러움은 낙인찍힌 결과 남성으로서 젠더서열의 맨 밑바닥 위치를 점유 하게 된다.

코넬은 젠더레짐 도식에서 여성스러움의 한 형태인 “강조된 여성스러움(emphasized femininity)”은 패권적 남성스러움과 상반되는 중요한 보충물로 상정한다. 이것은 남성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지향되어 있으며 ‘추종, 양육적 자질과 감정이입’등의 특징이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이러한 자질은 성적 감수성으로 연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나이트는 여성에게는 이것은 모성을 의미한다. 코넬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를 강조된 여성스러움의 ‘원형原型이 되는 동시에 풍자적’ 존재로 규정하며 “강조된 여성스러움”의 이미지는 미디어, 광고와 마케팅 선전에 아주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관습적 규범으로 “강조된 여성스러움”을 유지하려는 과도한 관심은 달리 말하면 관습에 저항하는 그 밖의 여타 종류의 복종적 여성스러움의 경우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불복종적 정체성을 개발하였거나 이러한 유형의 삶의 방식으로서 여권론자, 레즈비언, 노처녀, 조산원, 마귀, 매춘부 및 단순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저항적 여성스러움(resistant femininities)”의 경험들은 대개의 경우 ‘역사로부터 숨겨진 삶’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역사 속 주류집단으로서 충분한 관심이나 평가를 받은 적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Connell, 2012).

따라서 코넬의 젠더레짐 구도 속에서 혼자살이(여성)들은 서열구조의 맨 밑바닥에 위치하며, 역사상 한 번도 주류집단으로 포섭되거나 주도세력으로서 그 역할이나 정체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V. 혼자살기와 섹슈얼리티

결혼은 ‘섹스허가증’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결혼과 동시에 성적결합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첫날밤을 치른다’는 표현이 이러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일반적 관행으로 알려졌다(우에노치즈코·노부타사요코, 2010:1).

이러한 보수적 가족주의 성인식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혼자살이들은 도덕적으로 성경험이 허용되지 않는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집단들이다. 이들은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며, 성적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엄숙한)금욕주의자여야 한다. 이러한 성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욕구불만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성과 관련된 일탈이나 성범죄자로 돌변할 잠재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Trimberger, 2006:115, 노명우, 2013:123)).

그러나 이러한 성적 보수주의는 “혼전순결”이나 “수절과부”가 주요 도덕적 규범이었던 19세기 영국빅토리아 시대나 유교적 조선시대에서 적용될 수 있을 덕목인 것이다. 피임법이 보급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엄숙주의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혼자살기와 섹슈얼리티와 연계된 또 하나의 신화(myth)는 금욕주의와 대조점에 위치하는 논리로서 무배우 혼자살이들은 자유연애자 혹은 성적방종자 가설이다. 혼자살이는 조선시대

수결과부도 아니고, 지나친 바람둥이 때문에 생식기능이 마비된 카사노바도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은 섹슈얼리티가 결혼제도와 반드시 일치하거나 결합한 시대는 더 이상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자녀출산이라는 생식목적과는 별도로, 성적결합 그 자체가 오락 또는 탐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섹스관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착되고 있다. 섹스는 더 이상 엄숙하거나 엄격한 도덕적 잣대의 대상이 아니며, 그 대신 부드럽고,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Z.바우만(기딘스, 2013:457)은 ‘액체사랑(liquid love)’라는 용어로서 이즈음 남녀 간의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랑과 섹스를 표현한다. 섹스란 예측불가의 변화무쌍한 특성을 지녀서, 마치 액체가 담긴 용기에 의해 그 구체적 모습이 변하고 새로운 자질을 보이는 비유를 사용한 용례인 것이다.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결혼제도에 진입할 필요도 없고, 혼인빙자 간음, 혹은 간통죄 폐지(2015년) 등은 이러한 개방적 성의식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명우의 지적대로(2013:123), 섹스 또한 로맨스만큼이나 유동적이고 인스턴트화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남녀불문하고 연애와 섹스에 자유분방한 혼자살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인간말종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쿨한 성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으로 인식하는 시대인 것이다.

## VI. 나가는 말

이 글은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2012년도 발표된 미·비혼 집단 논문의 후속편이다. 2012년 글에서 소홀히 했거나 미처 담지 못한 내용, 그리고 논문출판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새롭게 개진된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화된” 혼자살이 1인가구추세가 현재 및 미래사회의 사적영역의 대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양식, 혼자살이와 관련된 해당 개념들—“싱글리즘”, “단독인”등—이 새롭게 소개되었다. 나아가, 혼자살이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의 소개, 그리고 혼자살이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가치관과 이슈 등을 다루었다.

이제, “개인화된” 우리 각자의 삶은 주변의 타인들과 교류하고 어울리는 한편,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삶의 입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신의 입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계획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노명우(2013)는 활발한 취미활동을 제안한다. 자기몰두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친구, 근린, 인척 등 주변 인물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고공행진 중인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주거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Do It Yourself(DIY) 운동을 제안한다(노명우, 2013:260). 이러한 활동은 비시장적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으로서 보편적 기본수입(Basic Income)과 같은 공적부조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화된 혼자살이 시대에 전제되는 물질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노명우, 2013). 이는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성혼자살이 집단들에게 유효한 물질적 길잡이 역할을 해 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미숙(2012). “미·비혼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예비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3권 2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노명우(2013). 『혼자산다는 것에 대하여』. 사월의 책.
- 야마다 마사히로 지음. 장화경 옮김(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그린비.
- 우에노 치즈코 지음. 오경순 옮김(2014). 『독신의 오후』. 현실문화.
- 우에노 치즈코·노부타 사요코 지음. 정선철 옮김(2010). 『결혼제국』. 이매진.
- 조주은(2013). 『기획된 가족』. 서래문집.
- 장인철(2014). “싱글세”. 『한국일보』. 2014.11.14.일자 30면.
- A.기든스 지음. 김미숙 외 옮김(2014). 『현대사회학』 7판. 을유문화사.
- Connell, Raewyn(2012). “*Gender in World Perspective.*” 2<sup>nd</sup> Ed. London:Polity press.
- Depaulo, Bella(2006). “*Singled Out*”. N.Y.:St.Martin’s Gr,ffin
- Trimberger,Kay E(2005). “*The New Single Woman.*” Boston: Beacon Press

# A Preliminary Review on the Literature of Single Women Groups II

Mi-sook Kim  
Department of Sociology  
Ch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①the emergence of one-person household in the Era of “individualized” single life in terms of its profile, five myths, and adjustment strategy; ②introduction of related concepts, such as Bella Depaulo’s “singlism”, Ro,myungwoo’s “solo person(單獨人)”, etc; ③perspectives on single groups—traditional, “glamorous”, and R.connell’s gender regimes; ④singles and sexuality. All these discussions are an updated and enlarged version of 2012 paper of “A Sociological Examination On Single Women Groups” of my paper(*Social Science Review*, Chongju University, vol.33. 2<sup>nd</sup>)

As a conclusion, we, who are living in the early 21<sup>st</sup> century have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dividualized” way of living. Two different solutions are introduced; on an individual level, each and every one have to prepare to the possible single life situation by engaging in hobby activities, while building up social networks. As a societal level, government has to introduce universal Basic Income allowance while encouraging in sharing houses.

key word: one-person household, “individualized” single life, singlism, gender regime, sexuality, Basic Income Allowance

논문투고일 : 2015. 7. 15

심사개시일 : 2015. 7. 21

게재확정일 : 2015. 7. 28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윤기택 교수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운영위원	박승두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심재승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윤기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양병기 교수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전공]
	조창희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나동석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최영준 교수 [청주대 신문방송학전공]
	이재록 교수 [청주대 광고홍보학전공]
감사	홍성언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편집위원장	박승두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편집위원	심재승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윤기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양병기 교수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전공]
	조창희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나동석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최영준 교수 [청주대 신문방송학전공]
	이재록 교수 [청주대 광고홍보학전공]
	조종혁 교수 [한국외국어대 언론학전공]
	민수홍 교수 [경기대 경찰행정학전공]
	차동필 교수 [신라대 광고홍보학전공]
편집간사	이수아 조교 [사회과학대학 조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운영 규정집**

## 1. 논문제출 규정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는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 개발에 공헌하고자 출간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록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중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 1. 응모논문 접수

- 1) 수시로 응모 가능하다.
- 2) 논문제출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논문제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자에게 반환된다.
- 3) 본 지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사회과학연구소 e-mail로 보내거나 디스켓을 사회과학연구소로 우송한다.

우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43) 229-8231  
E-mail : iss@cju.ac.kr

- 4) 우송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접수 후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 2. 논문 작성

논문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최신판 출판 지침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의 논문 작성 규정은 국어 용어 논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APA 양식 중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1) 일반적인 고려사항

- (1) 파일형태는 반드시 아래아한글로 작성한다.
- (2)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참고문헌 포함)
- (3) 파일 포맷

- 위아래 여백은 A4용지 기본설정대로 한다.
  - 줄 간격은 180%로 1페이지 분량이 33-38행 내외로 한다.
  - 제목/하위제목은 1. 1). (1). 가.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페이지번호는 반드시 붙일 것
  - 모든 표 및 그림은 일련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선명하게 붙이고 본문 중에 원하는 위치에 삽입한다.
  - 각주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에 작성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 (4) 논문 첫 페이지(Cover Page)에는 제목, 논문의 성격(이론연구, 실증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저자명 및 저자신상(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하고 특히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편집 시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 한다).
- (5) 모든 연구논문은 한글요약, 영문요약 및 한글 및 영문 키워드를 별도 페이지에 작성, 제출한다.

## 2) 인용

- (1) 본문 내에서의 인용은 괄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가 기재되어야 한다(예. Smith, 2003; 홍길동, 2000). 만일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름 옆에 연도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1)은...).
- (2) 특정 페이지나 단락, 공식이 인용되면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예. 홍길동, 1997, p. 20).
- (3) 저자명이 두 명에서 여섯 명 이하인 경우, 본문에 인용문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다음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낸다. 6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 (4) 동일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 1996, 1999). 만일 동일 저자의 2개 이상의 작업이 동일한 출간 연도 일 경우 (Smith, 1981a, 1981b)로 표기한다.

## 3) 참고문헌

- (1) 참고 문헌에는 저작물의 준비나 연구물에 사용되었던 자료들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참고문헌에 기입된 저작물은 본문의 어느 한 부분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라야 한다.
- (2) 내국인 먼저 첫 번째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저자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괄호 안에 출간 연도를 기재한다.
- (3)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출간 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 제목, 권호, 페이지 번호 등

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윤각, 김회훈, 윤정아. (2002). 잡지광고에 투영된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과학 연구**, 10(2), 207-224.

Schegloff, A. (1987). Analyzing single episodes of couple interaction.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35(April), 73-82.

(4) 단행본의 경우

강진령(1997). **APA 논문작성법**. 서울: 양서원

Knapp, R. M., and Bangelisti, E. A. (199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3rd ed.)*. London: Allyn and Bacon.

(5) 편집된 단행본의 경우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한국 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Gibbs, J.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 3.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II. 논문심사규정

### 1. 심사방법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실증 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들 중에서 임시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마감일까지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 (4) 심사 결과는 「우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5)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판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6)항~(9)항과 같이 처리한다.
- (6)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우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선입고' 순서에 따라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이 지적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7)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부분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8)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대폭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대폭수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9)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판정을 통보한다.
-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 2. 심사 기준

각 논문의 분야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이론 연구(Theoret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학문적 기여도)
  - ② 이론적 주장의 논리성

- ③ 기존 이론들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논제의 독창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에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 (2)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가설 및 연구문제 도출의 논리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에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 (3)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에 논리성
  - ③ 내용 정리, 분류의 체계성 및 이론의 타당성
  -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 (4) 사례 연구(Case Study)
- ① 사례분석 내용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에 논리성
  - ③ 내용의 참신성
  - ④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⑤ 내용/문장의 명료성



### 3. 심사절차

순서	항 목	내 용
1	논문접수	사회과학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하되 수신자는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접수통지	저자에게 접수확인 사항을 e-mail로 통지한다.
3	편집위원회 소집	분기별 논문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임시 심사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은 후, 심사를 의뢰한다.
5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추후공지)에게 심사마감일까지 발송한다.
6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결과통보 및 수정요구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다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폭수정후 재심사 논문은 차기 정기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이때, 연구자가 요청할 경우 1차 논문심사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편집 방침

-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술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4)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5.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III.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위원회

「한국사회과학연구」의 편집,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자격

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국내외 사회과학 연구자 중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특히 전국규모의 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대내·외적 학술활동이 많은 자로 한다.

##### 2) 조직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한다.

##### 3)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

###### (1) 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 학문적 연구업적과 전공영역을 고려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선임한다.

###### (2)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논문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위원 교체 시 전체위원 정족수의 50%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 4) 임무

위원회는 우수 연구논문 발굴 및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 외부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5)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에게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논문심사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담당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총 2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논문의 심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4.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5. 부 칙

-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사회과학연구』는 2011년까지 연간 2회(6월, 12월) 발간하였으나 2012년부터 연간 3회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에는 7월, 11월, 1월 발간합니다.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주제의 급증과 학계의 연구 열의가 고조됨에 따라 연구기회를 더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투고논문을 접수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연간 상시논문을 접수 받고 각 분기별 논문 마감 일자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입고 선출판” 방침에 따라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 많을 경우, 차기 호에 게재하여 우수한 논문이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 논문주제 : 자유 (단, 사회과학 현상과 관련된 논문)
2. 원고분량 : A4 사이즈 (글자크기 10P, 행간180% 기준)로 20페이지 내외, 원고분량 준수)
3. 신청내용 : 원고는 본 학술지 “논문제출 규정”에 맞추어 **호**글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나 연구소 간사 교수님께 그룹웨어로 발송
4. 원고 접수처  
우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 (043)229-7911, FAX : 229-8233
5. 제출된 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소가 규정한 논문의 제출 규정에 일치하여야 함.

### □ 『한국사회과학연구』 발간 목적

『한국사회과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의 발간 목적은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록하며,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 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로서 법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사회복지학, 지적학 등과 같은 영역의 세부 주제 및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합니다.

---

2015년 7월 30일 인쇄

2015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 윤 기 택

발행처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TEL. 043-229-7911, FAX. 043-229-8233

인쇄처 : 미 래 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13번길 1

TEL. 043-221-5256, FAX. 043-221-5258

---